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박사 학위논문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in Busan Metropolitan City



지도교수 조 종 래

2016년 8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문 광 일

본 논문을 문광일의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박 권 하 (인)

위 원 정 재 현 (인)

위 원 조 종 래 (인)

위 원 황 광 일 (인)

위 원 손 동 우 (인)



2016년 8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목 차

List of Tables	vi
List of Figures	ix
Abstract	xi

제1장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배경	1
1.1.2 연구목적	3
1.1.3 연구범위 및 방법	3
1.2 학문영역 확대의 의의	4
제2장 관련규정 및 연구동향에 대한 고찰	6
2.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6
2.1.1 개념 및 목적	6
2.1.2 계약심사제도 운영 방향	6
2.1.3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근거	7
2.1.4 계약심사제도의 기능 및 절차	8
2.1.5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8
2.1.6 계약심사대상 사업	10
2.1.7 원가심사 업무 매뉴얼 검토	12
2.2 계약심사제도의 국내 연구 동향	21

제3장 계약심사제도 시행이후 제기된 현안문제	26
3.1 제도적 관점	26
3.1.1 원가분석자문단 미 구성 및 활용 부재	26
3.1.2 건설공사 설계VE 부서와 계약심사 부서의 이원화	27
3.1.3 외자구매부서의 부재	27
3.1.4 계약심사금액 증액 및 사후관리 미흡	28
3.1.5 계약심사부서와 발주부서의 생태계 차이	29
3.1.6 충분한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	29
3.2 기술적 관점	30
3.2.1 계약심사 절감률 저하 및 용역성과품 검토 부족	30
3.2.2 계약심사 삭감대비 사업내역	31
3.2.3 실적위주의 계약심사 우려	32
3.2.4 과다설계 및 반복지적 설계자에 대한 벌칙부과 전무	33
3.2.5 계약심사부서의 양면성	34
3.2.6 계약심사자료 관리의 이원화	34
제4장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현황 및 처리결과 분석	35
4.1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현황	35
4.1.1 계약심사제도 일반 현황	35
4.1.2 일상감사제도	36
4.1.3 계약심사 업무현황	38
4.2 계약심사 처리현황 분석	39
4.2.1 담당공무원 및 직제	39
4.2.2 자치구·군의 인력 및 직제 분석	41
4.2.3 타 시·도의 인력 및 직제	44
4.2.4 계약심사 대상금액 분석	46

4.2.5 계약심사 기간 단축	48
4.2.6 실적분석	51
4.3 계약심사의 성과분석	72
4.3.1 성과분석	72
4.3.2 계약심사의 한계	74
제5장 계약심사 관계자의 인식분석	77
5.1 관계자의 인식조사에 대한 필요성	77
5.2 조사대상 및 방법	77
5.2.1 조사대상	77
5.2.2 자료조사 및 수집방법	78
5.2.3 분석방법	79
5.3 자료 분석결과	79
5.3.1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인식 분석	79
5.3.2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발주부서의 인식분석	85
5.3.3 건설공사업체 등 민간업계의 인식 분석	91
5.4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96
제6장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	98
6.1 제도적 분야	98
6.1.1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원가분석 자문단으로 활용	98
6.1.2 투명성제고를 위한 계약심사부터 회계입찰까지 공개 시스템 구축	99
6.1.3 기술심의와 계약심사의 일괄처리로 심사기간 단축	99
6.1.4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처리 절차 개선	100
6.1.5 교통공사 외자구매 전담부서 신설	101
6.1.6 축적된 계약심사 자료의 활용도 극대화	102

6.1.7 계약심사부서의 조직개편 확대	103
6.2 기술적 분야	104
6.2.1 현장 확인을 통한 수요자 및 품질중심의 계약심사 확행	104
6.2.2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간의 사전 협의제 운영	105
6.2.3 자치구·군 채용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지원	105
6.2.4 설계의 경제성 검토 대상금액 확대	106
6.2.5 종이 없는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도모	107
6.2.6 계약심사 처리실태 만족도 상시 모니터링 강화	107
6.2.7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민간단체 협력강화	108
6.3 정책적 분야	108
6.3.1 계약심사부서 근무자 공모제 도입	108
6.3.2 계약심사부서의 우대방안 마련	109
제7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3
부록	117

List of Tables

Table 1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11
Table 2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13
Table 3 설계변경 주요 검토사항	18
Table 4 계약심사결과 통보서	19
Table 5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	38
Table 6 계약심사 담당공무원 근무현황	40
Table 7 시 본청 및 자치구·군 담당공무원 인력 현황	42
Table 8 시 본청 및 자치구·군 심사금액 현황	43
Table 9 전국 시도 계약심사부서 직원 현황	45
Table 10 전국 시도 계약심사 대상금액 현황	47
Table 11 연도별 공종별 계약심사 1건 처리기간	48
Table 12 연도별 공종별 계약심사 처리건수	50
Table 13 연도별 계약심사건수 및 평균 1건 처리기간	51
Table 14 부산광역시 설계의 경제성검토 실적	52
Table 15 공사분야 계약심사 주요사례	58
Table 16 물품구매 및 제조분야 계약심사 주요사례	64
Table 17 용역분야 계약심사 주요사례	67
Table 18 기계분야 계약심사 실적	69
Table 19 기전분야 용역심사 실적	70
Table 20 연도별 기계분야 외자구매 심사 현황	72
Table 21 부산광역시 기관별 예산절감 현황	73
Table 22 부산광역시 공종별 계약심사 예산절감 현황	73

Table 23	계약심사 설문조사 대상 현황	78
Table 24	계약심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79
Table 25	향후 부산시의 계약심사제도 발전을 위한 인사개선 방향	83
Table 26	중앙정부차원의 심사제도 발전방안	84
Table 27	계약심사부서에서 생각하는 이 제도의 문제점	84
Table 28	발주부서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85
Table 29	향후 부산시의 계약심사제도 발전을 위한 인적개선 방향	88
Table 30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이 제도의 발전방향	89
Table 31	발주부서 차원에서 생각하는 이 제도의 문제점	89
Table 32	계약심사부서를 위한 사기진작 개선방안	90
Table 33	관련업체의 인식분석 설문조사 내용	91
Table 34	민간업체 차원에서 생각하는 이 제도의 문제점	93
Table 35	계약심사제도 시행이후 나타난 장점	94
Table 36	민간업체 차원에서 보완하여야 할 과제	94
Table 37	향후 부산시의 계약심사제도를 위한 발전방안	95
Table 38	민간업체에서 생각하는 계약심사부서의 활성화 방안	95
Table 39	민간업체에서 생각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활성화 방안	96
Table 40	자치구·군 채용사업 심사지원 대상금액	106

List of Figures

Fig. 1 계약심사 운영방안	6
Fig. 2 계약심사제도의 주요 심사내용	8
Fig. 3 계약심사 업무처리 흐름도	9
Fig. 4 계약심사부서의 업무처리 세부 절차	10
Fig. 5 설계변경심사 업무처리 절차도	18
Fig. 6 계약심사 담당공무원 근무현황	40
Fig. 7 계약심사 담당공무원 직렬별 분포도	41
Fig. 8 시 분청 및 자치구군 담당공무원 인력 현황	42
Fig. 9 시 분청 및 자치구군 심사금액 현황	43
Fig. 10 연도별 공종별 계약심사 1건 처리기간	49
Fig. 11 연도별 공종별 계약심사 처리건수	50
Fig. 12 부산광역시 설계의 경제성검토 실적	52
Fig. 13 연도별 계약심사 처리건수 현황	54
Fig. 14 연도별 공사계약심사 건수 및 절감액	55
Fig. 15 공사계약심사 건수 및 절감률 분류	56
Fig. 16 연도별 물품제조구매 계약심사 건수 및 절감액	61
Fig. 17 연도별 물품심사 건수 및 절감률 분류	62
Fig. 18 연도별 용역계약심사 건수 및 절감액	65
Fig. 19 용역계약심사 건수별 절감률 분류	66
Fig. 20 계약심사제도의 위치	76
Fig. 21 기술용역 심의 및 계약심사 업무 처리 흐름도	100

Fig. 22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처리 흐름도	101
Fig. 23	계약심사정보시스템(부산광역시청)	103
Fig. 24	계약심사부서 조직 확대 개편안	104
Fig. 25	수요자 중심의 상시모니터링 체계도	1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in Busan Metropolitan City

Moon, Kwang Ill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According to the guideline of the government,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Busan since July 2008. The system is to check whether the estimated amount from the ordering department is proper or not before the ordering department commission the audit department to have a contract, such as construction, goods, and service. Befor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the ordering department drew up the budget directly or enlisted the service of the work in a professional organization. After that, the ordering department notified it to the audit department. The audit department had to draw up the predetermined budget. However, the relevant department didn't review enough it because the supervision of the cost of service and the frequently changes of the position caused persons in charge of this work to decrease in professionalism and continuity. To compensate this loophole, it decided to add the step screening the estimated amount between the ordering department and the audit department. As the result,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help secure surplus resource though modification of excessive quantities, errors of output quantities, and law in the design estimation,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ethods and so on.

But there are different perspective between the ordering department willing to reduce the budget and the private enterprise objective to operating profits. The private enterprise may regard the budget reduction as the budget cut. Based on difference in the perspective and analyzing several problems and improvement last 7 years, inquiry of the screening department, the ordering department,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corporation, and the entire budget reduction and so on, I will present suggestions based on three perspective to help improv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in Busan. I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followings are needed: using a committee of 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as an advisory body, constructing the opening system from the contract screening to the audit bid, batch-processing screening technics and contracts, multi-tasking the contract screening and the daily-audit, setting up the unit to take charge of purchase of foreign capital in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giving the private corporation access to inspection of the contract screening information system, and reorganization of the screen department.

In the technical part, it is necessary to screening the contract through check on-site. And also, activating advance consolation, sponsoring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from autonomous region, screening the contract without the paper, monitoring regularly, benchmarking the best exemplary case, and reinforcing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corporation are essential.

In the policy part, it is essential to give the public officers in charge incentive and construct market opening for them in charge of screening to settle and enhanc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KEY WORDS : contract screening system; public orders; Budget reduction; cut the budget; construction, services, goods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1.1 연구배경

계약심사제도¹⁾는 2003년 2월 15일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지방정부가 원가계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원가분석기법을 통하여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초기 1년간의 결과를 분석하여 자치구와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그 결과 원가계산에 대한 중요성이 제고되었고 더불어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하도급질서의 정상화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성과가 크게 나타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행정시책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이후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이상으로 성과를 거두자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계약심사대상을 지정하고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2008년부터 전국 광역·도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도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계약심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다시말해 계약심사제도는 공사·물품·용역의 입찰이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책정된 추정금액²⁾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제도이다. 이때 금액의 적정여부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이윤의 항목으로 심사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발주부서³⁾에서

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을 사업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2)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 추정가격 : 공무원가(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제외), 예정가격 : 공무원가+부가가치세(관급자재 제외), 사업비 : 도급+관급+보상비, 총사업비 : 사업비 + 용역비 + 부대비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거나 직접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작성된 설계금액을 회계부서에 입찰의뢰하면 이 금액을 기초로 회계담당공무원이 입찰 예정가격을 확정하였다. 이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부서는 원가산출에 대한 요령이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 설계금액 산출이 부적정한 경우가 많았고, 또한 회계담당부서에서도 직원들의 잦은 이동과 업무의 전문성 및 연계성 부족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에 비용절감 경영마인드를 접목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해 작성된 설계금액을 회계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기 전에 설계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심사단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설계내역서상의 산출물량 오류나 잘못 적용된 법령을 수정하거나 공법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어 자주재원이 부족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계약심사제도로 인해 사업을 주관하는 발주부서에서는 추가 자료작성이 번거롭고 심사기일이 소요되어 전체 사업기간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민간 관련업계⁴⁾에서는 총사업비가 삭감되어 이윤이 줄어든다는 논리로 발주부서나 관련업계에서 이익에 따라 각각의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로 본다면 계약심사제도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민간 업계의 입장에서는 예산삭감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상반된 견해를 토대로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시각차를 좁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관련업계의 이윤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심사초기에는 설계서작성이나 법규적용 오류로 과다 계상된 사례가 많아 예산절감효과가 절정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홍보에 일익을 담당한 일면도 있었으나 약 7년간의 반복된 시행으로 오류가 수정되고 원가계산에 대한 관심과 자료작성에 대한 업무능력이 배양되어 시행초기보다 다소 예산절감률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관련업계에서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끊임없이 공법 및 시공자재

3) 공사-물품-용역을 설계하거나 시공 및 감리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관련업계 : 건설공사 시공업체, 각종 물품제조구입 업체, 기술학술 및 일반 용역업체

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적 지식 함양과 교육을 통해 심사공무원의 전문화가 이루어 졌으며, 중앙 정부에서도 계약심사 실적관리를 위한 전산화시스템이 완료되어 이 제도시행 이후 약 7년이 경과된 지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시스템이 정착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시행의 결과로 발주부서나 관련업계에서는 계약심사제도가 번거로운 절차나 예산 삭감이라는 초기의 인식보다는 오히려 심사부서의 재검토를 통해 원가계산을 보완하거나 수정 또는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반드시 계약심사를 거쳐야하는 필요한 절차로 인식하게 되었다.

1.1.2 연구목적

부산광역시는 어려워진 지방재원⁵⁾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2008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6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예산절감 효과에 비하여 관공서와 민간기업체에서 바라보는 예산절감에 대한 인식차이가 달라 예산절감(budget reductions)과 예산삭감(cut the budget)이라는 일부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막대한 예산이라는 외형과 함께 민간기업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만족 요인이 제거되어야만 실질적인 행정제도속의 지방세원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예산절감 및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계약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예산절감률을 분석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 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제도의 발전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1.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2008년 07월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약

5) 지방세 : 국세와 구별되며 재산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기부금, 부담금 등)있으나 주로 지방세중에서 재산과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7년 동안 건설공사, 각종 용역, 기계설비 물품구매 등 계약심사가 완료된 실적을 분석하여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았으며 이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을 검토했다. 또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였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발주부서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및 민간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제도의 발전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첫째,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실적을 형태별, 공종별, 연도별로 절감률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 : VE)⁶⁾와 계약심사가 연계된 예산절감에 대한 현황도 함께 분석하였다.

둘째,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부산광역시와 타 시·도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도출 및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현재 계약심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할 경험이 있는 공무원 및 건설공사 등의 발주부서 담당공무원과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인식,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부분적인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을 하였다.

넷째, 계약심사 업무실적 분석과 관련담당자 및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식분석을 토대로 예산절감과 예산삭감이라는 양분된 시각차를 줄여 시행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찾아 부산광역시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1.2 학문영역 확대의 의의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계약심사제도도 앞서 간략히 밝혔듯이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회계부서에 입찰을 의뢰하기 전에 사업금액이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산출되었는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주요기능별로 설계비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또는 전문가가 검토하여야 하는 제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2014.05.14.)

이는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각종 건설공사와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 기계 부품과 같은 물품 및 용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주로 건설공사와 각종 물품구입이 주류를 이룬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반복학습이 이루어진 계약심사 분야도 심사의 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면 공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공학의 영역이 더 한층 넓어질 것이므로 이 분야의 체계적인 학문을 구성하는데 그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제2장 관련규정 및 연구동향에 대한 고찰

2.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2.1.1 개념 및 목적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정금액이상의 사업(공사·용역·물품·설계변경)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로써 원가계산에 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과소 산정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제고하는데 있다. 결국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방식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예산집행의 공공성·경제성·효과성·능률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신뢰와 품질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1.2 계약심사제도 운영 방향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약심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화를 기하며, 원가계산 심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심사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와 동시에 계약심사기법 개발을 위하여 정기적인 연구 및 연찬활동을 강화하는 방침이다. Fig. 1은 계약심사 운영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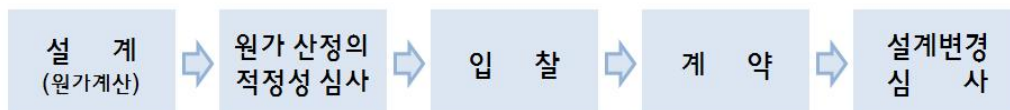


Fig. 1 계약심사 운영방안

2.1.3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근거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그 원칙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 관계법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가정책의 적합성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가격기준을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먼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하고,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 등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하되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항목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의 경우는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된 실적공사비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또 위 규정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결정하되 이들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 외에도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예정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하거나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고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부의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계약심사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4 계약심사제도의 기능 및 절차

계약심사의 주요기능은 첫째, 예정가격 결정전 단계에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심사와 최저가낙찰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저가심사제도 운영 및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시 증감금액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심사이다. 주요 심사내용은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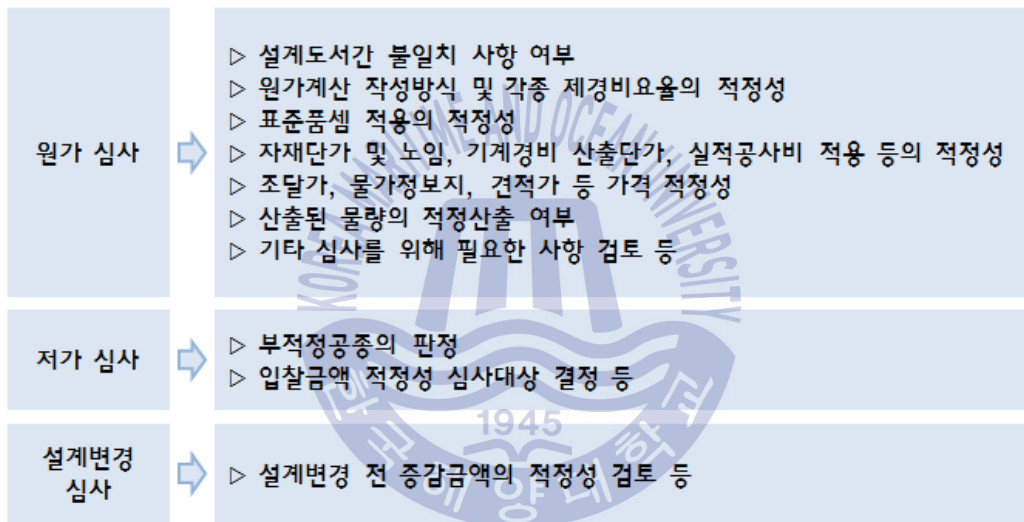


Fig. 2 계약심사제도의 주요 심사내용

둘째, 계약심사 시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2.1.5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2.1.5.1 업무처리 흐름도

계약심사의 주요기능은 사업부서에서 작성된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와 최

저가 입찰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저가심사 그리고 설계변경내용 및 설계변경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이다. 계약심사업무 처리 흐름 도는 Fig. 3과 같다.

Fig. 3에서 보는바와 같이 ①발주부서에서 발주품의를 입안하여 ②계약심사 부서에 심사의뢰를 하면 ③계약심사부서에서는 원가심사 후 ④심사 결과서를 작성 ⑤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 송부 ⑥발주부서에서는 발주금액을 재산정하여 ⑦계약체결부서에 계약의뢰를 하면 ⑧계약체결부서에서는 재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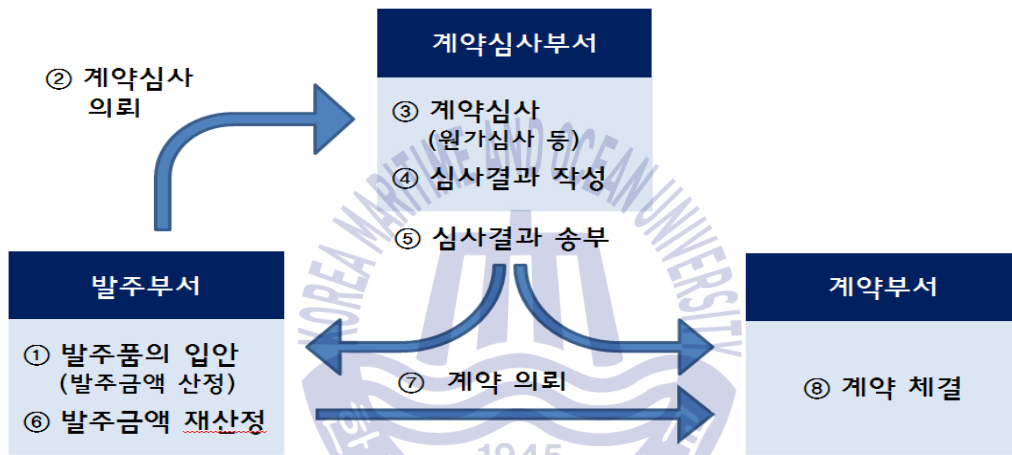


Fig. 3 계약심사 업무처리 흐름도

2.1.5.2 업무처리 절차

계약심사제도의 업무처리 절차는 Fig. 4와 같다. ①발주부서(시 본청·자치구·군, 공사·공단)에서 심사요청서가 접수되면 ②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미비한 서류가 있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하며 ③ ~ ④제출서류에 대해 1차적으로 원가심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 후 ⑤ ~ ⑥1차 심사된 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하고 이견이 있을 시는 해당사항을 재검토한 후 협의가 종료되면 ⑦ ~ ⑧최종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거쳐 ⑨발주부서 및 계약체결부서에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심사실적을 관리한다.



Fig. 4 계약심사부서의 업무처리 세부 절차

2.1.6 계약심사대상 사업

계약심사 대상 기관은 시·도 및 시·군·구의 본청 및 사업소, 시·도 설립 지방 공기업,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 제외)으로, 다만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 사업은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심사대상 사업은 의무적 사업과, 임의적 사업 그리고 심사제외 사업으로 구분한다.

2.1.6.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의무적 대상사업은 추정금액⁷⁾ 종합공사는 5억 원(전문공사 3억 원)이상, 용역은 2억 원 이상, 물품구매는 2천만 원 이상이며, 저가심사 대상사업은 추정 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⁸⁾에 해당되며, 저가심사를 위한 심사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호에 의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공사 최저가 낙찰제 폐지하고 종합낙찰제로 개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16.1.15시행), 부산광역시 최저가 낙찰제 개선대책(2016.2.15., 부산광역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PQ심사⁹⁾ 및 입찰과 낙찰자 결정은 해당부서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설계변경 심사대상 사업은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심사한다. Table 1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이다.

Table 1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대상기관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시·도> ▲ 시·도 본청 및 사업소 ▲ 시·도 지방공기업 ▲ 시·도 출연기관 (50%미만 제외)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저가심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최저가 입찰사 저가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PQ심사 및 입찰과 낙찰자 결정은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실시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시·군·구> ▲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 시·군·구 출연기관 (50%미만 제외)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은 입찰 전 공사수행능력을 사전에 심사하여 일정 수준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지방자치단체 발주 추정가격 200억 이상 300억 미만 18개 공종공사에만 해당됨.

2.1.6.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2.1.6.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계약심사를 처리절차와 그 목적에 맞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나 천재지변·긴급재해 복구 등으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상품권·유류·종량제 봉투·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품목이나 완제품같은 구매의 경우도 제외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¹⁰⁾ 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을 통한 구입한 경우 및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1.7 원가심사 업무 매뉴얼 검토

2.1.7.1 공사 계약심사

1) 개요 및 업무내용

원가심사업무 매뉴얼은 공사물품·용역부문이 모두 비슷하며 간략히 살펴보면,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품셈적용의 적정성 확인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소요자재 단가재조사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2) 공사의 분류

계약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Table 2는 공사 부문의 계약심사대상이다.

Table 2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업종	세부공종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시설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 설치를 부지조성공사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전기공사	전기설비,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
문화재수리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의 공사	위에서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

3) 심사 절차

첫째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요청할 때 계약심사요청서,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 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 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소프트웨어 참고자료 : 엑셀내역 화일·auto-cad도면,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방침서·계획서·기술심사조건 등)의 자료를 첨부하며, 계약심사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요령·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

가기준(원가계산 기준 등)·표준품셈, 실적공사비, 그 밖의 법정요율, 거래실례가격 (가격정보 등),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도 고려한다.

둘째 계약심사 시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하고,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셋째 계약심사부서에서 확정 통보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실적관리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관련 서류 보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하며, 사업부서에서도 해당 건에 대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7.2 물품분야 원가심사

1) 개요 및 업무내용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하는 업무이다.

2) 물품의 분류

현행 법규상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명확히 구분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통상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은 제조의 경우 당해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완성물품의 경우는 제조

업자와 도소매업자 모두 그 자격이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물품은 제조구매와 완제품 구매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을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조

특수규격품의 제작설치 및 수리 등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심사한다.

(2) 완제품

완제품구매, 임차(부동산제외) 등의 물품 구매시는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물가정보지, 물가자료, 통상자료지), 또는 직접 조사한 시중가격 등을 조사하여 물품의 적정구매를 심사한다.

(3) 인쇄물, 기획편집

책자, 리플릿, 전단지, 캘린더,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의 사양에 따라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거 제조원가를 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인쇄업체의 영업 활성화를 이유로 이 규정을 폐지하여 현재는 업체의 견적가격이나 시중가격으로 산출하도록 변경되었으며, 필요시 기획 수정 등의 편집료와 같이 별도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시중거래가격을 준용하여 적정가를 산정할 수 있다.

3) 심사 절차

첫째 계약심사 요청서 등 관련자료(산출기초조사서, 규격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수입물품원가계산서, 수리명세서, 임차대상 및 임차조건, 시장채고, 유통여부 등)를 제출 받아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 표준품셈, 그 밖의 법정요율, 거래실례가격,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등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며,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함께 고려한다.

둘째 공사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사업부서 의견수렴이나 1회의 재심사 요청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4) 심사실적 관리

공사분야의 실적관리를 준용한다.

2.1.7.3 용역분야 원가심사

1) 개요 및 업무내용

용역원가에 대한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을 근거로 노무비기준단가, 경비 산출 수량 및 단가, 불필요한 비목 포함여부, 재료비단가, 설계간 불일치 사항 및 오류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업무이다.

2) 용역의 분류

심사대상은 기술용역¹¹⁾, 학술연구용역¹²⁾, 일반용역¹³⁾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주택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다음으로 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일반용역이라 한다.

3) 심사 절차

첫째 계약심사 요청서와 관련자료(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수량산출서·노무비산출근거·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견적서, 그 밖에 소프트웨어 참고자료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예정가격 작성요령,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 표준품셈, 그 밖의 법정요율, 거래실례가격·가

11)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대가의 기준.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

12) 행정업무 또는 행정제도의 개발,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 등을 위한 용역(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2008.7.7),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안전행정부 예규 제2010-293호)

13)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격정보 등,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하되 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한다.

둘째 공사와 마찬가지로 심사된 금액이 원가계산방식이 아닌 경우 조정사유를 명시하고 사업부서 의견수렴 및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요청도 가능하다.

4) 실적 관리

공사분야의 실적관리를 준용한다.

2.1.7.4 설계변경 심사

1) 개요 및 업무내용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대상

첫째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설계변경심사 제외대상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재해 및 재난복구 사업), 계약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계약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3)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Fig. 5는 설계변경심사에 대한 절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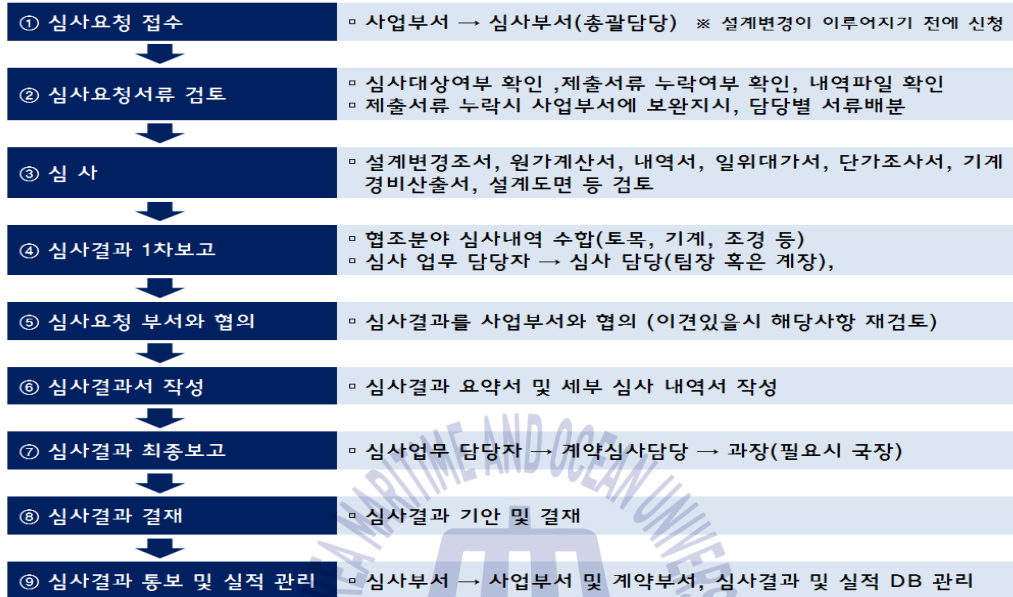


Fig. 5 설계변경심사 업무처리 절차도

4) 주요 검토사항

설계변경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설계변경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계약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서, 그 밖의 심사조건)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다음 Table 4와 같은 유형으로 각각 함께 통보한다.

심사결과가 재검토인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Table 4 계약심사 결과 통보서

원안 통과	수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 (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재검토 사유 명기)

6) 실적 관리

공사분야의 실적관리를 준용한다.

2.1.7.5 계약심사자가 계약심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첫째,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 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둘째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셋째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 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하나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첫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둘째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4) 전문성 확보 노력

첫째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둘째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5)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 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계약심사제도의 국내 연구 동향

행정기관의 입찰계약제도는 담합과 덤핑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제도는 시대별로 끊임없이 변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할 것이다. 이는 부실공사와 부조리의 발생, 업계의 입장,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여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해야하는 정부의 당연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입찰계약제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많은 전문가와 연구실적물들이 생겨난 반면 서울시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실시한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그런 중에서도 계약심사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몇몇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Kim, 2004¹⁴⁾은 서울특별시의 행정재정개혁과 경영마인드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행정의 개혁은 행정운동을 기업가 정신을 도입하여 경영마인드나 경영관리기법으로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효율성과 경쟁력이 살아 있는 메카니즘(mechanism)이 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정개혁 유형중의 하나가 바로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계약심사제도가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인 노하우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신이 기업경영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최신기법이나 가격정보에 대한 능력을 구비하여 전문적인 심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피 심사자들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엄밀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예산절감 사례와 성과를 분석하여 공공기관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원인들을 불성실의 영역, 무능력의 능력, 부패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대응처방과 문제점들을 실례를 들어 나열했다. 또한 심사부서에서는 발주부서와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시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심사의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또 계약심사에 대한 시공사업계의 불만사항을 무분별한 실적주의, 부실공사 초래,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 간의 형평성문제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

14) 김찬동(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제도의 발전방향으로는 공공기관의 예산입안과정에서부터 발주부서의 집행 과정까지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와 노하를 가지고 심사해야하며, 공정한 입찰 경쟁을 위한 환경조성과 계약체결이후 그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꼽고 있다.

Ryu, 2008¹⁵⁾는 지방정부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계약심사 제도가 지속적인 제도적 성과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들을 제시 하였다. 그 정책방향들을 보면 계약심사이후 사후관리를 통해서 계약심사제도를 통한 예산절약이 증가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하며, 계약심사제도가 투입중 심관리의 초점에서 벗어나 계약집행과 모니터링과정까지 확대하여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또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된 예산을 지역현안이나 신규투자 사업에 활용하고 다음 년도에 전입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통합관리를 주장했으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기능강화와 지방정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또는 외부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또한 계약심사로 인해서 감사기능이 증가하는 것을 경계했으며, 계약심사 제도가 비용이나 유용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능률성 중심에서 계약대상물의 지속성, 생산성, 운용 및 활용의 기능성을 고려하는 효과성으로 까지 그 개념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Lee, 2011¹⁶⁾는 계약심사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이 제도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정부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필수도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자칫 예산절감의 무리한 목표지향성 심사제도로 흘러갈 경우 사업의 품질보다는 사업비 삭감에만 관심이 집중될 위험성이 있으며, 실시설계자는 이에 대한 사전포석으로 삭감에 대비한 과다 또는 과잉 설계를 유도하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을 매년 공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은 예산절감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공사품질이나 현장여건을 간과한 채 실적위주의 계약심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절차적인 측면, 환경적 측면, 제도적 측면으로 나

15) 류춘호(부산광역시 의회)

16) 이상근(서울특별시 시의회사무처)

누고 있는데 먼저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현장 확인과 설계의도를 확인하여 발주자와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는 심사인력 확충 및 전문화와 원가분석자문회의의 인력 풀제 전환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설계VE기법 도입, 실적공사비제도의 현실화와 과다설계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모범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설계의 정확도와 질을 높이는 설계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심사제도의 효과와 인식조사를 실시한 Lee and Kim, 2010¹⁷⁾는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용역업체 60곳을 표본 선정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용이후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여건을 제시하였고 용역업체의 업무능력변화와 이 제도 시행이후 가장 개선된 사항을 예산절감이라고 조사하였다. 또한 거시적인 계약심사제도가 공공기관의 사전예산절감 모델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기술적인 방향과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업체의 견적능력 향상과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었고 담당공무원의 인력보강, 업체의 전문가육성, 공무원과 업체의 인식차이를 없애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정책적인 방향으로 주장하였다.

다음 Hong, 2014¹⁸⁾은 계약심사제도를 예산절감률이라는 수치에서 벗어나 이 제도의 목적을 법적관점에서 크게 3가지로 규명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국제입찰시는 이의신청권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아직 준사법적 심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절차보장, 결정의 구속력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오늘날 세계화 현상에 의하여 개방화 투명성제고 그리고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의 완비 요청을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계약심사부서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구성의 독립성, 심결절차의

17) 이동욱, 김용탁(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18) 홍종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그리고 결정의 구속력이 실효성있게 관철될 수 있는 방안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제를 수동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조달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사례를 미리 예측하고 OECD의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공공조달계약을 둘러싼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계약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법제적 개선방안 외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고시 가격이나 고정비와 같은 영역의 계약심사, 장래의 지출시점을 고려한 자본비용이나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우발비용에 대한 심사,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 질감실적을 정량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로 공공조달계약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경쟁과 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공공 부문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외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이 제도가 행정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예산절감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하여 실현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원가심사와 계약체결, 계약의 집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감사청구, 주민소송,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변상명령, 주민소환 등 지역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한 통제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Ryu 2015¹⁹⁾는 계약심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인대리이론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정보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인 계약심사 제도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을 막아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민간업체 간에 정보공개 및 공휴가 필요하며, 또 역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와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인력활용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감사와 법규 정비 등이

19) 류영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계약심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연구들은 여전히 많은 연구 과제를 남겨두고 있으며, 특히 부산지역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 공무원과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에 인식도조사 및 시행이후 나타난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부산광역시의 계약심사제도가 나아가야 할 다양한 발전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3장 계약심사제도 시행이후 제기된 현안문제

3.1 제도적 관점

3.1.1 원가분석자문단 미 구성 및 활용 부재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이 계약심사를 시행하면서 전문분야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7조에 원가분석자문단을 구성할 수가 있다. 이 원가분석자문단은 원가산정이나 설계와 관련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주로 신기술이나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와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고 자문을 위해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심사부서의 업무형태를 보면 상당부분을 기존 심사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건설업계나 학계의 인맥을 통하여 자문과 협의를 하고 있어 원가분석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외 중 규모는 VE심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디자인 반영 문화거리 조성공사나 전시관·박물관·학습관, 지식기반사업 및 예술품과 같은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계약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은 계약심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거시적인 면에서는 원가분석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실적인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광역시에서는 관련규정에만 근거를 두고 있고 원가분석자문단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성격이 비슷한 VE심의회위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원가분석자문단이 필요 없으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3.1.2 건설공사 설계VE 부서와 계약심사 부서의 이원화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 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비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설계 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는 대부분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사의 기초나 구조와 같은 공법변경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VE심의회가 완료되면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약심사부서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요청하게 되나 이때의 계약심사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미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VE심의회위원에서 논의되었으므로 큰 틀의 심사보다는 일반경비나 전산착오 등의 경미한 사항에 불과해 당초 계약심사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이는 다른 형태의 제도로 각 제도가 추구하는 형태는 달라 보이나 실제로는 공중에 대한 현장적용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동일한 성격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VE제도와 계약심사부서가 각각 별도로 설치 운영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인력이 낭비되고 VE심의 기간과 계약심사기간이 이중으로 소요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부서에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두 부서의 통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업무인력이동 없이 업무만 당초 계약심사부서로의 이관(환원)함이 타당하다.

3.1.3 외자구매부서의 부재

외국물품(기자재) 구입의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계약심사 의뢰된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234건 1,326억 원으로 전체 물품 2,261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기자재는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담수화시설과 같은 플랜트사업과 수질, 환경, 대기 등의 계측기 및 의료기기, 철도계측기와 같이 연구소, 교통공사 등의 특정부서에서 사용되는 완제품을 구입하거나 도시철도, 헬기부품 등과 같이 일부 부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수처리장과 같은 플랜

트사업의 경우는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국 지자체에서 일
반화되어 있으므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시험기나 측정기
와 같은 완제품은 대부분 1회성 구입으로 내구연한 동안 무상 수리기간이 끝
나 간혹 수리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구입에서 폐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구입의 경우에는 전체 대상물이 용도
폐기될 때까지 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정비와 함께 소모성 부품
은 지속적으로 교환하여야 하므로 반복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상 발
생시를 대비하여 항상 적정수량 이상의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외자부품구입 시 해당부서별로 수입전문 업체를 통
해서 구입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및 산하기관 등 그 어떤 부서나 기관에서도
외자물품만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거나 계약체결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는 없
다. 외자구매의 경우는 플랜트사업이나 큰 대형 국책사업은 정부기관인 조달
청 외자구매과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나 완성부품인 경우에는 각 수요기관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전체 물품심사금
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외자구매 전담팀의 신설여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3.1.4 계약심사금액 증액 및 사후관리 미흡

발주부서나 관련 업체에서는 계약심사 요청 시 사업 금액이 원안대로 반영
되거나 아니면 최대한 최소금액만 감액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원안으로
계약심사결과가 통보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감액이 작게 되면 발주부서에서는
사업내역서가 잘 작성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7년간
건설공사, 물품구매, 학술 및 기술용역 등 총5,632건을 심사했는데 그중 절감
률이 0%인 경우는 547건(공사 77건, 물품 239건, 용역 231건)으로 전체의 9.7%
이다. 그리고 심사결과가 증액된 경우는 설계변경심사를 제외하고는 단지 몇
건에 불과하다. 이는 설계변경을 위한 별도의 심사절차가 있으나 제도 시행초
기 계약심사부서에서 증액한 경우이외에는 없다.

이러한 심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계약심사부서는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예산절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로 인식되는 이유로

여기에 있다. 선행공종이나 공법의 적용여부에 앞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주거나 보완해 주는 게 맞다.

그러나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없거나 사업예산과 동일하게 사업비가 책정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일단 발주부서와의 협의하여 낙찰금액 잔액을 이용하거나 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는지는 확인 않고 있다. 예산확보여부도 중요하지만 사업공정상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금액을 증액하고 공사완료시까지 감시 또는 감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3.1.5 계약심사부서와 발주부서의 생태계 차이

계약심사부서는 발주부서로부터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내역서가 과다 계상되거나 관련법규 적용이 적법한지, 신기술이나 신규공법 적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또 현장여건과 현재 시공될 공법 적용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는 업무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추출할 뿐 만 아니라 설계업체나 시공업체, 대학교수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수시로 구하고 있으며, 또한 현황 파악과 공법적용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위해 현장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을 만큼 그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불필요 한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려는 책임감이 투철한 부서다. 그러다보니 발주부서나 건설업체에서는 계약심사부서에서의 설계내역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방법에 대해 예산절감 실적만을 높이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어 계약심사부서와 발주부서 및 관련업체간의 시각차가 분명하다.

이는 계약심사부서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성실성이 다른 방향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경직된 공무원조직도 문제가 있으나 계약심사부서에서의 업무형태나, 개인적인 성격, 부서의 분위기와 업무의 열정만큼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탓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사부서, 발주부서 및 해당업체 간에 충분한 검토와 대화가 필요하다. 사전 협의와 소통이 전제된다면 이런 시각차는 사라질 것이다.

3.1.6 충분한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개괄적으로 수립하여 예산부서로 넘긴다. 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사업예산이 개략 결정되면 다시 시의회에 넘겨져서 사업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사업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발주부서에서는 그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며,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주민공청회나 간담회가 추가되거나 생략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시행은 곧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최초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모른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참고하고 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경험이 풍부한 시공사 및 설계업체 관계자의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작성되거나 확보된 예산이 남는 경우보다는 부족한 경우가 더 많다. 확보된 사업비가 충분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이윤이 없다면 성실시공이나 책임시공은 처음부터 제고의 여지가 없다.

또한 발주부서 공무원을 대리하여 공사의 시공품질과 공기를 책임지는 책임감리 업체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어느 특정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을 것이고 시민의 안전이나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부산시의 비전을 위한 사업, 미래 산업동력이 되는 사업과 같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와 예산의 배분이 이루어 지다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업은 예산확보가 어렵거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예산에 사업을 맞추다 보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규모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3.2 기술적 관점

3.2.1 계약심사 절감률 저하 및 용역성과품 검토 부족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전에는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 금액이 회계부서의 계약체결금액의 기준이 되어 계약금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외형상만으로

불 때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나 이 제도 시행이후 부터 2014년 말까지 약 7년간 총 5,632건을 심사하여 2,612억 원을 절감하였다. 이는 계약심사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동안 원가개념이 희박한 공공기관의 짜맞추기식 원가설정이라는 관행을 개혁한 결과라고 본다. 하지만 최초 시행년도의 높은 절감률이 시행연도가 갈수록 점차 예산 절감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발주부서나 민간 설계용역업체에서도 원가계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원가계산에 대한 많은 학습이 이루어져 이제는 이 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당초 추구하는 목적과 취지임에도 아쉽게도 발주부서에서는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성과품(설계내역서)을 자체 검토과정 없이 그대로 계약심사부서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용역업체로부터 성과품을 제출받았을 때 발주부서에서는 당초 과업수행을 요구한 과업지시서 내용과 같이 사업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공사기간이나 산출물량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성과품의 준공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하나 예산부족이나 공사기간 부족의 이유로 소홀히 취급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용역이라는 사유로 맹신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발주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심사결과 반복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발주부서의 무소신, 무책임성이 개선되지 않고 성과품에 대한 검토 등 발주부서의 고유 업무를 계약심사부서에 미루는 경향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3.2.2 계약심사 삭감대비 사업내역서 작성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부서(11%)와 설계용역업체(10%)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초 설계내역서 작성기관에서는 계약심사에 대비하여 물량 산출이나 단가 산정 시에 계약심사시의 삭감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과다하게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비록 이는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나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발주부서에서 직접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내부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적지만, 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을 감안하다보면 설계금액이 과다 혹은 과소 계상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자재 단가를 산출할 경우 조

달청에서 정한 자재가격이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의 견적가를 적용하거나 물가자료지의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공사기간이나 작업난이도, 작업형태, 작업품질, 지역여건, 작업특성 등의 공사현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각 각의 관련품셈에서 산정된 최고의 효율만을 적용시켜 과다설계를 하고 있다.

또한 용역의 경우에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또는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발주할 경우에는 한 분야의 효율만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각 각의 효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신기술의 경우에는 신기술과 유사한 표준단가를 검토하여 유사한 품을 적용하거나 실적공사비를 조사하여 원가 계산 하여야 하나 개발자가 제시한 견적가격만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다 계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발주부서의 담당공무원이 그 전문기관의 의견과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발주부서는 사업내역을 세밀히 검토해야하나 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3.2.3 실적위주의 계약심사 우려

계약심사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작성되어 심사 요청된 내역서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따라 원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과다 계상되었거나 설계내역서상의 적용오류, 관련 법규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하여 지정기간 내에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와 회계부서에 동시에 통보한다. 이 제도 시행초기에는 발주부서나 설계용역 업체에서도 원가절감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절감금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이 제도가 정착된 지금은 원가계산 작성의 반복 속달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대한 지식이 평준화되어 초기보다 절감액이 훨씬 낮아지고 있다. 이는 심사기법의 향상이나 축적된 노하우에 기인된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나 계약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성취감이 결여 될 수 있고, 또한 모든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담당자들 상호간의 계약심사실적 과소에 따른 업무능력으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실적이 공무원의 조직특성상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어차피 공무원조직은 업무실적이

인사고과나 상급자에게 능력으로 평가되거나 동료 직원들 간에도 업무능력으로 비교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계약심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시행초기에는 올바른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업무였다면 지금은 실적위주의 절감률에 의존하는 단순수치보다는 공법이나 공중, 유지관리, 수명(life cycle)이나 시민안전에 치중하는 질적 위주의 계약심사로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절감액보다는 심사의 질에 치중해야 한다.

3.2.4 과다설계 및 반복지적 설계자에 대한 벌칙부과 전무

발주부서에서 장시간에 걸쳐 여러 방면으로 조사와 기획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한 내역서가 계약심사 시 마다 지속적으로 과다 설계되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또는 변경없이 반복적인 설계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경우는 발주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반복 설계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완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아 자재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되고 보험요율을 확인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수정 없이 활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고, 물품은 직접재료비 단가 미확인, 간접재료비율,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노임을 분리하지 않고 적용한 경우등 이다. 또한, 용역은 연구원의 인원수 과다 산정, 예비규정 미 준수, 각종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의 소요경비, 청소나 경비의 인건비를 시중 보통 인부임으로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대부분 계약심사부서에서 신규심사 요청 건이 아닌 기존 심사내용을 반복 지적한 사안임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심사부서에서는 해당 발주부서 업무담당자에게 벌칙부과까지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반복되는 원인은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의 잦은 업무변경이나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 부재, 담당자의 업무숙지에 대한 노력부족, 업무에 대한 연구 검토 부족과 전문기관에서 행한 용역을 너무 맹신하거나 용역업체를 관리 감독할 업무능력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과다설계나 오류설계의 반복지적 자는 벌칙부과가 필요하다.(반복지적 주요내용 : 붙임7 참조)

3.2.5 계약심사부서의 양면성

계약심사부서 및 발주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시 현재 심사부서 공무원에게는 이 부서에 만족하는 지와 차후 이 부서에 다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는 대다수가 근무에 만족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다. 발주부서 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계약심사부서에 대다수가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복지부서와 노동조합에서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실시한 근무여건 등 종합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항상 감사관실이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모두에 해당되고 있어 본고에서 조사한 설문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다수의 직원들이 계약심사부서에 근무를 희망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어느 부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심사부서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감사부서라서 선호하며 이곳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은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기본적인 업무가 파악되어 있으므로 업무에 대한 적응과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사부서에서 근무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전문관 제도나 공모의 방법을 택하되 인사상 우대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3.2.6 계약심사자료 관리의 이원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 실시결과 통보 후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하여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도 해당 건에 대하여 3년간 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는 계약심사자료 프로그램(계약심사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계약심사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재정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재무프로그램(지방재정관리시스템²⁰, e호조)에도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가 서로 달라 계약심사결과를 각각 2개의 다른 프로그램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고 있으므로 2개의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통합하거나 하나의 시스템만으로 확대 활용하거나 또는 연계하여 사용함이 업무의 효율성면이나 유지관리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20) 지방재정관리시스템(재정계획, 예산관리, 수입관리, 자금관리, 계약관리, 지출관리, 자산관리, 채무관리, 재무결산. e-hojo.go.kr)

제4장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현황 및 처리결과 분석

4.1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현황

4.1.1 계약심사제도 일반 현황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2008년 7월 1일부터 정책기획실 내에 계약심사담당관을 신설(정식 직제 : 8월8일)하여 공사계약심사담당과 물품계약심사담당의 2개 담당에 전담인력 15명을 배치하여 계약심사업무를 시작하였다.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자치구·군, 공사·공단, 부산의료원, 시 출연기관(100분의 50이상) 으로 하였고, 심사대상은 공사·용역 물품 설계변경 심사제외 대상 등 5개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대상금액은 공사 5억 원(종합공사 이외 기타공사 3억), 용역 1억 원, 물품 2천만 원 이상의 추정금액으로 정하였으며 공사·공단, 의료원, 출연기관은 그 대상금액이 공사와 용역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물품의 경우에만 1억 원 이상으로 정하여 자율성 감안했다. 또한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심사대상으로 했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대상 사업은 계약심사의 실 이익이 없는 경우로 보아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16개 자치구·군에서는 시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은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구·군 자체 사업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 폭을 넓혀 구·군과 업무협의를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제도가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서울특별시의 성공사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초기 신속하게 관련법령²¹⁾을 제정하고 직제와 인력을 배치한 결과로 판단된다.

현재는 계약심사 담당부서가 시행초기 정책기획실에서 감사관실로 변경되었으며, 공사설비계약감사와 구매계약감사 2개 담당부서(係)에서 전담인력 15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감사관실로 직제가 개편된 이후에도 직제 변경 전의 전담인력이 모두 계약심사업무를 그대로 처리하고 있어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 공백없이 업무흐름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

4.1.2 일상감사제도

일상감사는 정확히 말해 계약심사제도와는 별개의 문제이나 계약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중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일상감사제도가 생겨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를 함께 묶어서 동일 부서에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일상감사제도에 대해 잠시 언급하기로 한다.

일상감사제도는 감사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3.2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3호)을 제정하여 2010.07.01.부터 시행되었으나 일상감사부분은 1년 뒤인 2011.07.0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도 일상감사에 관한 업무규정²¹⁾을 만들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계약심사부서에서 일상감사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된 것이다.

먼저, 일상감사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의 업무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상감사제도는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일상감사의 대상을 보면 추진일정의 적정성과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의 타당성,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여부, 추진과정에서의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도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상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관한 집행업무와 계약업무,

21)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정 2008.12.3., 규칙 제3617호)

22) 부산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제정 2012.1.18., 훈령 제1358호)

예산관리업무 뿐 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모든 부분에 대하여 그 일상감사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아직 시행초기단계라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등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주요정책에 대한 감사보다는 계약체결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만을 한정하여 본다면 일상감사는 계약심사부서에서 계약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체결부서에 통보하면 계약체결부서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방법, 참가자격, 입찰제한범위와 관련절차 등이 법적으로 적합한지를 감사부서에 요청하여 그 의견을 협의한 후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일상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초 정책기획실 소속이었으나 감사관실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계약심사 업무와 일상감사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업무와 일상감사업무를 동일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계약심사 담당자가 처리한 계약심사내용에 대해 계약심사를 담당한 담당자가 일상감사 업무를 맡도록 일관되게 조정하여 업무에 대한 상황파악이 빠르고 처리능력이 높아 심사와 감사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상감사에 대한 처리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확인 등의 실사를 병행할 수도 있다. 또 감사부서에서는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결과를 집행부서(계약체결부서 또는 발주부서)에 통보하면 집행부서에서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적정의견인 경우 생략)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부서에서는 일상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Table 5는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세부기준이다.

Table 5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

구 분	대상 업무 및 기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				
	○ 민간자본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신규사업)				
계약업무	○ 공사, 용역, 물품제조, 그 밖의 계약				
	구분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기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예산관리업무	○ 국공유재산 등 매각매입에 대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매각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6천㎡ 이상의 재산 취득 				
그 밖에 업무	○ 채무부담계약 10억 원 이상 및 수입이 되는 계약 5억 원 이상				
	○ 연간 단가계약 1억 원 이상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금액의 20% 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업무	○ 5억 원 이상 예비비 집행 사업				
	○ 지방채 발행				
그 밖에 업무	○ 기관의 주거채 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				
	(각 항 감사관이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에 업무	○ 그 밖의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1.3 계약심사 업무현황

현재 부산광역시의 계약심사업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관실내 2개 부서에서 행정, 토목, 건축, 전산, 녹지, 공업 등 총 15명이 각 직렬별로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 시행초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심사기법의 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심사인력의 전문화와 민간업체의 정확한 작성 등의 원인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내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이 되었음에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력이 감소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됨으로서 계약심사업무를 더 면밀히 검토하거나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인력증원의 효과를 가져왔고, 업무가 편중되는 계절적 시기와 특정 담당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시는 업무를 분산하여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성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다.

계약심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원가분석을 통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건전한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된 만큼 사업에 대한 원가·설계·공법 및 사업수행능력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업무로 정확성과 신속성이 필요조건이다. 그러므로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완 공문을 보내지 않고 즉시 유선 통보하여 발주부서에서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심사처리 기간을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는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 내부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5일간 단축하여 발주부서와 회계부서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4.2 계약심사 처리현황 분석

4.2.1 담당공무원 인력구성 및 직제

이 제도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총 49명이다. 이중에서 행정직은 16명이고 기술직은 33명이다. 2008년 7월부터 계약심사업무 시행당시 재정기획실 소속하에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로 직제가 신설되어 2개부서(係)에서 총 15명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당시 구성인원은 행정직 5명, 기술직이 10명이다. 기술직은 토목 4명·건축 2명·기계 2명·전기 1명·녹지 1명, 전산 1명이다. 이러한 직제와 정원으로 3년 정도 지속되어 오다 2012년 1월 1일자로 감사관실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되었다. 대단위 소속(局)으로 변경되었지만 세부조직과 근무인력은 현원대로 유지되어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하였다. 오히려 감사관실 소속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설비계약감사 부서를 신설하여 공사와 물품업무를 담당하던 2개 담당(係)에서 설비업무를 전담하는 3개 담당(係)으로 직제를 증설 운영하였다. 1년 6개월 동안 운영되어 오다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조직 틀에 맞춰 직제 개편시에 3개 부서(係)에서 2개부서(係)로 다시 직제가 통합 변경²³⁾되었으나 근무인력은 감소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3) 3개부서 : 공사감사, 설비감사, 물품구매감사 → 공사설비감사, 물품구매감사

이는 계약심사에 의한 예산절감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그 어떤 부서보다도 계약심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직제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 필연적으로 근무인력의 증감이 뒤 따르게 되지만 계약심사부서에서는 2번의 큰 직제개편 속에서도 근무인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그만큼 부산광역시 내부적으로도 계약심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전체 근무현황을 Table 6과 Fig. 6에 나타내고 있다.

Table 6 계약심사 담당공무원 근무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과장	담당	직원
합 계	49	4	7	38
기술직	33	2	4	27
행정직	16	2	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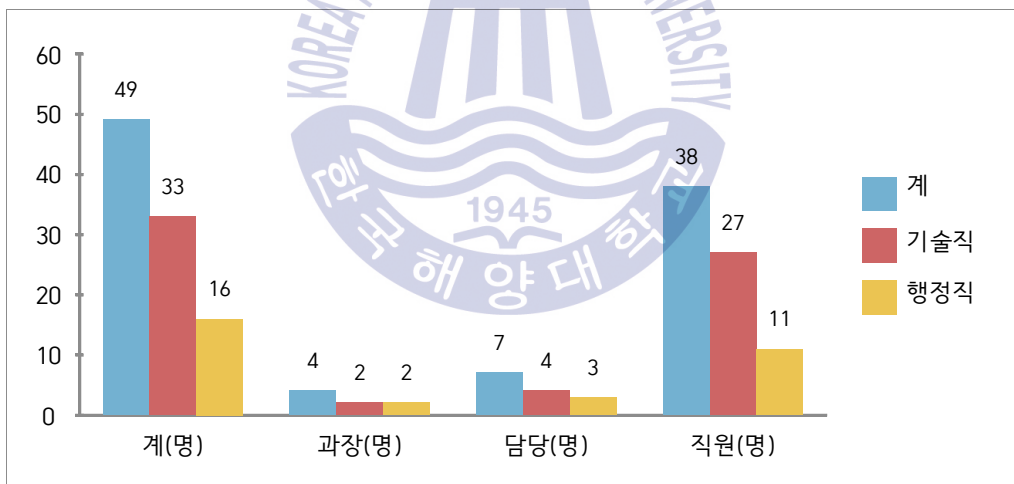


Fig. 6 계약심사 담당공무원 근무현황

여기에서 보면 기술직공무원이 행정직공무원보다 약 1.5배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정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보임기간이 짧아 인사이동이 잦았다는 것과 또 주로 청소·경비·건축물 유지관리와 같은 일반용역이나 학술용역 및 완성물품의 구매제조를 담당하는 행정직공무원보다는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설비와 같은 사업금액이 큰 건설

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이 업무종류나 형태가 다양하여 그 만큼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직렬 중에서도 유독 토목직렬이 많은 것은 산과 강·바다를 접해있는 부산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터널, 도로, 항만, 교량, 산업단지조성 등 대다수 건설공사가 토목공사를 기초로 하여 건축과 기전설비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설사업의 공정별 특성으로 인해 그에 따른 기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 토목공사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정비사업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행정직공무원의 업무영역보다는 기술직공무원 위주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실적분석과 공통 현안업무 분석 등 계약심사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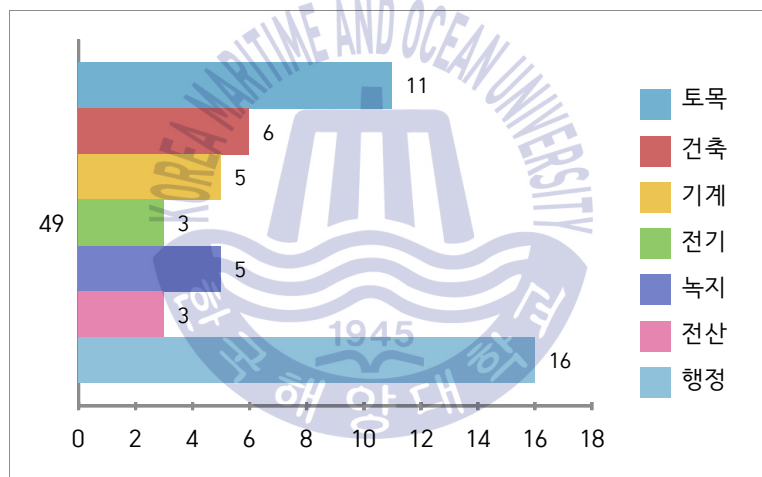


Fig. 7 계약심사 담당공무원 직렬별 분포도

4.2.2 자치구·군의 인력 및 직제 분석

시 분청에서는 2008년 7월부터 계약심사 업무를 시작한 반면에 인력과 재정이 다소 열악한 자치구·군에서는 2009년 4월에 처음으로 동래구에서 2명의 인력으로 계약심사업무를 시작하였고 뒤이어 사상구와 남구에서 업무를 개시하여 2013년 1월 영도구를 마지막으로 자치구·군의 계약심사 조직과 인력 구축이 완료되었다.

자치구군의 인력을 보면 동래구와 기장군에서 각각 2명의 인력과 전담 담당

조직(係)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전담부서 없이 관련과(課)에 1명씩을 배치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심사대상금액이 자체 예산만을 심사하는 적은 금액과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단체장의 인사방안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배치된 인력은 중하위 직급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재까지 계약심사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조직과 인력배치가 늦어지고 심사인력이 소수 및 하위직급으로 구성되고 있음은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을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이 자체재원보다는 국·시·비보조나 재배정사업에 의존하는 열악한 재무구조 형태도 그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Table 7과 Fig. 8은 시 본청 및 자치구·군의 계약심사부서의 근무인력배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내역은 붙임 1과 같다.

Table 7 시 본청 및 자치구·군 담당공무원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이하
합 계	33	1	2	12	12	6
시 본청	15	1	2	8	4	0
자치구·군	18	0	0	4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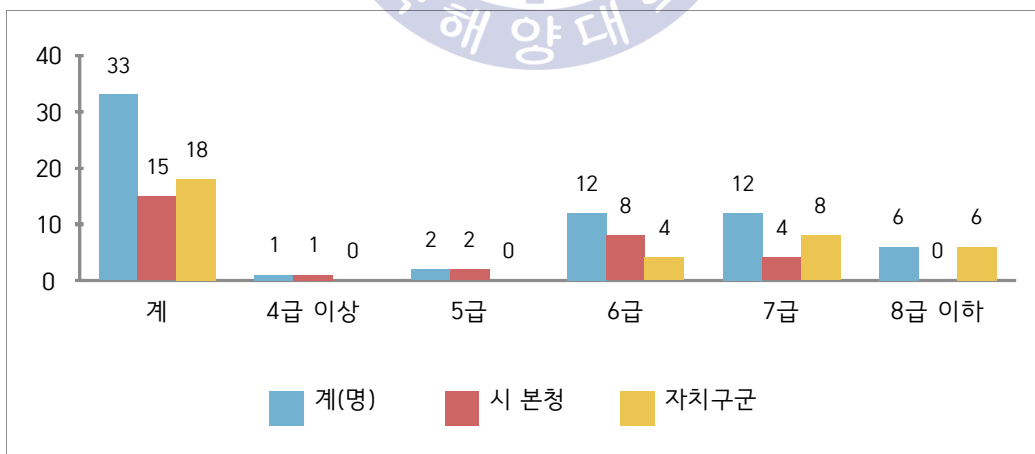


Fig. 8 시 본청 및 자치구·군 담당공무원 인력 현황

다음으로, 자치구·군의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금액을 살펴보면 정부(안전행정부) 지침에는 종합공사는 추정금액 3억 원(일반 2억 원)이상, 용역은 7천 만 원 이상, 물품은 2천 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공사의 경우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기장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용역의 경우도 북구와 사상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는 모두 하향조정하여 계약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물품은 동래구와 해운대구, 사하구만 심사대상금액을 하향조정하였고 나머지 자치구는 모두 안전행정부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금액은 사상구와 기장군이 본청의 심사금액과 동일하게 20억 원 이상으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높게 산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침수공사, 산업공단지역 기계펌프장 증설 및 교체, 낙동강고수부지 공원조성, 영상 콘텐츠 문화사업, 나비공원조성사업 등의 대규모 지역사업과 농어촌특별회계 등의 국비투입 예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래구는 오히려 타 자치구와 달리 설계변경대상금액을 대폭 하향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천 만 원 이상 계약금액에 대해 전체 10%이상 변경 시에 심사를 받도록 강화하고 있고, 해운대구는 5천 만 원 이상인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센텀시티나 해운대신시가지 및 해운대해수욕장 등 인근 역세권과 재개발 사업지가 계속하여 개발되고 있어 현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8 과 Fig. 9는 시 본청 및 자치구·군의 계약심사대상 금액을 나타냈다. 심사금액의 세부내역은 붙임 2에 첨부하였다.

Table 8 시 본청 및 자치구·군 심사금액 현황 (단위 : 천만 원)

구별 구분	시 본 청	중 구	서 구	동 구	영 도 구	진 구	동 래 구	남 구	북 구	해 운 대	사 하 구	금 정	강 서	연 제	수 영	사 상	기 장
총 합	50	20	20	30	10	20	1	30	30	30	30	30	30	30	30	30	5
전 문	30	3	10	5	5	20	1	20	5	5	2	5	5	5	10	20	5
기 술	10	3	5	3	3	5	0.5	5	7	5	1	5	5	3	5	7	3
학 술	10	3	5	3	3	5	0.5	5	7	5	1	5	5	3	5	7	3
물 품	2	2	2	2	2	2	0.3	2	2	1	1	2	2	2	2	2	2
설계변경	200	50	50	50	30	50	1	50	50	5	30	50	50	50	50	2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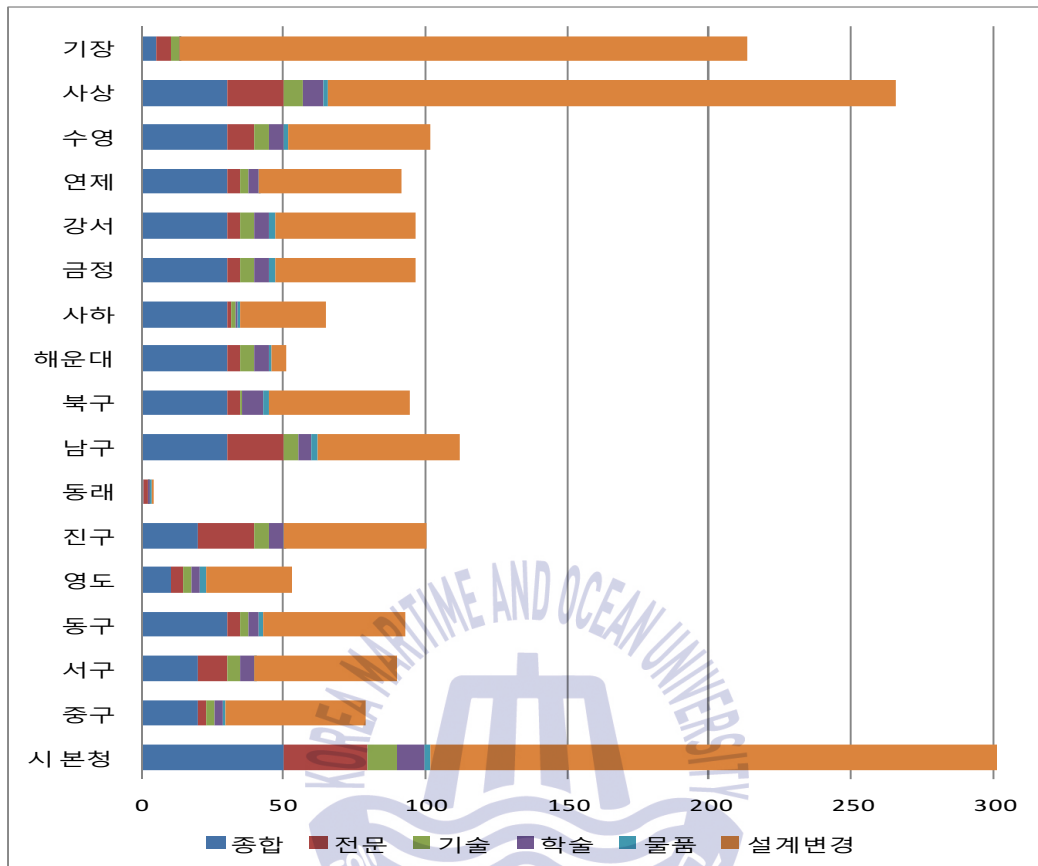


Fig. 9 시 본청 및 자치구·군 심사금액 현황(단위 : 천만 원)

4.2.3 타 시·도의 인력 및 직제

부산광역시의 계약심사인원은 15명으로 특별시·광역시중 서울과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대구, 인천, 대전, 울산시와는 비슷한 직제와 인력을 나타내고 있으나 직제는 광주시가 4개 담당(係), 울산은 3개 담당(係)으로 오히려 부산보다 직제수가 많다. 서울은 사업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사업형태가 다양하여 계약 심사과를 설치하여 4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이한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산보다도 경제규모와 인구가 훨씬 적은 광주시가 21명으로 부산의 15명보다도 더 많은 직제와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광주시는 계약심사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직전 1년간의 시범실시를 통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이미 체험하였기에 시행초기

부터 계약심사대상과 인력을 확대 투입시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약심사에 대비하였고 그 절감된 예산을 복지나 환경개선과 같은 곳에 투자를 위해 재원마련을 위한 한 방편으로 여겨진다.

지방재정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복지를 최대한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재원조달의 적절성, 주민요구에 대한 대응성, 자원 활용의 효율성, 중앙정부 통제로 부서의 효율성, 서비스공급의 현지성 등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때 지방재정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심사제도가 지방재정의 일익을 담당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역시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이라 서울과 비슷한 직제와 인력을 갖추고 있으나 경남은 별도의 기술심사과를 만들어 서울이나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도내 공업도시가 많고 농공단지가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4대강사업(합천보, 함안보)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의 인력과 직제를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부산광역시는 계약심사 담당자를 근무경력이나 보직경로를 감안하여 심사능력을 갖춘 자를 엄선하여 배치하고 직제를 감사관실내에 배치함으로써 심사부서의 위상 제고고 담당직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했다. 계약심사부서가 감사관실 소속인 경우는 16개 시도 중 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 등 5개 시도뿐이다. Table 9는 전국 시도 계약심사부서 직원들의 직급별 현황이다.

Table 9 전국 시도 계약심사부서 직원현황 (단위 : 명, 직제는 계단위 수)

구분	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별정·기능	직제(계 단위)
합계	248	17	38	98	77	6	11	39
서울	42	1	5	23	12		1	6
부산	15	1	2	8	4			2
대구	11	1	2	3	5			2
인천	15	2	2	8	4	1	1	2
광주	21	1	4	7	4	1	4	4

대전	11	1	1	4	5			1
울산	13	1	3	4	4		1	3
경기	32	1	6	10	13	1	1	6
강원	12	1	2	3	4	2		2
충북	7	1	1	3	2			1
충남	8	1	1	3	2		1	1
전북	10	1	1	3	4		1	1
전남	10	1	1	4	4			1
경북	9	1	2	3	3			2
경남	23	1	4	10	6	1	1	4
제주	7	1	1	3	2			1

또한, 전국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214개 기초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14개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준비 중이거나 지자체의 사정으로 시행을 미루고 있다. 현재 준비 중인 이들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의 1개소, 충북 4개소, 경북 8개소, 경남의 1개소 등 이다. 이들 기초단체들은 이 제도가 지역실정에 크게 부합되지 않거나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제설치를 미루거나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이중 창원시의 경우는 계약심사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해오다가 2012년부터 일상감사가 시행되자 일상감사로 계약심사에 갈음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제도의 절차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활용 능력에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제에 대한 운용방법은 향후 업무성과를 분석하여 계속 연구 및 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 설치 및 실시현황을 첨부하였다(붙임45)

4.2.4 계약심사 대상금액 분석

첫째, 부산광역시 공사부분의 계약심사 대상금액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종합공사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전문공사 3억 원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대전·울산·강원도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정해 놓고 있다. 기술 및 학술용역은 2억 이상이나 부산시에서는 용역의 빈도수, 활용사례,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1억 원으로 확대 조정하여 운용 중

에 있다. 서울시만 2억 원으로 안전행정부 지침과 동일하며 Table 10에서와 같이 대전, 울산, 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도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물품에 대한 심사금액은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2천만 원 이상이지만 울산광역시만 7백만 원으로 확대되어 있다. 울산의 경우 이 심사대상 금액만으로 볼 때 13명의 인력으로 공사와 용역 및 물품 등 모든 계약심사업무를 처리할 경우 담당공무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설계변경에 대한 대상금액은 20억 원으로 전체 시·도가 동일하나 인천과 전북의 경우는 설계대상금액을 정하지 않고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기존 방식대로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계약심사 대상 금액은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되나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하고 새로운 심사 기법이 도입되어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고 심사업무가 취약한 자치구·군에 대한 업무지원 및 배려차원에서 의무적 대상금액을 하향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관련법령이 제·개정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금액을 낮추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계약심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주변여건이 변화될 때에는 대상금액을 하향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Table 10은 전국 시·도의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금액이다.

Table 10 전국 시·도 계약심사 대상금액 현황 (단위 : 천만 원)

구 분	부 산	서 울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총 합	50	50	50	0	50	30	30	50	40	50	50	50	50	50	50	50
전 문	30	30	30	0	10	10	50	30	30	30	30	30	30	30	30	30
기술용역	10	20	10	0	10	5	2	20	5	20	10	20	20	20	20	20
학술용역	10	10	10	10	10	5	2	10	5	20	10	5	20	10	10	20
물 품	2	2	2	2	2	2	0.7	.2	2	2	2	2	2	2	1	2
설계변경	200	200	20	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0	200	200	200	200

4.2.5 계약심사 기간 단축

부산광역시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거나 지역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운동과 함께 공공사업을 조기에 발주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모든 발주부서에서는 조기 발주로 계약심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초에 집중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조기발주로 인하여 집중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예산잔액 집행이나 추가집행 등 제정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으로 계약심사건수가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심사부서에서도 발주부서의 조기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2009년도 부터 심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기집행 기간이외에는 심사기간을 다시 10일로 환원하는 등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Table 11과 같이 심사처리기간은 7년간 전체 평균 1건을 처리하는데 4.8일이 소요되어 심사부서 자체내규로 정한 5일이내에 계약심사가 처리되었다.

Table 11 연도별 공종별 계약심사 1건 처리기간 (단위 : 일)

구분	평균	공사	용역	물품
2008	8.7	10.5	7.2	8.6
2009	3.9	3.8	3.7	4.2
2010	4.2	4	4.5	4.1
2011	3.9	4.5	3.9	3.5
2012	4.2	5	3.9	3.7
2013	4.2	5.7	3.7	3.4
2014	4.3	5.2	4.2	3.5
평균	4.8	5.5	4.4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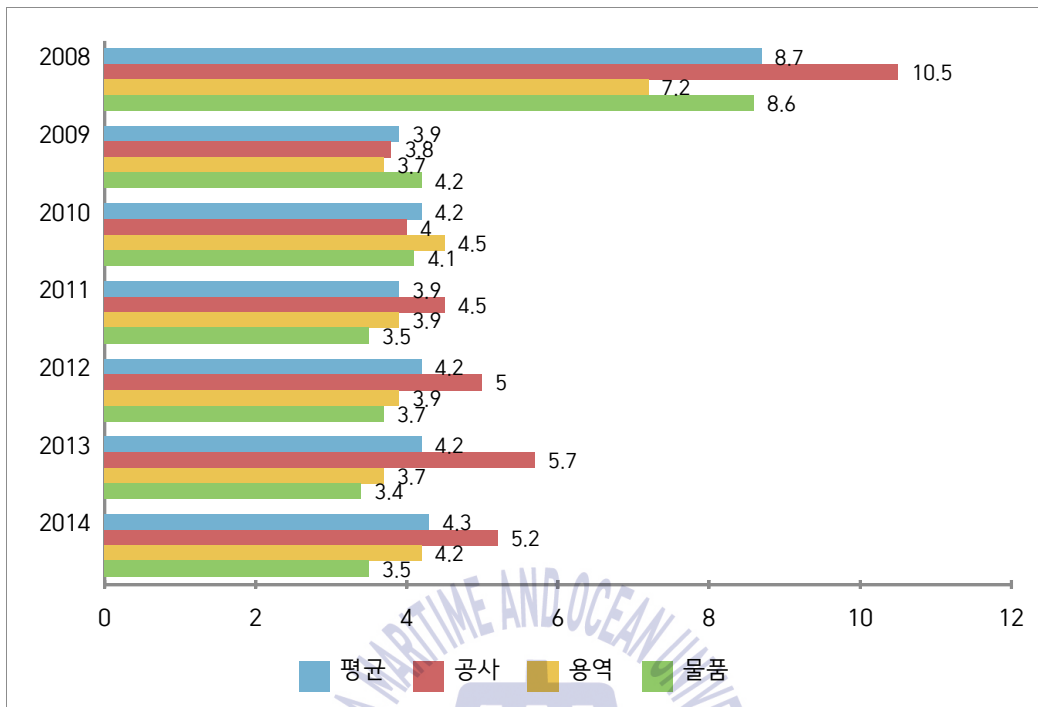


Fig. 10 연도별 공종별 계약심사 1건 처리기간(단위 : 일)

현재,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약심사 처리기간 5일은 안전 행정부의 처리기간 10일을 5일이나 단축시킨 것으로 이 단축된 5일을 다시 단축하는 것은 부실심사의 우려가 있어 더 이상의 단축은 어렵다고 본다.

계약심사는 관련법규와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검토와 함께 현장조사를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더 이상 단축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담당공무원의 능력이 향상되고 심사기법이 전산화되어 연구와 검토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획기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반복적인 물품구매처럼 심사기간을 단축할만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련규정으로 정하는 것 보다 담당공무원 스스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공정심, 청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는 공무원조직의 내부적인 통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Table 11과 Fig. 10은 연도별-공종별 계약심사 1건 처리기간을, Table 12와 Fig. 11은 연도별 공종별 계약심사 처리건수이고, Table 13은 연도별 계약심사 건수 및 평균 1건 처리기간이다.

Table 12 연도별 공종별 계약심사 처리건수 (단위 : 건)

구분	합계	공사	용역	물품
2008년	319	89	95	135
2009년	692	281	222	189
2010년	779	307	237	235
2011년	837	290	214	333
2012년	941	305	203	433
2013년	1012	337	212	463
2014년	1052	338	241	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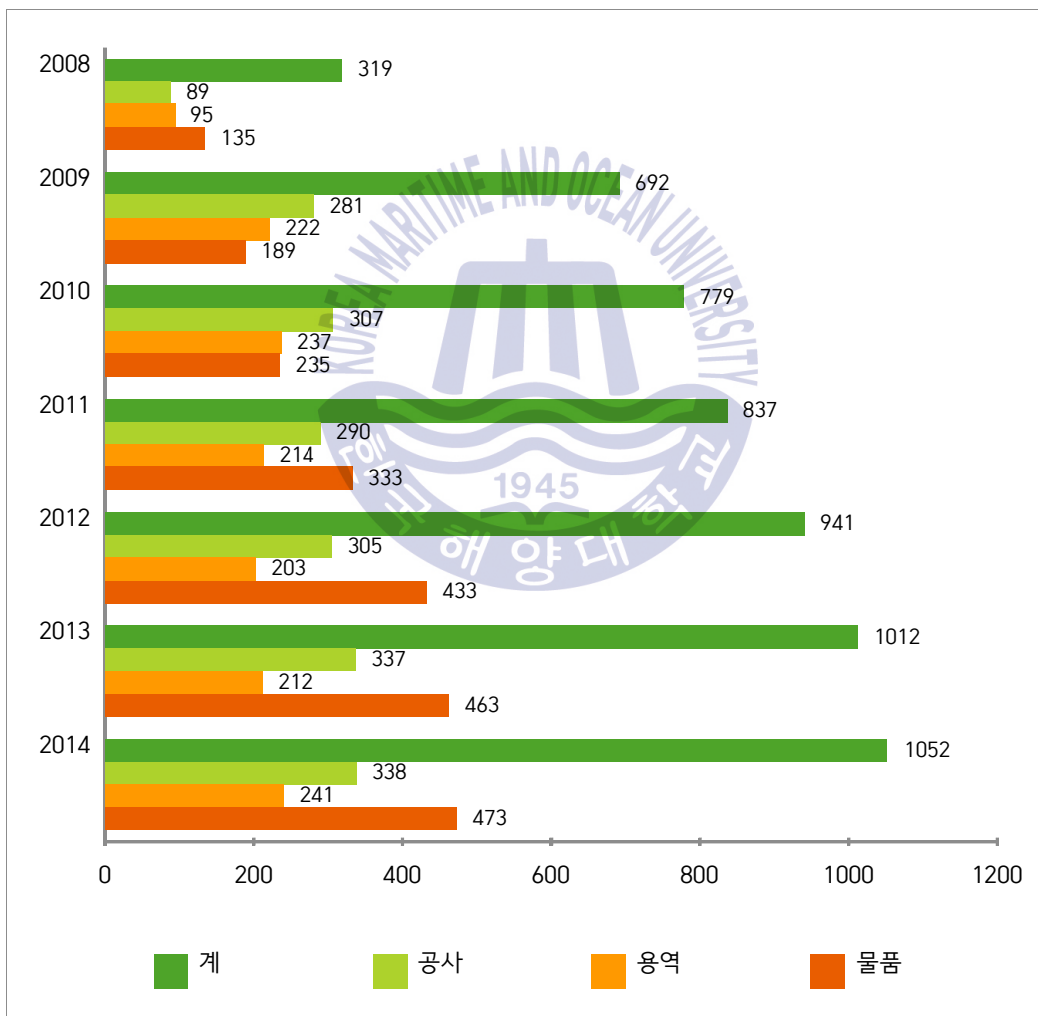


Fig. 11 연도별 공종별 계약심사 처리건수

Table 13 연도별 계약심사건수 및 평균 1건 처리기간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건)	기간 (평균일수)	건수	기간	건수	기간	건수	기간	건수	기간	건수	기간	건수	기간	건수	기간
계	5,632	4.8	319	8.7	692	3.9	779	4.2	837	3.9	941	4.2	1,012	4.2	1,052	4.3
공사	1,947	5.5	89	10.5	281	3.8	307	4	290	4.5	305	5	337	5.7	338	5.2
용역	1,424	4.4	95	7.2	222	3.7	237	4.5	214	3.9	203	3.9	212	3.7	241	4.2
물품	2,261	4.4	135	8.6	189	4.2	235	4.1	333	3.5	433	3.7	463	3.4	473	3.5

4.2.6 실적분석

부산광역시는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체 7년 동안 총 5,632건을 심사하여 2,6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계약심사제도는 건설공사, 물품, 용역의 3분야로 대분류하여 시행 첫해인 2008년도에는 319건을 심사하여 405억 원을 절감하였고, 2009년에는 692건에 351억 원을, 2010년에는 779건에 587억 원을, 2011년에는 837건에 296억 원을 2012년도에는 941건에 350억 원을 각각 절감하였다. 그리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1,012건 293억원, 1,052건 327억의 예산을 각각 절감하였다. (붙임 3 :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처리 현황) 예산절감률은 전체 평균 4.07%이나 공사는 4.31%, 용역은 3.16%, 물품은 3.92%로서 계약심사를 통해 원가절감 효과는 공사분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약심사제도의 성과를 단지 예산 절감률이라는 단순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 달성유무를 다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견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성향이 뚜렷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물론 재정운영상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경제적인 효율성도 최대가 되어야하고 개별적인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행정경비의 절감과 투자재원의 증대 및 사업성과의 극대화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용 가능한 재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계약심사의 목적과 동일하게 예산절감에다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과열경쟁이나 지역사정을 감안한 형평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건수나 절감률 등 관련 실적자료를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와의 정보교환에 의하면 부산시가 타 시도보다 절감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붙임 6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현황) 이런 원인은 1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계약심사를 받기 전에 기술검토와 설계금액을 조정하는 VE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실적을 계약심사에 포함시키지 않아 절감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와 VE업무를 동일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VE업무를 계약심사부서가 아닌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심사와 VE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실적저하 요인의 공통적인 실례라고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VE실적을 살펴보면 Tabl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에만 계약심사 평균 절감률보다 낮은 2.4%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이외 5개 년도에는 계약심사 절감률보다 훨씬 높다. Table 14는 부산광역시 VE 실적이다.

Table 14 부산광역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실적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 수 (건)	26	27	18	18	2	6
절감액 (억 원)	751	279	280	280	3.9	105
절감률 (%)	4.5	2.46	6.6	6.6	4.01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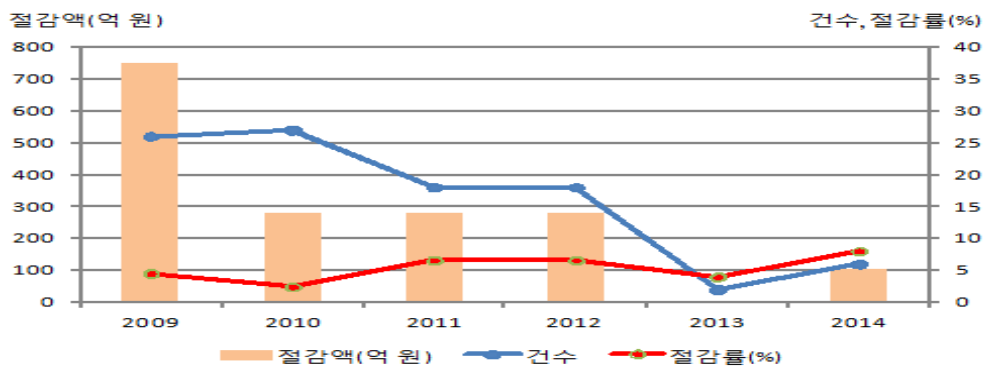


Fig. 12 부산광역시 설계의 경제성검토 실적

4.2.6.1 연도별 실적분석

시행 첫해인 2008년도에는 공사 89건 용역 95건 물품심사 135건 등 총 319건을 심사하였다. 심사요청금액은 8,000억 원에 심사완료금액이 7,656억 원으로 약 4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시행 후 6개월 동안 이처럼 많은 금액을 심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지역경제사정의 악화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운동과 직결된다.

첫째, 2009년도에는 심사건수는 전년도 319건보다 692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되었으나 심사완료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하며 오히려 절감액과 절감률은 더 낮아졌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금액이 적은 단종공사가 많았고 또한 비교적 금액이 낮은 용역과 물품의 심사건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둘째, 2010년도에는 전체 심사건수는 779건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공사에 대한 심사 건수가 307건으로 앞서 2개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35건의 물품과 237건의 용역보다도 많다. 절감액은 452억으로 4.1%의 절감률을 보였으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조기발주정책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2011년도는 전체 심사건수는 837건으로 평균년도보다 많은 편이나 절감률이 전년도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 296억 원이다. 이는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사보다는 금액이 적은 물품심사가 333건으로 전년 대비 42%로 늘어나 전체 심사건수가 증가되었으나 절감액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넷째, 2012년도에는 심사건수가 앞서 5개년도중 가장 많은 941건이나 절감액은 평균수준인 350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물품의 심사건수는 43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절감율도 전년도 3.99%대비 4.85%로 8.6% 증가하였다.

다섯째, 2013년도에는 공사와 물품에 비해 용역의 심사건수는 예전과 비슷하나 7년간 전체 절감률인 3.16%보다 1.42% 낮아진 3.08%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나 이는 계약심사가 이미 정착단계에 들었다고 볼 수 있다. 발주부서의 감리능력이나 민간용역업체의 설계서 작성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는 계약심사건수는 지난 7년간 최고인 1,052건으로 절감률은 전년도 3.08% 보다는 3.43%로 다소 높으나 공사·용역·물품 모든 분야의 절감률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어 계약심사가 완전한 정착단계를 넘어 이제는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계약심사제도가 정착화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설계자나 심사자가 기존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강력히 도입하여 절감된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먼저 재투자 되어야만 계약심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합당한 것이다. Fig. 13은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계약심사 처리건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부실적은 붙임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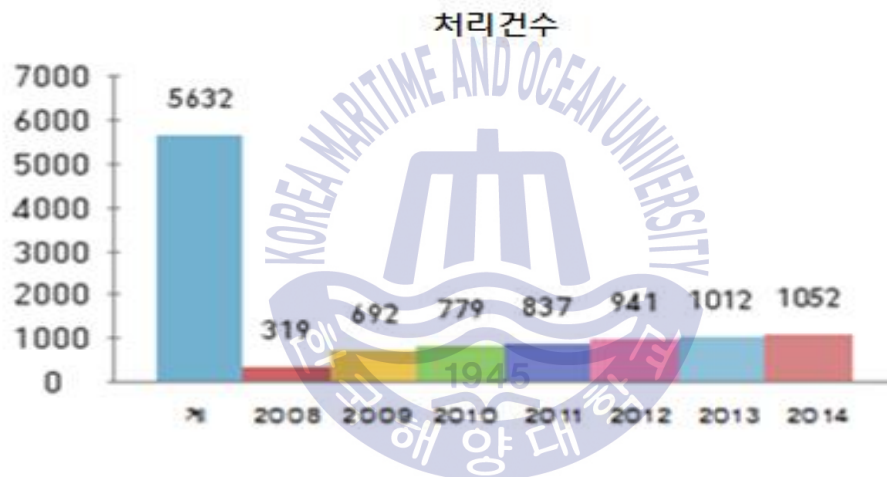


Fig. 13 연도별 계약심사 처리건수 현황

3.2.6.2 공사 계약심사 실적분석

1) 실적분석

공사분야의 심사건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947건으로 전체 심사완료 건수의 약 34.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 절감액은 2,016억 원으로 전체 절감률의 77%로 계약심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업대상 금액이 물품과 용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Fig. 14는 연도별 공사부분의 심사건수와 절감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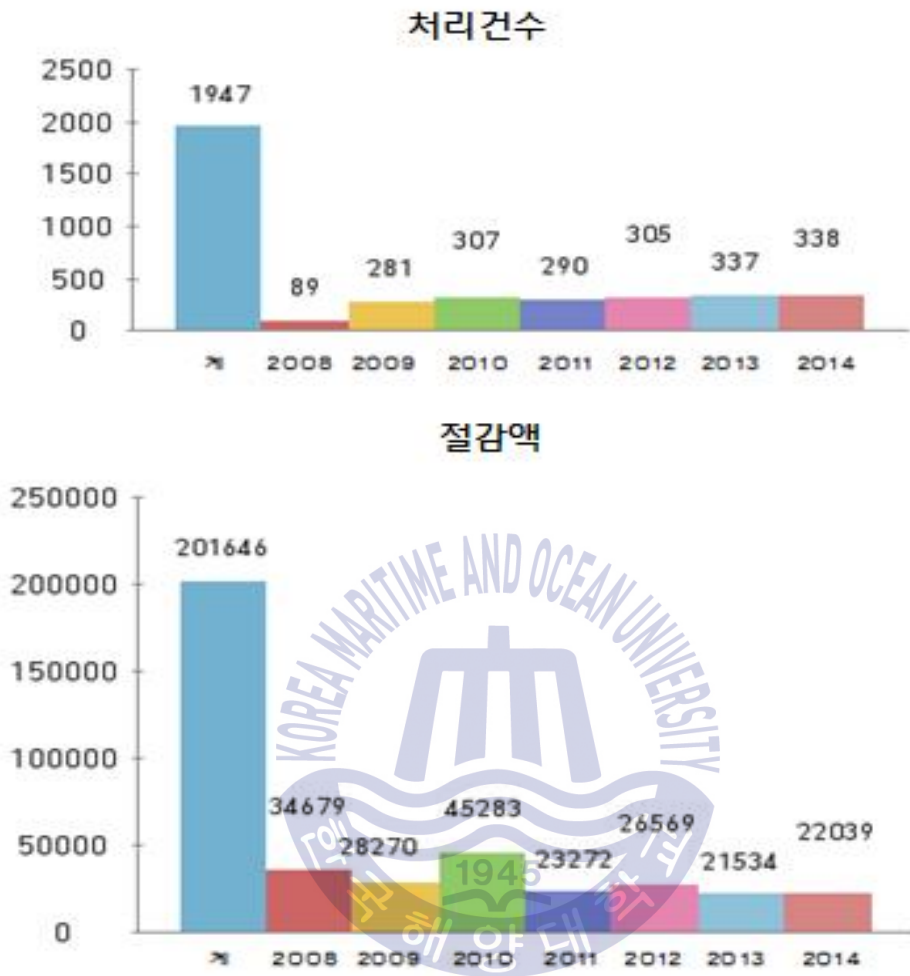


Fig. 14 연도별 공사계약심사 건수 및 절감액

또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시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심사 대상 1,947건의 절감률을 5단계로 분류(17%이상, 16~10%이상, 9~2%이상, 2%미만, 0%)하여 분석한 결과는 Fig. 1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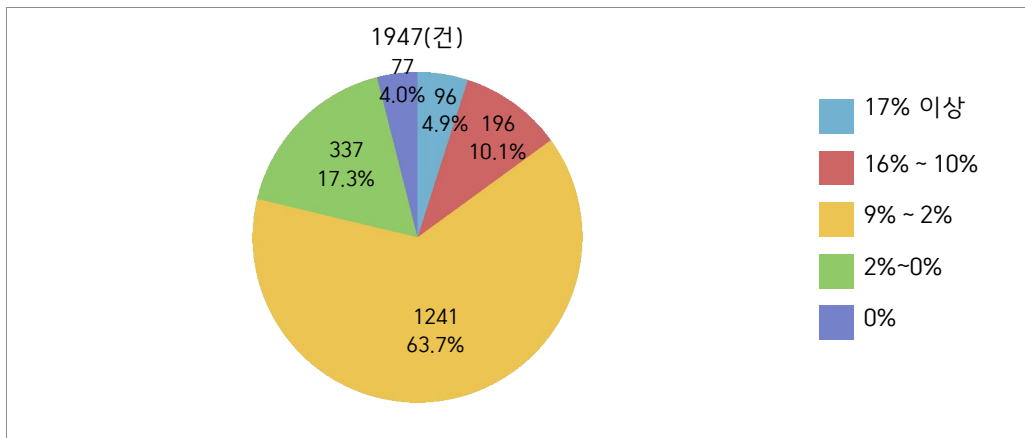


Fig. 15 공사계약심사 건수 및 절감률 분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947건 중에서 17%이상의 절감률을 나타낸 것은 96건으로 전체의 4.9%로 주로 시공방법 변경이나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품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16~10%이상의 절감률은 196건 10%로 이는 내역서 작성 시 물량과다나 재활용가능한 자재도 구입하거나 불필요한 공종을 적용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절감률이 9~2%이상은 1,241건으로 계약심사의 절대다수인 6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재료비와 인건비의 단가조정에 의한 절감으로 조달청 제3차단가 가격이나 다수공급자계약 가격²⁴⁾의 조달청 공표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시중 물가자료지(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및 업체 견적 가격을 재 조사없이 그대로 적용하거나 부가치세 이중계상, 품셈적용 오류, 과년도 인건비 적용, 작업인부 과다계상, 기계시공이 가능함에도 인력시공으로 계상하는 사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절감률이 2%미만은 337건에 17.3%로 주로 보험요율을 잘못 적용했거나 간접경비 등을 삭감하는 단순한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설계가 이루어져 절감률이 없는(0%) 경우는 77건 3.9%에 불과하다. 이는 발주부서나 설계업체에서 설계내역서 작성 시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시장조사와 함께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방으로 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대부분 심사대상 1건에 여러 가지 유형의 절감항목이 있었으나 1건이 여러 사례인 경우에는 주 절감률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만 규정하여 1건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유형별 심사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목적물의 세부공종에 관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시공 단위당 가격이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규모나 특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로 공사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7년도부터 실적공사비 공사규모²⁵⁾를 기존의 1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의 공사로 대폭 낮춰 대상금액을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재까지 100억 원 이상의 공사(전문공사 15억 원 이상)에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위 Fig. 15와 같이 매우 높은 17%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크다는 것을 지난 7년간의 시행과정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부산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실적공사비 심사금액을 낮춰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10%의 예산절감률을 차지하는 불필요한 공정의 유형들을 보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를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폐기처리하고 다시 자재를 구입하거나, 조정 포장자재처럼 일반 생산품을 사용하여 자재 단가를 절약할 수 있는데도 제작구입하거나, 시공도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계산착오로 인한 과다계상, 자재단가가 현장하차도 임에도 운반비를 별도 계상하는 사례, 방수시트 처리 후 다시 방수공정 추가하는 사례, 보조기층 포설시 기계와 인력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부 인력으로 계상한 사례, 산림공원 조성 시 염해피해예상이 없는 지역임에도 염해방지용 비료를 투입하도록 이중 계상한 사례, 호안쌓기나 자연석 쌓기의 경우 기계시공이 가능한데도 인력 쌓기로 계상한 사례, 수목 식재 규격을 상향하여 계상, 동력설비 공사 시 분전반 완제품을 할인 적용해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은 사례, 거푸집합판 재사용 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한 사례, 앵커볼트 설치 시 옥내 잡공사와 잡철물 공사를 혼용하

25)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개선시행계획(2001.03.05.)

는 사례, 데크 설치 시 기둥 간격을 좁게 하여 과도한 설계, 등산로 목재 계단 설치 시 자재운반비 및 사고 석을 지게로 운반하여야 함에도 목도 운반비로 계상한 사례, 현장여건상 파일 항타가 불가함에도 콘크리트 독립기초로 변경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재료비나 인건비의 절감 유형들을 보면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가격 적용 시 부산지역 가격이 저렴함에도 조달청의 전국 지역가격을 적용한 사례, 보조기층 시공 시 기본공량에 일 시공 량을 나누어 공량을 산출하지 않은 사례, 철근가공 및 조립 시 품 적용 오류사례, 전기 ELP 매설관로 표시판인 PVC 보호판과다 계상, 전기 케이블포설시 전력케이블과 전력케이블 지붕 기계포설과의 품 적용오류, 전기 접지 공사 시 품 적용 오류, 자재단가 계산 시 부가세 이중 계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설계 내역서 작성에 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 부서 및 설계 용역회사에서는 항시 정보를 수집하고 업그레이드된 품셈과 관련 법령을 완전 숙지한 상태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확인하는 등의 철저히 현장에 맞는 맞춤형 기획의 현장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공사 계약심사 주요사례

Table 15는 부산광역시에서 계약심사한 공사부분의 주요심사 사례로 사업명과 사업예산을 절감한 심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Table 15 공사분야 계약심사 주요사례

사업명	○○○ 지하저수조 방수공사		
규모	지하저수조 방수공사(8개 지구)		
절감액	550,500천 원	절감률	30.08%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항균PE SHEET) 라이닝 방수공법 대신 표준품셈 준용하여 시트두께 증가 감안 품 할증 적용. ▪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은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공종의 품 적용 		
사업명	○○ 지하차도 기계설비 공사		
규모	배수펌프 4대(Q=8.7m ³ /min), 급배기 웅 2대, 호이스트, 부대공사 1식		

절감액	68.117 천 원	절감률	22.5%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펌프 대수 및 용량, 펌프동력 재 조정 ▪ 호이스트 검사비용 불필요 하므로 삭감 ▪ 소화기설치는 단순설치이므로 설치비용 제외 ▪ 펌프실 및 집수정 점검시설 보완(사다리 등) 		
사업명	○○ 계곡 정비공사		
규모	사방댐 2개소, 바닥막이 27개소, 돌망태 70m		
절감액	90.718천 원	절감률	18.79%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정비 업종을 일반토목에서 특수분야로 조정 ▪ 구입자재 현장도착도로 조정 ▪ 불필요한 구조물 제외 및 수량조정 ▪ 구조물 공법변경 (돌망태 → 전석 쌓기) ▪ 터파기 과다물량 삭감 		
사업명	○○ 수전선로 설비공사		
규모	전력케이블 포설(FR-CNC0-W600mm×1C):7,650m 관로공사 1,272m		
절감액	508,000천원	절감률	27.59%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P 전선관 매설위치 보호판 조정 ▪ 아스팔트 포장 과다계상 조정 ▪ 케이블포설 인력노무공종 변경 		
사업명	○○○ 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규모	지상1층 연면적 552㎡		
절감액	135.520천 원	절감률	17.84%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노무비율 및 안전관리비 수정 ▪ 퇴직공제부금 미 대상으로 삭감 ▪ 건축목공 철거품 적용오류로 삭감 ▪ 철공가공조립을 표준라멘구조에서 창고규격으로 조정 		

4.2.6.2 물품구매 계약심사 실적분석

1) 절감률 분석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광역시에서 2천만 원 이상 발주한 물품은 총 2,261건으로 전체 심사대상건수의 40%로 공사부문의 계약심사 건수보다 5.6% 많으나 예산절감액은 공사절감액의 11%, 전체 절감액의 8.5%를 차지하므로 상

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이는 공사부분이 심사 건수는 적어도 사업금액이 높은 반면 물품심사는 금액이 낮아 절감률이 낮게 나타나는 측면을 감안해야하는 일면도 있으나 물품구매의 대다수는 제조보다는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발주부서나 심사부서에서의 시장조사 가격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또 건설공사용 자재나 기전설비용 공통 자재는 조달청에서 공표한 가격이 정해져 있어 시장조사가 불필요하고 심사의 실 이익이 없다. 또한 물품구매심사의 한 부분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설비나 자재는 가격이 고가이나 이런 품목은 내구성이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므로 발주부서에서는 내부자체 계약심사보다는 조달청에서 심사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조달청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은 발주부서에서 조달청으로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적저하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물품구매심사 특히 완제품의 경우에는 조달청 공표가격이나 시장조사가격, 거래실례가격, 업체의 견적가격에 대한 단가비교를 통해서 절감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법이나 품질을 확보하면서 동일한 규격과 동일한 용량에 대한 가격조사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 입찰정보를 통해 설계가와 낙찰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는 공사계약심사 방법과 동일하게 수요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면 물품구매에 대한 심사는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예산절감 실적이 미비하면 담당공무원의 업무성취도가 떨어지고 더 나아가 물품심사부서의 조직축소가 거론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위에서 열거하는 가격조사 방법이외에도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7조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원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사담당직원의 업무분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는 단순한 물품구입이나 제조에 대한 심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큰 필

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나 점차 첨단화·복잡화·정밀화되는 등 더욱 다양해지는 전문적인 물품 제조·구매의 적절한 가격심사를 위해서는 원가분석자문단 구성이 필요하다. 이 자문단은 사안별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이나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과 원가검토, 필요시는 자문에 응하게 하고 자문을 위한 안전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Fig. 16은 연도별 심사건수와 절감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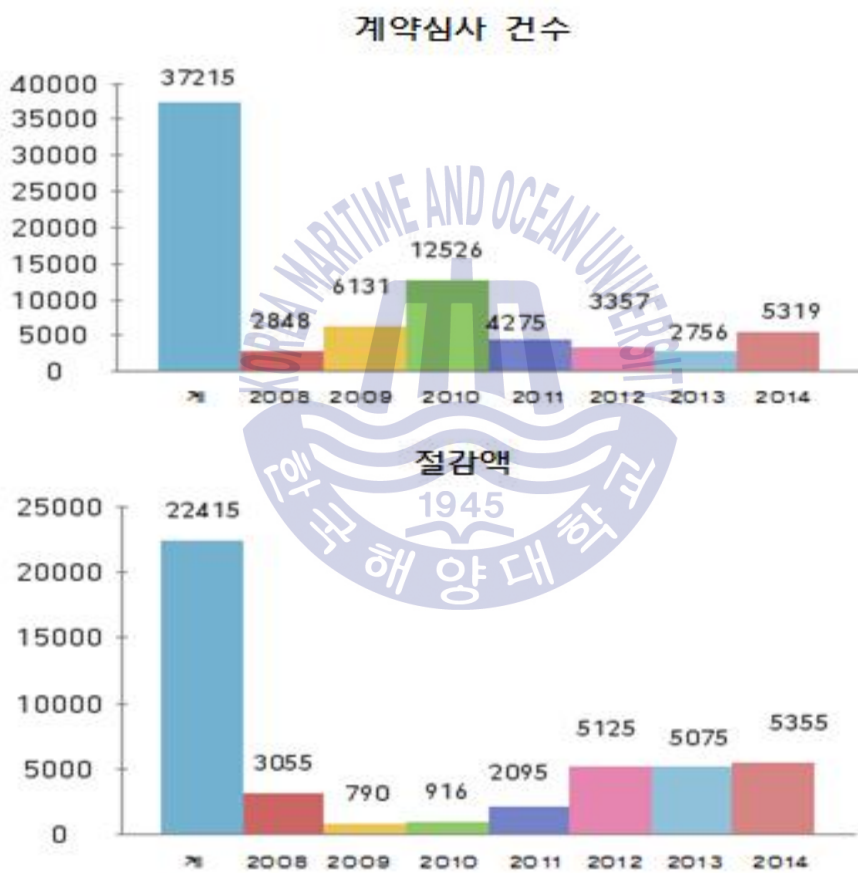


Fig. 16 연도별 물품제조·구매 계약심사 건수 및 절감액

Fig. 16에서 보면 계약심사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08년도에는 심사건수가 135건이었으나 날로 심사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절감액은 연도별

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시행첫해인 2008년도가 3,055백만 원으로 시행 뒤의 3개년보다도 심사건수는 적지만 오히려 절감액이 더 높았고 2012년도에는 433건에 5,125백만 원으로 비교적 심사건수와 절감액이 동시에 높다.

따라서 물품의 경우에는 심사건수가 많다고 해서 절감액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심사건수가 많고 절감률이 아무리 높아도 심사대상금액이 낮을 경우에는 예산절감액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절감률 분류별 분석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시에서 2천만 원 이상 발주한 물품은 총 2,261건이 있었으며, 이들 심사건수별로 5단계로 절감률을 분류(15% 이상, 14~10% 이상, 9~2% 이상, 2% 미만, 0%)하면 Fig. 17과 같다. Fig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 이상은 105건으로 가격이나 규격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가 대다수였으며, 14~10% 이상은 163건으로 주로 타 물품 구입이나 구입품목을 변경한 사례였고, 인건비나 재료비, 경비가 주 심사대상인 9~2% 이상은 1,310건이며, 2% 미만은 444건으로 이윤조정이나 적용오류로 인한 것이었으며, 발주부서에서 적정설계로 계약심사 절감률이 0%인 것은 239건으로 공사나 용역보다도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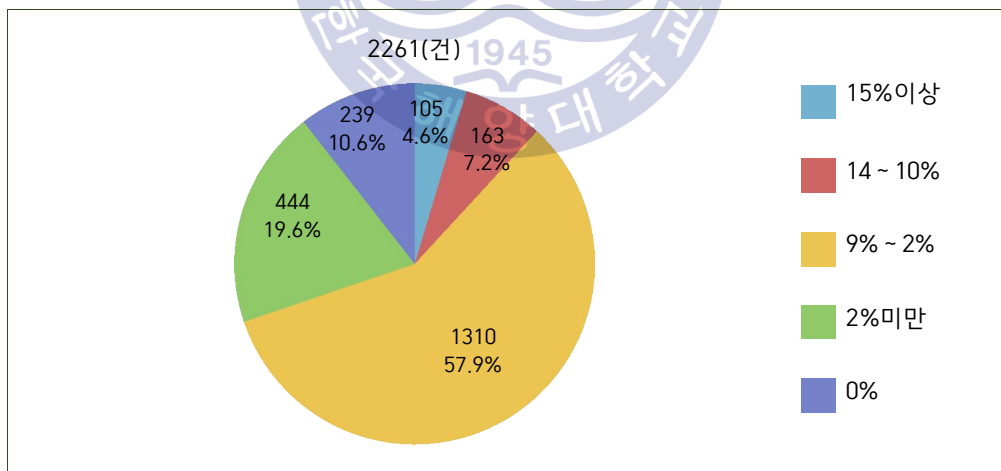


Fig. 17 연도별 물품심사건수 및 절감률 분류

또한, 물품에 대한 심사는 완제품을 구매하는 심사와 물품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완제품의 경우 시장가격과 비슷하여 예

산절감률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물품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와 공사를 혼합한 형태이므로 공사 절감률보다는 낮으나 완제품 구매보다는 심사항목이 다양화되어 절감률이 높다. Fig에서 보면 비교적 절감률이 높은 10%이상은 268건으로 전체의 11.85%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9~2%이상과 2%미만은 각각 전체의 57.94%와 19.6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원인을 찾으려면 될 것 같다. 또한 가격 조사가 적정하게 산출된 0%는 239건으로 전체의 10.57%로 과다 산정된 10%이상의 건수와 비슷하므로 물품구매에 대한 심사는 상당한 노하우를 기초로 깊이와 폭넓은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들 절감사례를 살펴보면 도서 구입의 경우 대량 구입 시는 도매가로 구입이 가능함에도 소매가격을 적용하거나 원방제어 설비 시 콘솔수량 중복·불필요, 소프트웨어 구매·기술지원비 과다 계상,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구입단가 과다산정,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제조가를 물가정보지 단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변경, 무정전전원장치의 해당 단가가 외부함체와 설치가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부함체비용 제외, 고압가스 연간단가계약 가격 산정 시 몇 개 업체의 견적가가 아닌 시장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금연보조제 구입단가는 조달청의 낙찰금액을 적용하였으며, 건설기술교육용 S/W구입 시 거래실례가격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물품구매 심사는 시장조사를 통해 실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조달청에서 시행된 동종의 설계가 및 낙찰금액을 조회하여 각종 물가자료지에서 책정된 가격 뿐 아니라 관련업체의 견적가격을 비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입찰방법과 낙찰률까지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적정단가를 산출해야하는 업무량이 무한함에도 업무내용이 재료비나 노무비 및 일반경비에 국한되는 단순한 업무처럼 보이는 것이 물품계약심사의 한계이다. 건설공사에 대한 심사가 공학적인 면을 더 많이 수용한 반면 물품에 대한 심사는 공학적인 면과 통계학적인 면도 함께 공유해야하는 업무영역이 넓어 어려움이 있지만 심사대상 금액 면이나 예산절감액 면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사 계약심사업무와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낮아 담당공무원의 업무성취도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

부산광역시는 현재의 공사와 물품심사로 나누어진 조직을 공사와 물품을 합

쳐 함께 심사하는 동일한 하나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물품구매 계약심사 주요사례

물품구매 분야의 주요 심사사례를 Table 16에 나타내었다.

Table 16 물품구매 및 제조분야 계약심사 주요사례

사업명	○○공사 설비자동제어시스템 구축		
규모	역사 운영설비(환기, 냉난방, 소방)와 중앙사령실간 연계시스템 구축		
절감액	17,000천 원	절감률	6.18%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가 중에서 낮은 단가를 적용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간접 노무비 및 보험료 삭감 		
사업명	○○어초(굴패각형) 제작 설치		
규모	인공어초 제작설치(굴패각형, 소형 L=5.2m H=1.76m, 146톤)		
절감액	15.364천 원	절감률	5.99%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설치 비용은 재료비에 설치 품이 계상되어 있어 삭감 ▪ 건설기계(로우더) 작업량 계수 조정 ▪ 어초제작과 무관한 공종 삭감 ▪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삭감 		
사업명	○○센터 실내빙상장 냉동기 정비		
규모	냉동기 정비(왕복동압축기 36.5RTx2대, 구동모터55kW)		
절감액	2.066천 원	절감률	6.65%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기 정비공 견적가로 산출하였으나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 구동 모터 정비공 견적처리하였으나 「상수도본부 전동기수리가격 내부기준」에 의거 조정 		
사업명	○○지도선 정기검사 수리		
규모	지도선 정기검사(갑판부, 기관부 수리정비)		
절감액	17.382천 원	절감률	8.88%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중에서 낮은 단가를 적용 ▪ 일부공종 노무량 조정 ▪ 산재보험료 수정 ▪ 선박수선에 따른 발생품 사전 공제 조치 		
사업명	○○구 워킹코스 조성용 마사투 구매		
규모	마사투(세립형) 백양산, 엄광산일원 워킹코스 조성용(4,800m ²)		
절감액	10.560천 원	절감률	15.4%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가격을 조달청 공표가격으로 산출 		

4.2.6.3 용역 계약심사 실적분석

1) 절감건수 분석

용역분야의 심사건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24건으로 전체 심사대상 건수의 약 25.2%를 차지하며 예산절감 금액은 372억 원으로 전체 절감률의 14.2%를 차지한다. 이는 공사부문보다는 비중이 적으나 8.5%를 차지하는 물품심사와 비교하면 심사건수는 적지만 예산 절감률은 오히려 더 높다. Fig. 18은 용역심사의 연도별 심사건수와 절감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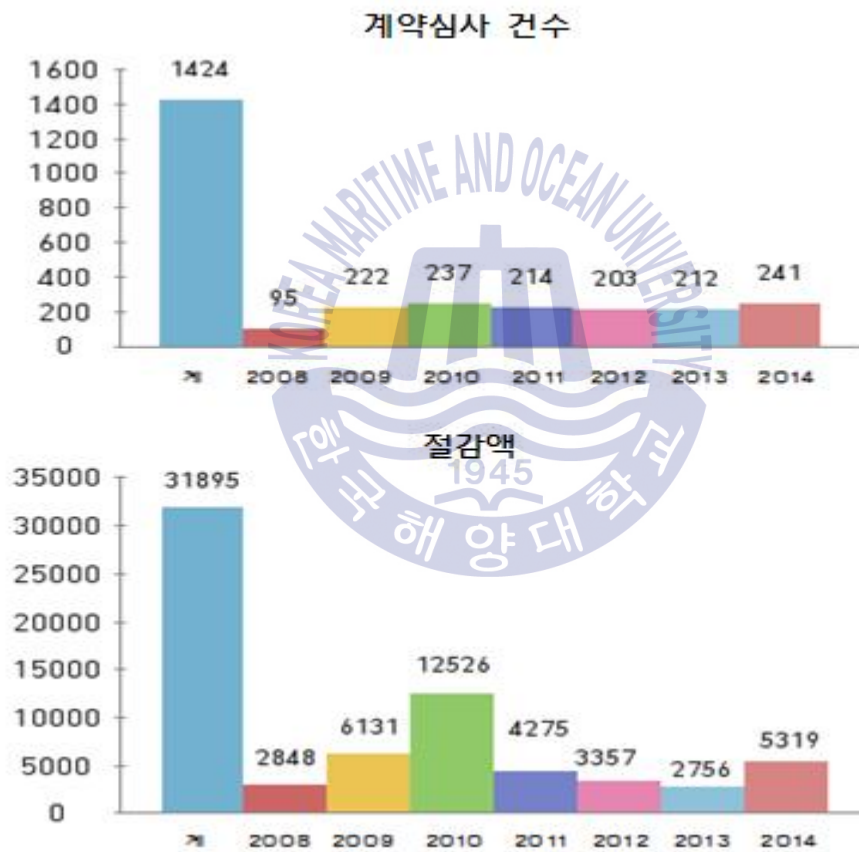


Fig. 18 연도별 용역계약심사 건수 및 절감액

그림에서 살펴보면 용역심사건수는 시행 첫해인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4년 동안 평균 219건을 심사했다. 용역은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모두를 수행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학술용

역이 제외되었음에도 2013년도 212건, 2014년도에는 241건으로 용역건수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대단위 건설

공사나 각종사업 수행 시 사전검토단계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발주부서나 민간기업체에서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학술연구용역은 2008년도부터 계약심사부서에서 계속 학술심사를 수행해 왔으나 업무의 연계성 및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타 부서²⁶⁾로 이관되었다. 이 학술연구용역은 학문적인 사항 뿐 아니라 행정제도의 개발이나 환경개선 등의 시민과 밀접한 기초 정책적인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정책기획부서에서 부산시정 전체의 테두리 안에서 심사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이관은 잘된 사례라 할 수 있다.

2) 절감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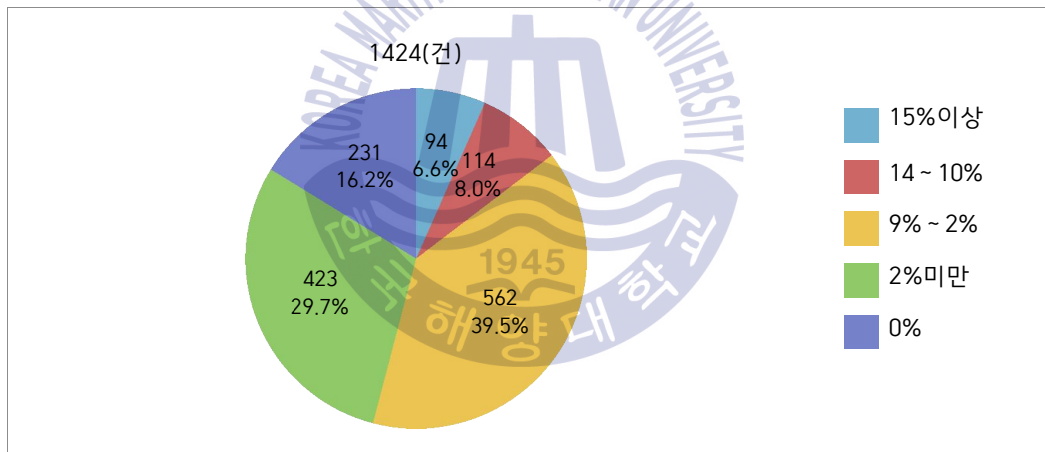


Fig. 19 용역계약심사 건수별 절감률 분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시에서 발주한 1억 원 이상의 용역은 총 1,424건이었으며, 이들 심사건수별로 절감률을 5단계로 분류(15%이상, 14~10%이상, 9~2%이상, 2%미만, 0%)하면 Fig. 19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5%이상은 94건으로 주로 용역범위나 물량을 과다 계상한 사례였고, 14~10%이상은 114건으로 다수 용역일수를 길게 잡거나 출장경비 회수와 투입인원을 과다 책정한 노무비에 관한사항이며, 9~2%이상은 562건으로 회의개최 횟수와 교통통

26)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 기획담당관(2012.12.31.) 시정혁신본부 비전추진단(2015.1.1.)

신비의 인원수를 실제 투입연구원보다 과다 계상하거나 보고서 및 회의 자료와 같은 인쇄물비용에 관한 일반경비이고, 2%미만은 423건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기관임에도 부가가치세를 가산하거나 이윤과 일반관리비의 적용오류 및 조정에 의한 것 이며, 예산 절감률이 0%인 적정설계를 한 경우는 231건이다.

용역심사결과를 보면 절감률 9%미만이 1,215건으로 전체의 85.32%를 차지하며, 비교적 10%이상의 높은 절감률은 208건(14.60%)에 불과한 반면 오히려 적정설계를 한 절감률이 0%인 경우는 231건으로 전체의 16.22%나 되었다. 이처럼 용역 설계는 발주부서에서 철저한 자료조사와 정확한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겠지만 「원가계산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이윤으로 단순하게 구성된 원가계산 항목과 누구나 용이하게 원가계산을 작성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정형화되어 있어 내역서 작성이 수월한 반면, 계약심사부서에서는 그 만큼 심사범위가 좁고 한정된 심사기간으로 적정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도 한계가 있다.

학술연구용역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학술연구,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영상제작, 시설물 유지관리, 유물 발굴조사, 경비, 조사, 정보통신으로 분류된다.

또한 기술용역은 일반 공사의 설계 및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전력에 관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을, 정보통신에 관한 설계 및 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각각 그 근거를 두고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3) 용역 계약심사 주요 사례

Table 17은 각종 용역분야의 주요 심사사례들이다.

Table 17 용역분야 계약심사 주요사례

사업명	○○ 체육공원 및 ○○ 빌리지 조성공사 책임감리 용역		
규모	부지조성(248,291㎡), 순환도로(L=4,376m B=4-20m), 축구장4면, 테니스장6면, 가로광장, 폐기물처리		
절감액	161,000천 원	절감률	13.82%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 상주 감리원 주재비, 기술료 조정 ▪ 인쇄물 시증거래가격으로 조정 		

	▪ 감리원 산출시 보통공종에서 단순공종으로 변경		
사업명	OOOO전산화 용역		
규모	도로옆 OOOO 전산화시스템 구축(모바일하드웨어 도입, 관리시스템 구축)		
절감액	38.600천 원	절감률	12.86%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개발시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은 통합 ▪ 사이트맵과 유사한 기능을 대체 조정 ▪ 데이터 입력원 단가를 부산광역시 시험시행 운영수당의 단가로 조정 ▪ 모바일하드웨어 시중거래가격 조사 적용 		
사업명	OO 한방진료부 건립 설계용역		
규모	지상6층, 연면적 2,574㎡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공사 1식		
절감액	52.549천 원	절감률	25.02%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건축물에 연접하여 증축하는 사업 ▪ 건축사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계획설계와 중간설계의 업무비율을 50%로 조정(계획설계 20→10%, 중간설계30→15%, 실시설계 : 조정없음) 		
사업명	OO산책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절감액	79.290천 원	절감률	13.80%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기준에 의한 인력산출 보정계수 적용 ▪ 환경성검토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거 소요인력 산출 ▪ 환경질 측정 대행수수료 한국환경측정협회 수수료 적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방재분야 표준품셈에 의거 인력 산출 		
사업명	OO 공사 자동화설비 용역		
규모	무인운전 역무자동화 설비(자동집개표기 84대, 인터폰 28대, 카드단말기 107대, 출입시스템 1식, 자동정산 보충기 33대)		
절감액	532.808천 원	절감률	4.78%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개발비 조정(전 기간을 공종별 투입인원 및 기간 조정, 단순기능 특급기술자→초급기술자, 시스템 백업기능 설계로 서버 corn기능대체) ▪ 통신장비 조달청 가격 적용 ▪ 설치품 조정(인터폰 통신내선공으로 조정, 전산서버 설치 및 시험 품 2중으로 삭감, 자동집개표 및 보충기 단동 시험비용 최종 테스트 가능 하므로 삭감) 		
사업명	OOOO 개량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규모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 전면 책임감리 용역		
절감액	160,000천 원	절감률	15.41%
심사내용	▪ 전기감리원 및 현지사무원 주5일제로 근무일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감리 인·월수 산정공종을 복잡에서 보통공종으로 조정 ▪ 차량운행비를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을 적용, 2개 현장을 1개 현장 적용하여 운행일수 조정.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개정된 요율 적용 		
사업명	OOOO항 정비계획 용역		
규모	어항정비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지형측량, 수심측량, 수치모형 해석,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기본설계)		
절감액	19,201천 원	절감률	13%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 공제료 산출기준금액을 순수 설계비로 조정 ▪ 수치모형해석 유사항목 조정 ▪ 정비계획 수립 세부항목은 시행중인 용역자료 활용 ▪ 용역 중복시행여부 확인 예산낭비여부 검토 확인 		

4.2.6.4 기계설비 분야 계약심사 실적분석

1) 절감건수 분석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는 크게 공사, 물품, 용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공통사항이다. 이 중에서 2008년 7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공사와 물품심사대중 기계설비(전기포함)와 관련된 실적을 조사했다. Table 18과 같이 기계설비분야에 대한 심사건수는 총 1,120건으로 절감액은 369억 원이며 절감률은 평균 4.48%, 처리기간은 4.5일이 소요되었다. 전체 심사내용중 공사는 374건으로 254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물품은 746건을 심사하여 115억 원을 절감하였다. Table 18을 보면 공사는 물품 심사건수에 비해 50%정도이나 절감액은 오히려 물품보다도 2.2배정도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감률은 공사나 물품과 비교할 경우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

Table 18 기계분야 계약심사 실적

구분	건수 (합계)	요청액 (백만 원)	심사액 (백만 원)	절감액 (백만 원)	절감률 (%)	심사기간 (평균일수/건)
합계	1,120	808,163	771,237	36,926	4.48	4.5
공사	374	536,430	511,001	25,429	4.74	5.48
물품	746	271,733	260,236	11,497	4.23	3.52

심사기간은 공사의 경우 공사전체 평균기간인 4.5일 보다 더 많은 5.48일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계약심사 시행초기인 2008년도에 1건당 10.37일 소요되어 전체 평균 심사기간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계약심사 담당 공무원은 심사기법 및 업무노하우 부족으로 심사능력이 숙달되지 않았고 특히 공사분야의 경우는 잦은 직원이동으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계설비 분야의 용역심사건수는 전체 222건으로 2,658억 원을 심사하여 58억 원을 절감하였고 절감률은 2.2%로 비교적 낮았으며 처리기간은 평균 4.36일 소요되었다.

기계설비 분야 용역의 특징은 주로 공공 건물의 환기, 배기, 제연 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도시철도의 보수·정비 및 소각장의 소각재나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19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계설비 분야의 용역실적이다.

Table 19 기전분야 용역심사 실적

건수 (합계)	요청금액 (백만 원)	심사금액 (백만 원)	절감액 (백만 원)	절감률 (%)	심사기간 (평균일수/건)
222	265,826	259,961	5,865	2.2	4.36

2) 기계설비 분야의 계약심사 사례

기계설비분야에 대한 업무의 이해를 돕고자 계약심사가 기 완료된 공사나 물품 및 용역의 주요사례를 열거해보면, 먼저 공사는 도시철도 전기시설 및 역사설비, 하수처리장·폐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악취방지 및 개선공사, 유람선터미널 조성, 각종 공조 설비·난방시스템 교체 및 펌프 교체 등을 들 수 있고 물품은 도시철도 전동차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부품 구입, 소방선 등 각종 선박 선체 및 기관 수리, 영락공원화장장·소각장 유지보수, 크레인제작, 재해 위험지역 제진기 제작 등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요 기계설비분야 용역은 상수도 효율진단, 도시철도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교통정보기반 확충, 교통신호등 운영, 도시철도 승차발매기 프로그램 개편, 지하철 전체 역사의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기계설비 분야의 업무범위는 영조물, 환경, 신재생에너지, 소방분야 등의 공사와 각종 물품의 제조·수리 및 구입과 건설기술용역·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의 적용을 받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또한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과 같은 대형플랜트사업일 경우에는 기계설비 단일공종으로 주축을 이룰 수 있으나 그 밖의 공사는 건축물이나 토목구조물의 일부공종에 불과해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중이 적고 후속 공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비중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계설비분야는 인간으로 비유한다면 혈관이나 신경세포에 비유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공사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주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 보완 뿐 만아니라 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2.6.4 외자구매 계약심사 실적분석

외자구매에 대한 심사는 주로 각종 시험 및 검사 기기와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의 주요부품, 도시철도에 이용되는 부속품들로서 완제품에 대한 구입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실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년 동안 234건이며, 1,326억 원을 1,263억 원으로 심사하여 63억 원을 절감하여 4.8%의 절감률을 보였다.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8일 소요됐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물품심사 건수인 1,937건의 12%정도를 차지하나 기계설비분야 중에서 물품부분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소요일수가 비교적 짧은 이유는 완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가격이 대부분 외국기업이 국내에 개설한 대리점이나 직영 자회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물품들과 달리 무한 경쟁체계가 아닌 독점적 형태의 시장구조로서 자료조사의 한계와 깊이 있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검토가 제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Table 20은 기계설비분야중 외자구매에 대한 계약심사 현황이다.

Table 20 연도별 기계분야 외자구매 심사 현황

연도	건수 (건)	요청금액 (백만 원)	심사금액 (백만 원)	절감액 (백만 원)	절감률 (%)	처리일수 (평균일수/건)
2010	25	5,734	5,563	171	2.99	2.90
2011	45	12,265	11,837	428	3.49	3.44
2012	50	32,021	30,160	1,861	5.80	4.50
2013	55	64,617	61,453	3,152	4.90	4.30
2014	59	18,038	17,318	719	3.99	3.61
합계	234	132,675	126,331	6,344	4.78	3.73

4.3 계약심사의 성과분석

4.3.1 성과분석

부산광역시에서 계약심사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도입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예산의 금액상의 성과이다.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2,6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연평균 절감률이 4.07%로 계약심사부서를 통해 4%이상의 발주예산을 절감했다.

이들 예산절감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시 본청과 자치구·군이 비슷한 절감률(4.3% ~ 4.1%)을 보이고 있고,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은 이보다 낮은 3.7% ~ 3.9%이다. 공기업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기업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체의 체계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절감률이 적다.

심사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의회를 제외하면 소방이나 구호 및 방재에 관한 완제품을 구입하는 직속기관인 소방본부 등에서 가장 높은 5.4%를 절감하였다. Table 21과 Table 22는 부산광역시의 기관별 예산절감 현황과 공종별 예산절감 현황을 각각 나타냈다.

Table 21 부산광역시 기관별 예산절감 현황

분류	심사건수 (건)	심사요청액 (백만 원)	심사완료액 (백만 원)	절감액 (백만 원)	절감률 (%)	처리일수 (평균일수/건)
합 계	5,632	6,426,727	6,165,449	261,277	4.07	4.8
시 본청	816	552,658	528,529	24,129	4.34	4.2
직속기관	333	203,205	192,162	11,043	5.43	4.4
사업소	1,291	1,349,459	1,303,304	46,153	3.42	4.1
시의회	86	112,105	99,274	12,831	11.44	4.8
시군구	1,689	1,491,716	1,430,239	61,477	4.12	4.3
공기업	1,296	2,569,083	2,468,875	100,208	3.9	4.9
출연기관	121	148,501	143,064	5,437	3.66	4.4

Table 22 부산광역시 공종별 계약심사 예산절감 현황

분야	심사건수 (건)	심사요청금액 (백만 원)	심사완료금액 (백만 원)	절감금액 (백만 원)	처리일수 (평균일수/건)
합계	5,632	6,426,727	6,165,449	261,278	4.07
공사	1,947	4,676,874	4,475,227	201,646	4.31
용역	1,424	1,178,569	1,141,353	37,216	3.16
물품	2,261	571,284	548,868	22,416	3.92

또한 공종별 절감률을 살펴보면 공사가 1,947건에 절감액 2,016억 원이고 용역은 1,424건으로 절감액이 372억 원이다. 물품분야는 2,261건으로 심사건수는 가장 많지만 절감액은 224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낮다. 전체 심사요청액 대비 심사완료금액에 대한 절감률은 4.18%이다.

둘째, 간접적인 교육과 훈련효과이다.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부서의 비합리적인 원가계산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발주부서에 대한 원가분석 기법이나 원가계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서 발주 사업에 대한 낭비요소를 제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계약심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발주예산 작성에 대한 행태를 바꾸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곧 공직의 주인인 시민의 돈을 관리하는 공직자로서의 충성된 청지기직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공직의 주인인 시민의 돈을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방만하게 예산을 사용하여오던 관행을 개혁하는 중요한 개혁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전체의 발주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경력을 축적하게 되어 예산절감을 위한 개혁의 중요한 혁신공무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Kim, 2004)

셋째, 심사비용의 절감이다. 의무 조달발주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조달발주로 인해 지출되는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 절감되는 수수료 비용에 비해 계약심사인원들의 인건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계약심사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능력향상은 부산광역시의 인적자본이 될 것이다. (Kim, 2004)

넷째, 계약심사(원가절감)사례집이 작성되어 원가계산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발주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발주부서의 동의를 확보하고 원가계산에 대한 공감대와 공유된 지식을 통해 심사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Kim, 2004)

다섯째, 건전한 입찰질서 유도효과이다. 공공기관의 입찰에 낙찰만 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인식으로 폐이퍼 업체들이 난무하던 상황과 또 불법 제하도급의 관행을 규제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Kim, 2004)

4.3.2 계약심사의 한계

계약심사제도는 발주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자본비용이나 미래에 발생할 우발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발주예산이 낮다고 하여 최종적인 낙찰가격이나 공사 집행종료 후에 산정한 실적이용까지 낮다고 확정할 수 없다. (Yun, 2004 cited in Kim, 2004)

공사가 지연되어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의 시간에 대한 자본이 사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비용이 추가될 것이고, 낙찰 후 공사방법의 변경이나 환경소송 등으로 패소가 가정된다고 하면 실제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증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계약심사를 엄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발생한 정부예산을 줄였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정부가 직접 사용하는 예산의 심사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나 용역으로 인한 편익(benefit)의 발생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업

의 편익을 분석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다. 예를 들어 특정 공사로 인해 지역개발의 부수적인 편익이 있고 이로 인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성과지표로서는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발주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가계산에 입각한 계약심사제도는 정부회계 상의 원가추정에 한정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Yun, 2004 cited in Kim, 2004)

계약심사제도는 민간기업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산정이라는 점에서 민간수준의 경쟁성과 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경향이 있다. 이는 사적부문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달성하지 못하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형평성의 유지, 건전한 입찰 및 시장질서의 확립, 또 민간의 기술수준의 함양을 위한 지원 등의 역할을 소홀히 할 위험성도 있다. (Yun, 2001 cited in Kim, 2004)

이는 장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계약심사제도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 속에 최저가낙찰을 선호하는 식의 민간기업적 선택만이 최선의 대안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심사제도의 위상은 현재의 공공기관의 예산 부풀리기 내지는 자기책임성 결여로 인한 방만한 예산 설정의 한 쪽 축에서 완전한 시장경쟁속의 최저가 가격설정이라는 축의 그 사이가 적절한 계약심사제도의 위치가 될 것이다.

계약심사제도는 그 심사를 주도하는 담당자들에게 어떤 유인 구조를 제시하는가에 따라 이 제도의 성패는 상당히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심사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라는 문제는 심사담당자들의 선택이나 자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심사 질적인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계약심사제도가 지향하는 것이 단순한 예산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예정가격의 설정을 통해 건설 산업업계의 입찰관행이나 건설기술을 보다 고도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 심사담당자들은 건설관련의 과학기술수준에 대한 지식과 자문을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계약심사제도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Jang, 2001 cited in Kim,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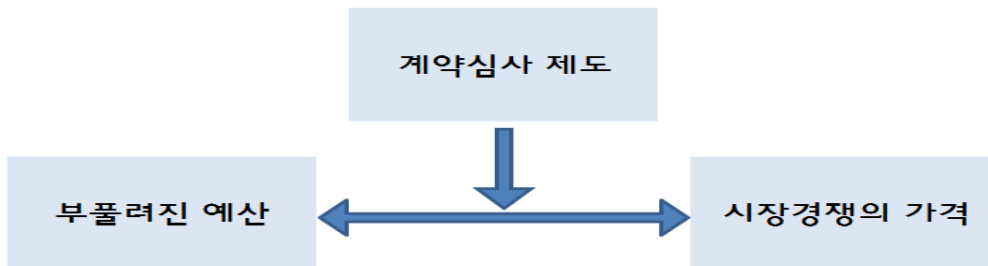


Fig. 20 계약심사제도의 위치

계약심사부서를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공간적 비용과 인적비용, 운영적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계약심사 제도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이 심사 제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성과(예산절감액)를 지속적으로 하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심사제도의 존재로 인해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또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제비용에는 공사나 용역의 생산원가에 관련된 비용도 있겠지만 최종 공사업체가 선정되는 데까지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또 이 계약심사제도가 생기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낙찰되던 업체가 수행한 공사성과와 계약심사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낙찰된 업체의 공사성과가 다를 경우 이 업체가 수행한 공사성과간의 차이는 곧 이 계약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줄어든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되게 될 것이다.

계약심사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의 편익의 거래비용에는 이러한 기회비용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기회비용에 별 차이가 없다면 계약심사제도는 이 제도의 설치로 인해 거래비용의 추가적인 발생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Kim, 2004)

제5장 계약심사 관계자의 인식분석

5.1 관계자의 인식조사에 대한 필요성

계약심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약심사에 대한 외부 민간 기업체와 내부의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계약심사 담당공무원과 공공사업의 감독 부서인 발주부서 그리고 실제로 지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는 설계용역업체와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시공업체의 관계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정확히 조사하여 본 논문의 주제인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2 조사대상 및 방법

5.2.1 조사대상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은 2008년 10월부터 계약심사부서에서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49명이며 이중 사망자를 제외하고 퇴직자를 포함한 47명 전원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발주부서는 시·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군, 지방공사·공단 중에서 공공사업 발주를 위하여 계약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 부서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53개부서 330명의 담당자로 한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용역 및 시공업체도 계약심사를 받아 공사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업체 10개소, 시공업체 250개소(종합건설업체 50·전문건설업체 100·기계설비업체 100) 등 전체 260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4.10.01. ~ 12.31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Table 23은 설문조사대상 현황이다.

Table 23 계약심사 설문조사 대상 현황

합 계		637명
심사부서		47명
발주부서	소계	330명 (53개 부서)
	시 본청	72명 (13개 부서)
	사업소	87명 (18개 부서)
	구청	68명 (15개 부서)
	공사·공단	103명 (7개 부서)
건설업체	소계	260명
	종합	50명
	전문	100명
	기계설비	100명
	용역	10명

5.2.2 자료조사 및 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계약심사제도에 대해 내부와 외부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찾고자 설문내용을 기본적인 형식만을 구조화하고 여타 부분은 가능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계약담당공무원·발주부서 담당공무원, 민간용역 및 시공업체 관계자의 인식을 각각 조사하기 위해 3개 부분으로 별도 분리하여 조사하였으며, 민간업체의 경우 한 업체에서 여러 사람이 답변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가능한 여러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의 청렴도정책과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을 3개 부문 설문지에 각각의 동일한 질문내용을 삽입하여 담당공무원과 민간업체와의 청렴성과 계약심사 발전방안 등에 대한 공통인식도도 함께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은 일괄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274명 전원을 회수하였고, 지방공사·공단도 개인 E-mail을 이용하여 103개 부서 모두 회수하여 회수율이 100%였다. 일반건설업체도 역시 회사 및 개인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나 전체 260개소 중 226개를 송부 받아 회수율이 87%이었으며 총 회수율은 94%로 최종분석에 활용되어 통계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21.0와 microsoft excel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5.2.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이 제도에 대한 연구 실적이 미비하여 일부 선행 연구들의 설문지를 기본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자체실정에 맞게 수정 추가하여 설문을 구성하였고 계약심사 담당공무원과 발주부서 및 일반건설업체 모두에 대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3개 부문 모두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밀도를 강화하였다. 또 주어진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에서 제시한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분포정도와 빈도를 파악하여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5.3 자료 분석결과

5.3.1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인식 분석

먼저, 부산광역시에서 계약심사제도 시행 이후에 나타난 담당공무원들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43개의 문항으로 크게 5개 분류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담당공무원의 개인별 및 일반적인 특성, 담당공무원이 생각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인식도, 계약심사제도와 청렴성, 공무원 간의 심사부서와 발주부서의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청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렴도와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공통적인 질문을 삽입하여 함께 조사하였다. Table 24는 계약심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내용이다.

Table 24 계약심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질문유형	설문 주요내용	문항
개인별 및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정도, 자격증유무, 근무경력, 계약업무담당경력, 월평균심사건수, 1건당 심사기간, 희망월평균 심사건수	1. (①~⑤) 2. (①~④)
계약기술심사업무 인식도	난이도, 전공관련, 구비조건, 업무참고, 심사업무의 이해도, 타지자체와의	3. ~17.

	정보공유, 업무량, 기법연구, 업무만족 여부, 업무능력, 근무여건, 타 부서와의 비교, 업무추진 시 어려운 점.	
계약심사제도와 청렴성	결재관련부담압력, 예산절감항목, 원안 통과건수, 예산절감 못해 아쉬움, 존속성, 사업비 삭감 시 부담여부, 예산절감기여 여부, 삭감방지, 퇴직 후 취업 의향	18 ~ 29
심사부서와 발주부서와의 관계	협의여부, 재의결여부, 재의결 요청사유	30 ~ 32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	부산시 발전을 위한 인적방향, 중앙정부차원의 방향, 이 제도의 문제점	33 ~ 35

첫째, 개인별 및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계약심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총 47명이었으며 그 중 남자가 83%(39명)이고 여자는 17%(8명)이다. 직렬은 행정직이 32%(15명), 기술직은 68%(32명)으로 토목·건축공사 및 기계·전기 설비공사나 조경 등의 건설공사분야가 일반용역과 학술용역분야를 담당하는 행정직보다 기술직공무원의 근무인원수가 더 많은 요인이다. 또한 학력은 대졸이나 대학원이상이 96%(45명)으로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조직내에서도 상당한 학구열과 자기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약심사담당 공무원의 연령은 75%인 44세에서 56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대다수가 자치구·군이나 사업소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경력을 거친 후 시 본청으로 전입되는 조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심사업무경력에 2008년 이 제도 시행이후 85%(40명)이 1년 ~ 4년을 담당하였는데 통상적으로 한부서의 근무기간이 3년 정도라면 근무기간이 짧은 직원들은 승진에 의한 전보와 간부직원의 자리이동에 의한 수치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직원들은 변동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1건당 평균 심사기간은 80%(39명)인 3 ~ 4일 이 가장 많았고 희망하는 월평균 계약심사 건수는 58%인 28명이 11 ~ 14건이 적당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는 2 ~ 3일에 1건을 처리하는 수준이지만 관련규정상의 처리기간 10일에 비하면 상당히 단축된 일수이나 이러한 답변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직이동 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하였고 자기개발에 충실하여 계약심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했다.

둘째로 담당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업무에 대한 난이도는 98%(46명)가 어렵다고 답하였고, 전공과는 무관하나 기술적인 일부 영역에서는 관련성이 있다고 67%(32명)가 응답하였으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일정한 근무경력과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50%(24명)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고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주도하는 공무원으로서 유사근무경력을 갖추고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기술직의 경우는 이 조건과 대학에서의 전공분야와 동일하다면 계약심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업무처리를 위한 참고자료는 인터넷이나 전문서적을 이용하는 직원이 4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14명인 30%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의외로 적은 인원이었다. 이는 계약심사 제도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간에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으나 이 제도가 정착단계·고도화단계에 와 있는 현 시점에서는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업무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정서가 다른 지역여건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심사기법 터득을 위해 수시로 전문교육과 관련지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98%, 46명) 심사부서에 대한 근무 만족도 및 타 지자체와 비교한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과 매우 월등하다는 직원이 각각 98%(46명)로 조사되어 계약심사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 부서의 최대 장점은 87%(41명)가 자기발전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심사부서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자료검색과 심사금액을 삭감할 때로 각각 44%(21명)와 40%(19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원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재료비, 노무비, 일반경비, 관리비, 이윤의 기본항목뿐만 아니라 시방서, 관계법령, 공법, 공종, 기존 실적 또는 유사형태의 조건 등을 상호 비교하기 위한 종합자료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고, 과다설계에 대한 삭감 또는 공법개선 및 변경에 대한 조치 등은 개인 및 부서간의 정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계약심사와 청렴성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와 만일 이러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전체(100%, 47명)

직원이 없다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소신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해 계약심사부서 공무원은 실무자나 간부공무원도 확고한 국가관과 청렴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들로 인선됨을 알 수 있다. 또 담당자들이 계약심사결과 예산절감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처리를 잘했다고 업무처리결과에 대한 소신을 당당히 밝히고 있으며(46명, 98%),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간부공무원도 담당자를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47명, 100%)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계약심사 담당자로서의 이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100%(47명)가, 계약심사 업무가 예산절감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100%(47명) 전원이 그렇다고 조사되었다. 또,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장동료들로부터 예산삭감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는 47명중 11명(23%)이었으나 그 처리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철저히 검증하거나 처음부터 거절한다가 100%(47명)로 직원모두가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또한 동 질문을 관련업체나 일반회사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삭감을 완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21%인 10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또한 담당공무원 47명(100%) 전원이 소신대로 처리했다고 조사되어 계약심사부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규정대로 처리하는 청렴성이 강한 감사부서임을 알 수 있다. 삭감완화를 부탁한 경우가 많은 사유는 제도시행초기인 2008년도에 나타난 집중된 현상으로 2012년 01.01부터 정책기획실에서 감사관실로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는 일체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다시 이들에게 청렴성에 대한 질문은 했다. 퇴직 후 일반회사에 취업할 의향이 없다고 96%(45명)가 답을 하였으나 퇴직이후 현실성을 예단할 수 없으나 현재의 설문내용만으로 보다면 계약심사부서 담당공무원은 청렴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심사부서와 발주부서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계약심사를 할 때 심사부서와 발주부서간의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는 필요시 협의하는 경우가 42%(20명)로 조사되었다. 제도시행초기에는 대부분 발주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나(54%, 26명) 정착이후에는 매 심사건마다 협의하지 않고 특이한 경우에만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사결과에 대한 발주부서의 재 심의 요구

는 초기 2건을 제외하고는 재의결 요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주부서에서 재의결을 하지 않은 사유로는 심사부서와 발주부서의 의견차이가 46%(22명)로 가장 많았고, 내역서 등의 이중기재가 32%(15명)이며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17%(8명)로 사실상 발주부서에서도 인정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보면 먼저 계약심사부서 공무원의 인적개선 방향을 들 수 있는데 심사부서에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가 60%(28명)로 가장 많았고, 인원 및 직제를 확대해야 한다가 30%(14명)였으며, 전문관²⁷⁾ 제도도입과 근무자 공모제를 실시해야 한다가 8%과 2%로 각각 조사되었다. Table 25는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이 바라는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빈도분석이다.

Table 25 향후 부산시의 계약심사제도 발전을 위한 인사개선 방향(빈도분석)

구분	빈도 (명)	비율 (%)	유효비율 (%)	누적비율 (%)
인원 및 직제 확대	14	29.2	29.8	29.8
전문관제 도입	4	8.3	8.5	38.3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28	58.3	59.6	97.9
심사직원 공모제	1	2.1	2.1	100.0
계	47	97.9	100.0	
시스템상 결측값	1	2.1		
합계	48	100.0		

이는 계약심사부서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간 경쟁심을 유발하여 보다 유능한 인재가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제확대는 현재 2개의 소단위 계(係)에서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와 같이 과(課)단위로 신설하여 현행 체제인 감사업무와 심사업무를 분리하여 계약심사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직제를 두자는 의견이다.

다음 공통질문 첫째로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이 볼 때 이 제도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을 보면, 시·도별 선진지 견학과 정기적인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43%(20명)와 38%(18명)로 가장 많았고 이외

27) 한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

에 심사보상금 지급 13%(6명), 중앙정부와 인사교류가 6%(3명)로 소수의견도 있었다. Table 26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26 중앙정부차원의 심사제도 발전방안(빈도 및 교차분석)

구분	빈도 (명)	비율 (%)	유효비율 (%)	누적비율 (%)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3	6.3	6.4	6.4
심사보상금 지급	6	12.5	12.8	19.1
정기연찬회 개최	18	37.5	38.3	57.4
시·도별 선진지 견학	20	41.7	42.6	100.0
계	47	97.9	100.0	
시스템상 결측값	1	2.1		
합계	48	100.0		

구분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심사보상금 지급	정기연찬회 개최	시·도별 선진지 견학	합계
행정직	1	1	8	5	15
기술직	2	5	10	15	32
합계	3	6	18	20	47

둘째 이 제도를 운영하는 동안 가장 큰 문제점을 어떤 점이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8%(18명)가 계약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발주부서의 검토능력 부족과 삭감에 대한 설계금액을 과다산정하는 경향이 있다가 각각 14명(30%)과 11명(23%)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7은 계약심사담당 공무원이 생각하는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Table 27 계약심사부서에서 생각하는 이 제도의 문제점(빈도 및 교차분석)

구분	빈도 (명)	비율 (%)	유효비율 (%)	누적비율 (%)
발주부서의 검토능력 부족	14	29.2	29.8	29.8
관련업체의 설계내역서 작성 부실	4	8.3	8.5	38.3
계약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다	18	37.5	38.3	76.6
삭감대비 부풀리는 경향 잔존	11	22.9	23.4	100.0
계	47	97.9	100.0	
시스템상 결측값	1	2.1		
합계	48	100.0		

구분	발주부서의 검토능력 부족	관련업체의 설계내역서 작성 부실	계약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다	삭감대비 부풀리는 경향 잔존	합계
행정직	3	0	5	7	15
기술직	11	4	13	4	32
합계	14	4	18	11	47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째를 맞고 있지만 민간업체에서는 계약심사 제도를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나 영업이익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로 생각하는 관계자들이 있고, 또 일부 발주부서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능력을 적시 갖추지 못한 부서도 있음을 의미한다. 소수이긴 하나 설계서 작성시 계약심사 부서에서 삭감할 것에 대비하여 설계금액을 다소 부풀리는 부서도 일부 있으나 이는 시행초기에 나타난 일부 현상으로 현재는 원가작성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다 설계되는 경우는 없다.

5.3.2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발주부서의 인식 분석

발주부서의 공무원이나 공사·공단에서 이 제도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구성은 개인별 특성과 심사절차의 불편여부, 계약 심사시 조정대상, 심사직원의 업무능력, 사업비 삭감으로 인한 업무추진 곤란여부, 심사부서 삭감에 대한 생각, 심사금액 삭감에 대비하여 증액여부, 심사삭감액과 예산절감액의 상관관계, 계약심사제도의 인적 발전방향, 중앙부서에서 추진해야할 내용, 이 제도의 문제점 및 계약심사공무원에 대한 사기양양책 등 총 21개 문항으로 작성하였고 역시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공통적인 질문을 함께 포함시켰다. Table 28은 발주부서 담당직원들에 대한 설문내용이다.

Table 28 발주부서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질문유형	설문 주요내용	문항
개인별 특성	성별, 연령, 교육정도, 자격증유무, 근무경력, 근무부서	1 (①~⑥)
일반적인 계약심사에	설계서작성 주체, 절차, 심사기간, 계약심사 만족도, 재검토요청, 재검토 요청사유, 심사조정대상, 심사능	2~21

대한 인식도	력, 삭감시 업무추진, 과다삭감, 계약심사부서의 신뢰성, 사업비증액여부, 심사금액삭감과 예산절감관계, 계약심사 발전방향 중앙정부 추진방안, 제도의 문제점, 계약심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책	
--------	---	--

첫째, 개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시 분청·자치구·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발주부서 유효대상은 전체 324명으로 이중 남자는 87%(281명) 여자는 13%(43명)이었고 나이는 골고루 분포되었으나 40대와 50대가 가장 많고 직렬은 행정직이 33%(107명) 기술직은 67%(217명)이다. 또 학력은 대졸이상이 94%(306명)로 대부분 고학력자였으며, 자격증 소지자가 기사 이상이 41%(132명), 산업기사와 기능사를 포함할 경우 기술직은 모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근무경력은 20년 이상이 73%(237명)로 학력·경력·자격증을 모두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번 설문에 답한 사람은 공무원이 68%(221명), 공사·공단 직원이 32%(103명)이었다.

둘째, 발주부서 담당직원은 설계내역서 작성을 55%(177명)이상이 전문기관을 이용하며, 공사의 경우는 사업내용이 단순하거나 반복되는 물품구매 형식은 담당직원들이 직접 작성 14%(45명)하며, 새로운 고정도 사업이나 복합공종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첨단사업의 경우는 모두 설계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절차에 대해서는 42%(135명)가 제도 시행이전보다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단축된 계약심사기간 5일을 91%(295명) 오히려 걱정하다고 답하여 심사기간은 매우 걱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47%(153명)가 만족하였고 5%(16명)가 불만족으로 조사되었으나 48%(155명)가 보통으로 조사되어 보통에 어느 정도 불만족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간의 시각차이가 일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계약심사기법 개발이나 심사부서와 상호간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재의결요청은 문서나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80%(254명)이며, 또 재의결을 요청하지 않는 사유는 25%(80명)가 심사부서의 재량행위로, 58%(188명) 대다수가 삭감액이 미비하여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원인을 꼽았고 일부는 사업기간 촉박을 사유로 재

의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으나 이는 시행초기의 실례로 현재는 이러한 사유는 해소되었다.

다음 계약심사 시 주로 조정되는 심사항목은 노무비 및 노무직종 변경과 자재단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법변경이 5%(17명)로 이는 계약심사 부서에서 2011년 이전 계약심사 업무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를 함께 처리할 당시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된 2012년 이후 공법변경을 한 사례는 없다. 또 계약심사부서의 업무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 우수하다는 평가가 60%(200명)였고 38%(122명)가 보통으로 평가했다. 이 수치는 계약심사담당 공무원들 스스로 생각하는 업무능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감사부서라는 피 감사부서 의식 및 근무 선호부서에 따른 개인성향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계약심사부서가 선호부서인지 기피부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발주부서 공무원들에게만 계약심사부서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적극 근무 및 근무할 의사가 있는 직원이 81%(179명)를 차지했으며, 보통과 싫다가 각각 11%(35명), 3%(7명)로 나타났다.

또 계약심사부서의 위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98%(317명)가 위상이 높다고 대답해 공무원조직 내에서도 매우 선호부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사결과 삭감금액이 많을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61%(197명)가 계약심사부서에서 심사규정을 과다하게 적용했다고 답해 발주부서의 단순실수를 인정하는 23%(74명)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삭감금액이 많을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68%(216명)로 나타나 낮다의 25%(80명)보다 더 높았다. 다시 계약심사 시 삭감에 대비하여 사전에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는데 없는 경우가 80%(260명), 있는 경우가 11%(36명)이며, 무응답인 경우가 9%(28명)로 조사되어 이런 수치는 시행초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예산 부풀리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예산 부풀리기에 대한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는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었다가 79%(256명)로 일부 반영된 경우는 7%(23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볼 때 시행초기 재의결에 따른 협의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발주부서에서 생각할 때 계약심사 시 삭감금액이 곧 예산절감과

직결되는지에 대한 견해는 57%(183명)가 그렇다라고 동의했으나 19%(63명)는 아니다라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즉답을 유보한 24%(78명)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심사시의 절감률이 곧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이 생각하는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계약심사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적개선 방향으로서는 심사부서 근무자를 공모제로 도입찬성이 38%(124명), 전문관제도 도입 36%(116명), 인사상의 인센티브 도입도 20%(65명)나 되었다. 또 인원 및 직제개편 확대와 현행대로 고수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Table 29는 각 발주부서 담당직원들이 생각하는 인식들이다.

Table 29 향후 부산시의 계약심사제도 발전을 위한 인적개선 방향(빈도분석)

구분	빈도 (명)	비율 (%)	유효비율 (%)	누적비율 (%)
인원 및 직제 확대	13	4.0	4.0	4.0
전문관제 도입	116	35.8	35.8	39.8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65	20.1	20.1	59.9
심사직원 공모제	124	38.3	38.3	98.1
현행대로 고수	6	1.9	1.9	100.0
합계	324	100.0	100.0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각종 대형건설공사와 연계되어 있고 심사절감이 예산절감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 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국가관과 청렴성을 가진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하므로 공모제를 통한 투명하고 능력 있는 자로 엄선하여 근무자에게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다음 공통질문으로 발주부서에서 볼 때 이 제도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을 보면, 44%(142명)가 심사보상금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사업재원이 지방예산과 국고예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예산과 국비를 선별하는 예산처리의 복잡성으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며, 중앙정부주관으로 정기연찬회(36%, 115명)와 시도별 선진지 순회 견학이 16%(52명)나 되었다. 이에 대한 빈도 및 교차분석을 Table 30에 나타냈다.

Table 30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이 제도의 발전방향(빈도 및 교차분석)

구분	빈도 (명)	비율 (%)	유효비율 (%)	누적비율 (%)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6	1.9	1.9	1.9
심사보상금 지급	142	43.8	43.8	45.7
정기연찬회 개최	115	35.5	35.5	81.2
사도별 선진지 견학	52	16.0	16.0	97.2
전문교육 실시	9	2.8	2.8	100.0
합계	324	100.0	100.0	

구분	중앙정부와 의 인사교류	심사보상금 지급	정기연찬회 개최	사도별 선진지 견학	전문교육 실시	합계
공무원	6	73	94	44	4	221
공사공단	0	69	21	8	5	103
합계	6	142	115	52	9	324

또한 발주부서에서 바라보는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계약심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다 48%(156명), 발주부서의 설계내역서 검토능력 부족 12%(39명), 삭감에 대비하여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18%(59명)가 응답했고, 계약심사부서에서 실적위주의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19%(61명)나 조사되어 발주부서의 시각에서는 계약심사제도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Table 31 발주부서차원에서 생각하는 이 제도의 문제점(빈도 및 교차분석)

구분	빈도 (명)	비율 (%)	유효비율 (%)	누적비율 (%)
발주부서의 설계내역서 검토능력 부족	39	12.0	12.0	12.0
민간기업의 설계내역서 작성 부실	9	2.8	2.8	14.8
계약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다	156	48.1	48.1	63.0
삭감대비 부풀리는 경향 잔존	59	18.2	18.2	81.2
실적위주의 심사	61	18.8	18.8	100.0
합계	324	100.0	100.0	

구분	발주부서의 설계내역서 검토능력 부족	민간기업의 설계내역서 작성 부실	계약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인식변화가 없다	삭감대비 부풀리는 경향 잔존	실적 위주 의 심사	합계
공무원	36	8	119	38	20	221
공사공단	3	1	37	21	41	103
합계	39	9	156	59	61	324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부서 공무원들을 위한 사기 개선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심사부서 근무자를 우대해야 한다가 43%(138명)로 가장 많았고, 소수의 견으로는 심사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해외연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특이한 사항은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28%(92명)이었다. 이는 발주부서중 공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인사상의 우대를 개선책으로 삼았으나 공무원은 타 부서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행 직제를 고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감사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우대가 타 부서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응답은 수궁이 가는 부분이다.

Table 32 계약심사부서를 위한 사기진작 개선방안(빈도 및 교차분석)

구분	빈도 (명)	비율 (%)	유효비율 (%)	누적비율 (%)
전보, 승진 등의 인사 우대	138	42.6	42.6	42.6
심사보상금 지급	30	9.3	9.3	51.9
해외연수	56	17.3	17.3	69.1
특별휴가	8	2.5	2.5	71.6
타 부서와의 형평성 고려 현행유지	92	28.4	28.4	100.0
합계	324	100.0	100.0	

구분	전보, 승진 등의 인사우대	심사보상금 지급	해외 연수	특별 휴가	타 부서와의 형평성 고려 현행유지	합계
공무원	79	29	40	7	66	221
공사공단	59	1	16	1	26	103
합계	138	30	56	8	92	324

5.3.3 건설공사업체 등 민간업체의 인식 분석

관련업체는 7가지로 대분류하여 총 33문항으로 조사하였고 그 내용은 각 개인별 특성과 계약심사제도의 초기인식, 계약심사의 활성화 정도, 계약심사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정도, 계약심사 일반사항과 계약심사와 청렴도 및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계약심사의 청렴도와 계약심사발전방안에 대한 사항을 중복 포함시켜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 담당공무원과 관련업체간 상반된 시각을 도출시켜 분석하고자 Table 33과 같이 구성했다.

Table 33 관련업체의 인식분석 설문조사 내용

질문유형	설문 주요내용	문항
개인별 특성	성별, 연령, 교육정도, 자격증유무, 근무경력, 직급, 근무처, 전문분야, 계약심사제도, 담당여부, 선호업무여부, 담당자 수	1(①~⑥) 2~7
계약심사제도의 초기인식 대응	가장 먼저 추진한 내용, 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8~9
계약심사제도의 활성화 정도	계약심사 심사건수, 만족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불만족 원인, 재검토방법, 재의결 미 요청 사유	10~15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정도	심사결과 정확도, 업무능력	16~17
계약심사 일반사항	실제내역서 애로사항, 계약심사기법 개발, 실제금액 부풀림 여부, 내역서 부담감정도	18~21
계약심사제도와 청렴도	업무편의여부, 편의내용, 처리결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업무능력	22~26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	이 제도의 문제점, 이 제도 시행이후 나타난 이점, 업체의 활성화 방안, 부산시의 활성화 방안, 담당공무원에 대한 활성화방안, 중앙정부에서의 활성화방안	27~32

첫째, 개인별 특성을 보면 본 설문에 응한 사람은 총 226명으로 이중 남자는 93%(210명) 여자는 7%(16명)이며, 연령층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90%(204명)이며, 자격증은 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능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근무경력은 6년~15년이 67%(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토목·건축분야가 52%(118명) 기계소방분야가 35%(79명) 전기통신분야가 8%(17명)이었다.

둘째, 본 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가 88%(197명), 모르는 경우가 12%(29명)로

하수급업체 대부분이며 15%(34명)는 계약심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 58%(132명)는 동종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22%(50명)는 심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업체도 있었다. 또 민간업체에서 계약심사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68%(154명)가 불필요한 제도로, 8%(22명)는 이윤삭감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업무확대라고 생각한 업체는 4%(10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계약심사 제도가 생겨남으로서 설계금액이 조정되고 사업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심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 8%(17명)과 불만족 10%(22명)이 대체로 비슷하나 83%(187명)이 보통으로 응답하고 있어 민간업체에서는 계약심사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크지 않았다. 업체입장에서 보면 사업금액에 대한 삭감이 좋을 리 없고, 심사 시에 삭감되거나 자재 및 공법 등이 변경되는 부분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니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용역업체의 경우 삭감 폭이 클수록 회사의 이미지 실추나 추가 발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보면 심사담당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력 부족 48%(109명), 정보부족과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각각 29%(66명)와 23%(51명)로 모두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꼽았다.

넷째,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대한 정확도는 70%(121명)가 정확하다고 답해 보통19%(42명)와 부정확하다는 4%(10명)와 비교할 때 계약심사결과는 매우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은 68%(117명)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보통 25%(43명), 미흡 8%(13명)보다 크게 앞서 정확한 계약심사와 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민간업체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사업내역서 작성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39%(67명)과 공법 등의 유사모델 부재가 37%(83명)를 차지하였으며, 이외도 기술력부족 39%(67명), 정보부족 및 업체 상호간의 협조체계가 부족하다는 소수의견이 각각 3%(6명)와 6%(10명)다. 또 사업내역서 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감은 71%(122명)로 없다는 16%(28명)에 비교할 때 설계내역서작성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심사 기법개발을 위한 업체의 노력은 60%(136명)가 전문교육이수를 들었고 그 다음으로 26%(59명)가 전문서적과 인터넷에 의존하였다. 또 심사삭감에 대비하여 과다설계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83%(143명)가 없다고 조사되었고, 있다는 10%(18명)의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 용역업체에서는 설계내역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계약심사제도의 큰 성과중의 하나다.

여섯째, 심사 및 발주부서와 동일하게 계약심사와 관련된 청렴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관공서에 업무편의를 부탁한 경우는 79%(137명)가 없다는 21%(36명)였으나 이는 시행초기 일시적인 현상으로 현재는 계약심사 업무체계상 담당공무원에게 업무편의를 부탁할 수 없다. 업무편의를 부탁한 총36명은 계약심사 원안통과가 67%(2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부탁이 19%(7명)이며 사업예산 삭감 완화가 14%(5명)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탁에도 92%가 미반영 또는 일부만 반영하였다고 조사되었다. 이런 부탁의 성격은 부조리보다는 업무에 대한 열성으로 볼 수 있어 관계 업체나 담당공무원 모두 청렴함을 알 수 있다. 또, 퇴직공무원이 일반회사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63%(142명)가 찬성을 하였고, 이들에 대한 업무능력도 우수(60%, 136명)하다고 답해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일곱째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먼저 민간업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Table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109명)가 절차가 번거롭다고 답했고 27%(60명)가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의 일방적인제도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Table 34 민간업체 차원에서 생각하는 이 제도의 문제점(빈도분석)

구분	실적위주	절차번잡 및 시일 소요	심사부서의 일방적인 제도	심사 불 필요	없다	합계
종합건설업체	10	9	11	14	0	44
전문건설업체	2	68	46	9	6	131
감리업체	6	7	0	1	0	14
설계업체	2	20	3	4	0	29
연구기관	3	5	0	0	0	8
합계	23	109	60	28	6	226

다음 Table 35과 같이 계약심사제도 시행이후 민간업체에 나타난 단점은 58%(131명)가 이윤삭감을 들었고 22%(49명)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계약심사제도가 합당하게 예산을 절감하다고 생각지 않고 기업의 이윤이 삭감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 업체가 있었고 계약심사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곳은 건설공사 및 용역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지 못한 영세한 업체들이다.

Table 35 계약심사제도 시행이후 나타난 장점(빈도분석)

구분	경쟁력 확보	인력, 직제 증설로 회사규모 확장	이익증대	이윤감소	변화없다	합계
종합건설업체	7	7	4	17	9	44
전문건설업체	15	7	0	86	23	131
감리업체	1	0	0	7	6	14
설계업체	3	0	2	17	7	29
연구기관	0	0	0	4	4	8
합계	26	14	6	131	49	226

또 업체차원에서 스스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는 심사전문가 육성이 66%(150명)로 가장 많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13%,30명)가 있었으며 소수의견으로 정기교육(7%, 16명), 조직확대(6%,13명), 계약심사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7%, 17명)이 있다. Table 36은 이에 대한 결과치이다,

Table 36 민간업체 차원에서 보완하여야 할 과제(빈도분석)

구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계약심사 전문가 육성	업무연찬 및 정기교육	조직 확대	계약심사 담당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합계
종합건설업체	8	15	9	8	4	44
전문건설업체	8	103	5	3	12	131
감리업체	7	5	1	1	0	14
설계업체	5	22	0	1	1	29
연구기관	2	5	1	0	0	8
합계	30	150	16	13	17	226

다음으로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계약심사 제도를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업계에서는 매뉴얼배부(33%, 75명), 정보공유(32%, 72명) 전문가 교육(28%, 64명)이 각각 비슷하게 나왔다. 이 같은 수치는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분야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연계되어 지속적 집중적으로 육

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Table 37은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Table 37 향후 부산시의 계약심사제도를 위한 발전방안(빈도분석)

구분	정보공유	메뉴얼 배부	전문가 교육	상담실 운영	정기협의체 가동	합계
종합건설업체	22	0	19	2	1	44
전문건설업체	29	57	39	4	2	131
감리업체	5	4	1	0	4	14
설계업체	13	10	5	1	0	29
연구기관	3	4	0	1	0	8
합계	72	75	64	8	7	226

또 민간업체에서 생각하는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활성화 방안을 보면 공모제로 변경 44%(99명),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40%(91명)이며 소수의견으로는 인원 및 직제 확대, 전문관제 도입, 현행대로 고수하자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민간업체에서 바라는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은 대내외적으로 공모를 통해 업무자질과 심사능력 및 청렴성을 인정받은 공직자만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Table 38은 관련업체에서 바라보는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다.

Table 38 민간업체에서 생각하는 계약심사부서의 활성화 방안(교차분석)

구분	인원 및 직제 확대	전문관 제도 도입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심사부서 공모제	현행대로 고수	합계
종합건설업체	9	1	22	11	1	44
전문건설업체	1	6	45	67	12	131
감리업체	1	0	8	5	0	14
설계업체	4	0	12	13	0	29
연구기관	0	1	4	3	0	8
합계	15	8	91	99	13	226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추진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각 공종별 표준설계심사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여야한다는 의견이 55%(124명)이었고 이외도 원가계산방식의 현실화를 검토(33%, 75명)하여 달라는 의견과 정부와 업체 간 정보공유, 정부 표창확대도 소수의견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9는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Table 39 민간업체에서 생각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활성화 방안(교차분석)

구분	정부업체협회 간 정보 공유	각 공종별 표준심사 프로그램 개발 배포	정기적 현장견학 실시	원가계산 현실화	유공자 표창확대	합계
종합건설업체	1	1	0	38	4	44
전문건설업체	9	103	0	17	2	131
감리업체	1	5	1	7	0	14
설계업체	1	12	4	12	0	29
연구기관	3	3	1	1	0	8
합계	15	124	6	75	6	226

5.4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첫째, 계약심사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설문내용을 보면 내·외부에서 심사와 관련한 요청이 있어도 규정에 따라 소신대로 처리하고 있고, 상급자도 심사결과 절감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담당직원이 소신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 부산광역시의 계약심사발전을 위한 인적방향으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력이 심사부서 근무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정기적인 연찬회와 시도별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는 방안을 들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계약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발주부서의 설계내역서에 대한 검토능력이 부족하며, 삭감에 대비하여 다소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소수의견도 조사되었다.

둘째, 시 본청·구청·사업소·공사공단에서 실제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각종 대형공사나 용역 및 신규 사업은 설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내역서(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계약심사 제도를 초기의 불편함에서 현재는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또 설계내역상 주요 심사대상은 노무비와 자재단가이며 계약심사부서에서의 심사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약심사부서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이 많아 계약심사부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발주부서보다 높고 선호부서로 인식되었다. 또 계약심사부서의 삭감에 대비하여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는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는 없었고, 설문자의 60%정도가 계약심사금액 삭감이 곧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계약심사제도 발전

을 위한 심사부서의 인사방안으로는 공모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비슷하게 다수를 차지하였다. 발주부서 공무원이 볼 때 중앙정부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비 심사에 대해 심사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정기연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나타냈다.

셋째, 시 본청과 자치구·군 및 공사·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기전 시설물 제작설치, 실험기기 등의 물품구입과 각종 설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민간업체는 계약심사 제도를 대체로 잘 알고 있으나 계약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많지 않았으며, 다른 업무와 겸임하여 업무가 가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이윤삭감이나 불필요한 제도로 인식하던 초기와 달리 7년 동안의 시행을 거친 결과 점차 필요한 제도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넷째, 민간업체에서는 심사담당공무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정확도와 업무능력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심사삭감에 대비하여 과다설계여부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사례가 조사되지 않았다. 또한 업체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계약심사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꼽았으며, 부산광역시의 계약심사제도 발전방안을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매뉴얼 배부 및 심사전문가의 육성을 들었다. 또 심사공무원의 인사방안으로는 심사부서 근무 직원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인사상의 인센티브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각 공종별 표준설계심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있어 드러난 한계점으로는 일부 업체에서는 경쟁업체를 의식해 내부의 정확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 작성에 대한 애로와 공무원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찾아 기업체의 이익과 부산시의 재정투자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에 대다수의 업체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답변을 보였다. 향후 부산시에서도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체가 이 심사제도를 바라보는 의식을 여러 계층별로 다양화하고 기업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

그동안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각종용역·기전시설물 제작설치 등 모든 지방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추진하면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은 전술한 바와 같고 이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 제기된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절감제도로서의 확실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3개의 분야 즉, 제도적 분야와 기술적 분야 그리고 실험적 분야로 나누어 제시한다.

6.1 제도적 분야

6.1.1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원가분석 자문단으로 활용

원가분석 자문단은 계약기술심사 업무의 전문성확보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하여 건설공사 원가분석 시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변경,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자문하므로써 계약기술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문제점제기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계약심사 종류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원가분석 자문단의 역할에 대한 활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별도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하지 말고 현재 기 구성되어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²⁸⁾이 활용 가능하다.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약심사 업무의 자문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술심의 주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므로써 조직을 간편하

28) 건설기술심의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9항 및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및 구·군 또는 시·나 구·군이 납입자본금의 2분의1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설계변경포함)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96조제1항, 제98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2조제2항, 제134조제3항 등을 심의한다.

게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울산의 경우는 공인회계사, 원가 분석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원가분석자문단을 구성하여 년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기술적 자문을 수시로 개최하며, 평시에는 유선으로 자문을 구하는 등 계약심사원가분석 자문단을 잘 활용하고 있다.

6.1.2 투명성제고를 위한 계약심사부터 회계입찰까지 공개 시스템 구축

안전행정부예규에 따라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개시부터 종료 시 까지 심사한 실적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각종 통계를 매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계약심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는 계약심사 통계자료를 내부 공무원 발주부서와 외부 관련 업계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정보시스템」을 공개하여 계약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계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계약심사 요청 후 심사기간동안 발주부서나 관련업계에서 계약심사와 회계부서의 입찰 진행상황 모두를 순차적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공개 시스템을 구축 및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설계서 및 내역서의 원가계산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계약심사부서의 통계자료인 「계약심사정보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하고 2차적으로 계약심사부서에서 통보된 금액을 기초로 입찰을 담당하는 회계부서의 입찰과정을 신설 통합하여 계약심사부터 입찰까지 진행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심사 및 계약진행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공개행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확대, 업계관계자의 불안을 해소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6.1.3 기술심의와 계약심사의 일괄처리로 심사기간 단축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기술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용역심의부서에서 기술용역 발주계획 심의를 받은 다음 계약심사부서에 계약심사를 받게 되므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시기가 지연되어 사업의 조기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기술용역심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기술용역은 용역발주 2개월 전에 발주의 필요성과 추진방법 등에 대해 기술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용역계약 체결 전 계약심사를 요청하여 원가심사 및

설계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입찰을 위해 회계부서로 넘겨진다. 따라서, 용역설계발주를 위한 기술용역 발주계획 심의 요청 시에 계약심사를 일괄 요청하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발주부서나 심의·심사부서에서 업무를 함께 처리함으로써 용역발주의 조기 집행이 가능하고 업무 처리의 간소화와 효율성 증대를 기할 수 있다. Fig. 21은 기술심의와 계약심사의 일괄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이다.



Fig. 21 기술용역 심의 및 계약심사 업무 처리 흐름도

6.1.4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공공 건설공사나 기계시설물 등의 제작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발주부서에서는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회계부서에서는 일상감사규정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계약심사부서에 각각 의뢰하고 있다.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을 거쳐 회계부서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계부서에서는 또 다시 계약심사부서에 계약의 적법성과 계약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게 되며 그 일상감사결과에 따라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심사부서에 계약심사 요청 시 사전에 회계부서와 입찰방안을 협의하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동시에 신청한다면 회계부서의 불편 해소는 물론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게 되므로 행정절차가 단순화 된다.

Fig. 22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개선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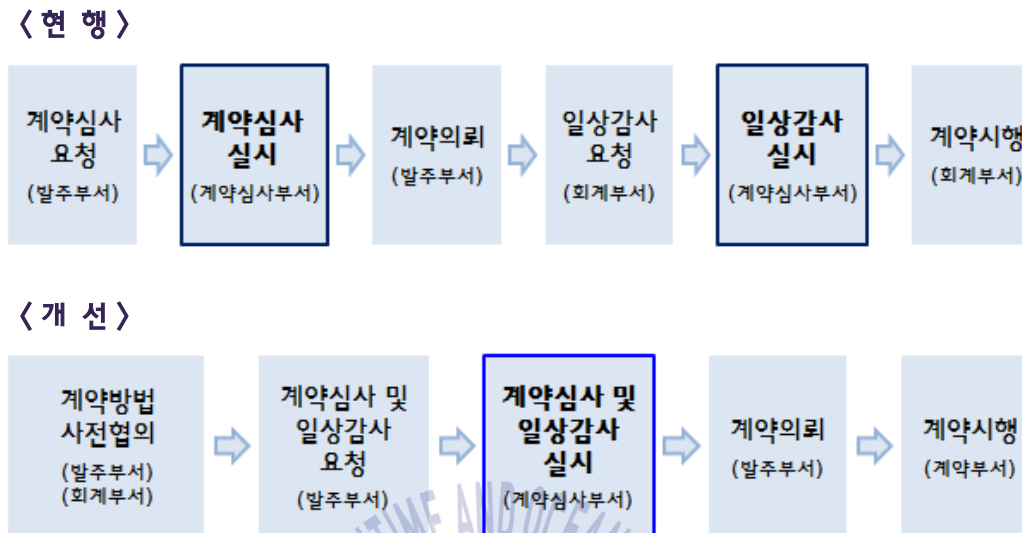


Fig. 22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 처리 흐름도

6.1.5 교통공사 외자구매 전담부서 신설

외자부품은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구입경로, 구입제품이 다양하여 국제감각이 필요할 정도로 그 어떤 심사분야보다도 더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다. 현재 허위부품 문제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연구원과 방위사업청의 비리는 도덕적 해이나 조직문화, 내부통제에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처럼 담당자나 전담조직이 특성화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느 조직에서나 언제든지 다시 비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민간 기업에만 의존하는 구매방식을 공무원 조직 내 전문부서를 신설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구입하는 방법으로서의 변경을 제고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구입시기가 불투명하고 다양한 제품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담조직 설치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기존 구성되어 있는 원가전문자문단이나 건설기술심의위원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부산광역시의 위상제고나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어할 미래에 대한 발전지향성을 볼 때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전문부서의 설치가 합당하다.

따라서 신설되는 조직은 시 본청보다는 외자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내에 신설 설치함이 타당하다. 만일 당장의 조직신설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계약부서에 전담인력만을 두고 추후 여건이 형성된 후 조직을 완성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부산교통공사 내 외자구매계약 전담부서 신설로 교통공사 자체 외자구입 업무뿐 만 아니라 시 본청 및 산하 전 공사·공단 의 외자구매에 대한 자문과 구매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부산광역시에서 구입되는 모든 외산품을 적정 품질과 가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교통공사의 위상제고는 물론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6.1.6 축적된 계약심사 자료의 활용도 극대화

부산광역시에서 계약심사한 모든 자료는 계약심사부서의 자체 통계프로그램인 계약심사정보시스템에 담당공무원의 심사 종료 후 담당자별로 입력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고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현재 계약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관리되고 있으나 이 계약심사정보시스템이 통계보고이외에는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 자료들을 기관별 분야별로 분류하여 일상감사나 실지감사²⁹⁾ 시에 활용한다면 자체 감사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발주부서에도 이 자료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내역서 작성이나 예산절감과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민간업체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가능 하도록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공개를 통한 업체 간의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업계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효율화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음의 Fig. 23는 시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프로그램인 「계약심사정보시스템」이다.

29)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처리 등의 적정여부와 행정운영의 타당성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심사자료조회]

• 심사종류 전체 • 요청기관 부서검색 • 심사담당자 문광일

• 사업명 • 통보여부 전체 통보자료조회 미통보자료조회

• 요청금액 ~ 천원 • 조정금액 ~ 천원

• 접수일자 ~ • 통보일자 ~ 조회

[계약심사자료리스트] (단위 : 천원)

관리번호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요청금액	조정금액	결감액	절감율	담당자	접수일자	통보일자	일수	요청기관명
2014-20391	물품	요제품 구입	우유 등 5종	133,859	119,784	14,075	10.52	문광일	20140110	20140114	3	부산광역시
2014-20395	물품	차아염소산소다 구입	1,180톤 단가계약	155,760	148,562	7,198	4.62	문광일	20140106	20140107	2	부산광역시
2014-20334	물품	RCS5 구입	통당 연간 55,000톤 단가계약	390,500	356,950	33,550	8.59	문광일	20140106	20140107	2	부산광역시
2014-20333	물품	분말활성탄	통당 단가	160,160	146,510	13,650	8.52	문광일	20140106	20140107	2	부산광역시

총 677건 검색 엑셀저장

[계약심사자료관리]

• 심사종류 물품 •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환경공단 부서검색

• 사업명 차아염소산소다 구입 통당 연간 단가 계약 • 사업개요 1,180톤 단가계약

• 요청금액 155,760 천원 • 조정금액 148,562 천원 • 결감액 7,198 천원 • 절감율 4.62 %

• 접수일자 20140106 • 통보일자 20140107 • 처리일수 2 일 • 업무수행팀 구매계약

• 공문번호 277 • 분 야 • 담당자 문광일

• 비고

파일관리 삭제 수정 취소

Fig. 23 계약심사정보시스템(부산광역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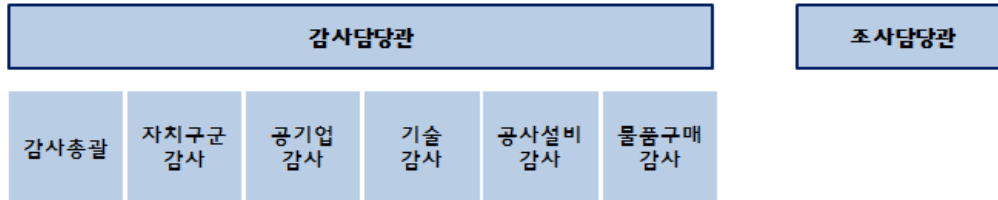
6.1.7 계약심사부서의 조직개편 확대

현재의 계약심사부서는 이 제도시행당시 계약심사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과(課)단위³⁰⁾ 체계가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상감사인 감사업무가 추가로 신설되어 조직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금의 감사관실로 2개 계(係)단위로 축소³¹⁾ 조직 개편되었다. 감사업무와 심사업무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일상감사 업무가 감사기능을 한다고 하나 사실은 감사와 심사업무는 별개의 업무다. 성격이 다른 업무가 한 부서에 공존하는 것은 직원들 간에 업무소통이나 화합에도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조직관리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감사관실 소속하에 과(課)단위로 독립시켜 계약심사만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시 감사인력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감사관실 소속이므로 인력 차출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계약심사부서의 확대개편도 고려할 때다. Fig. 24는 계약심사부서의 조직개편 확대방안³²⁾이다.

30) 감사관실 : 감사담당관(감사기획, 자치구군, 예방, 기술, 공사계약, 구매계약, 설비계약), 조사담당관(청렴정책, 기술조사, 민원조사, 직무조사)

31) 감사담당관(감사기획, 자치구군, 예방, 기술, 공사설비, 구매계약)

〈 현 행 〉



〈 개 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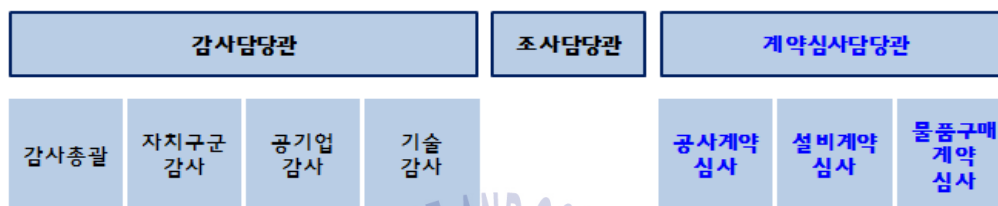


Fig. 24 계약심사부서 조직확대 개편안

6.2 기술적 분야

6.2.1 현장 확인을 통한 수요자 및 품질중심의 계약심사 확행

현재 계약심사부서에서 원가절감과 시공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장 확인중심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하여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하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는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나 물품심사의 경우에는 심사 특성상 현장위주의 확인보다는 대다수 서류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계서류 검토만으로는 구매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장 확인이 불필요한 단순 물품구입이나 완제품 구입을 제외한 물품의 제조 및 구입 설치시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여건과 사용자의 면담, 설문 등 심층 분석을 통한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계약심사의 신뢰도와 발주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32) 2015.1.1.자 감사담당관실과 조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감사관실 내 6개 계단위(감사기획, 행정감사, 계약감사, 기술감사, 청렴문화, 직무조사)로 축소 개편되었으나, 조직 진단후 다시 확대 개편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관계서류 검토만으로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미비하므로 1차적으로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병행하여 확인하면 된다. 현장 확인 시 적정수량이나 사용실태, 물품의 필요성, 대체품 가능여부, 신규품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되 통상적인 물품구매는 현장 확인을 생략한다. 또한, 계약심사의 업무특성상 연초와 연말에 계약심사가 집중되어 업무과다로 현장 확인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장시는 동종·유사형식 및 동일지역을 묶어 품목별, 권역별로 확인하고, 원가산정이 곤란하거나 특이한 사례의 심사는 계약심사경험이 풍부한 직원이나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확인하거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현장중심, 품질중심의 심사를 한다.

6.2.2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간의 사전 협의제 운영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모든 건설공사와 용역 및 각종 물품들을 연초에 조기 발주하여 공공사업을 추진중이므로 계약심사 업무도 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자체적으로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심사담당자의 업무처리 건수가 적을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담당자별 업무처리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다보면 심사기간이 부족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하기 전에 심사부서와 발주부서 간에 사전 협의를 함으로서 공법이나 공정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거나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애로와 같은 요구사항을 발주부서와 함께 검토하여 반영시킴으로서 부서간의 합리적인 소통과 계약심사의 질적 개선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재심사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가 있다. 이런 협의사항은 안전행정부 업무지침에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업무처리의 신속이나 부서간의 소통부재, 정실 등에 의해 생략하거나 상호간에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관련규정의 제·개정 없이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6.2.3 자치구·군 재원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지원

시 본청에서는 그동안 계약심사제도 시행 이후 각종 대단위 사업과 다양한 형태의 심사업무 추진으로 심사기법을 축적하거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치구군에서는 심사인력과 전문성부족으로 원활한 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군의 자체 채용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사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적 대상으로 자치구군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를 지원하면 되는데 그 심사 지원 대상 금액은 시 분청 및 자치구군의 의무적 심사대상 금액을 고려하여 공사는 10억 원 이상, 용역은 2억 원 이상, 물품은 1억 원 이상이면 적정할 것 같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의 확대로 민간 위탁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사업도 동일하게 심사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시행한다면 시 분청과 자치구군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됨은 물론 공통 자재단가 등의 공동 활용으로 심사정보를 공유하는 효과와 업무협업에 따른 신속한 처리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Table 40은 시 분청에서 자치구군의 자체 채용사업에 대한 임의적 심사지원 대상금액이다.

Table 40 자치구·군 채용사업 심사지원 대상금액

구분	시 분청 의무적 심사대상	심사지원 대상금액	자치구군 의무적 심사대상
공사	추정금액 5억 원	추정금액 10억 원 이상	3억 ~ 1천만 원
용역	추정금액 1억 원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7천만 원 ~ 1천만 원
물품	추정금액 2천만 원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2천만 원 ~ 3백만 원
기타	시비, 재배정, 국고보조	민간위탁사업 포함	민간위탁사업 포함

6.2.4 설계의 경제성 검토 대상금액 확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는 현재 부산시에서는 관련규정과 같이 대상금액을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50억 이상의 건설공사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Table 14에서 경제성검토는 6년 동안 총 97건을 심사하여 1년 평균 16건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18건 이상으로 전체평균보다 많았으나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각각 2건과 6건으로 현저히 급감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산의 건설경기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역내 대형공사는 어느 정도 발주가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중소형 공사가 다량 발주될 것이므로 설계의 경제성검토 심사를 확대하여야 한다.

6.2.5 종이 없는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도모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건수는 2013년말 4,580건에 달하며 이들 건설공사나 기전물품, 용역계약 심사 시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관계 자료의 양은 엄청나다. 특히 공사계약심사의 경우는 시방서, 내역서, 산출기초, 단가비교표, 도면, 견적서,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된 심사용 설계 도서를 제출받아 상호 비교·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계약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이 자료들은 계약심사 후 문서정리기에서 파쇄되어 폐기된다. 이렇게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용 설계도서 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계약심사부서에서도 이런 방대한 관련 자료를 보관할만한 장소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약심사 요청 시는 별도로 심사용 책자나 자료를 만들어 첨부하지 말고 심사용 설계도서 및 첨부 자료를 파일 형태로 접수받아 개인 업무용컴퓨터를 활용하여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발주부서와 설계용역 업체에서 심사용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에 따른 인력낭비를 막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6.2.6 계약심사 처리실태 만족도 상시 모니터링 강화

계약심사를 요청한 발주부서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체 모두 내·외부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계약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모니터링은 계약심사 처리과정의 공정성이나 친절도, 문제제기의 수월성과 기준절차의 명확성, 금품제공여부 및 업무개선, 대안제시 등을 포함하여 의무적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불만사례를 분석하여 원인규명과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

또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이 업무 추진 시에 간과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수정하고 철저히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다. 더불어 부정적인 응답자에 대해서는 시장 공한문을 발송하거나 문자, 유선을

이용하여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Fig. 25는 상시모니터링 처리를 위한 체계도이다.



Fig. 25 수요자 중심의 상시모니터링 체계도

6.2.7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민간단체 협력강화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 (works shop)을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과 자료를 습득하고 직무능력을 배양시켜 심사의 질을 높인다. 또한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각 분야별 담당공무원의 심사사례를 발표하여 심사기법이나 심사 시의 중점검토사항을 서로 비교하거나 공유할 수 있어 업무에 대한 질과 폭을 높일 수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선진기법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지식의 충전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건설공법들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새로운 신공법이 양산되고 있으므로 대기업이나 특화된 민간기업에서 시공하는 대형공사현장을 통한 체험으로 현장 감각을 살려 공사현장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접목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계약심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기업과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행정으로, 일방적 통보형식의 의견제시보다는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 조정하는 소통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6.3 정책적 분야

6.3.1 계약심사부서 근무자 공모제 도입

계약심사부서는 감사관실 소속으로 대다수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중의 하

나다. 앞서 발주부서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계약심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하거나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현재의 인사방법이 보직경로나 업무능력과 시정기여도, 개인의 고충, 부서장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사부서 및 발주부서 공무원들은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근무하기를 원한다.

또한 민간기업체 설문조사에서도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은 기존 인사방법을 떠나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선발된 직원이 심사업무를 담당하기를 선호한다. 따라서 계약심사제도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내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우수한 인력을 모을 수 있는 인적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단편적인 인력배치보다는 인사공모 등을 통해 능력과 실력을 검증받은 직원이 계약심사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공모제 도입이 필요하다.

6.3.2 계약심사부서의 우대방안 마련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서 및 직원들 간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위하여 우대 (incentive)하는 내용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직원들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관련규정 이외에는 특정부서를 우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심사제도는 많은 노하우와 기술적인 깊이를 요한다. 보통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나 가공된 예산, 중복설계 및 과다 계상된 내용을 검토하여 지방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심사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나 업무에 대한 소신과 열정 없이는 어렵다.

계약심사에서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곧 부산광역시의 재정을 절감하는 것이다. 계약심사 시에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이 있었음에도 성의를 다하지 않았거나 업무무지로 간과되었다면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낭비된 셈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계약심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우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대방안의 내용이나 방법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본고에서는 이 계약심사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은 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혈세를 막는 최일선의 파수꾼이라는 이유에서 우대해야 함을 강조

하고자 한다. 우대의 범위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발탁승진이나 인사
가점 또는 표창, 해외선진지 견학과 같은 것이 무난하나 서울특별시의 경우처
럼 성과예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계약심사 담당직원을 우대하는 것은 이들의 사기를 고취시켜 계약심사
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절감된 예산을 긴급한 곳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인적우대방안은 계약심사제도의 발전
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장 결 론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시정에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management mind)를 도입하여 공공발주사업(공사·용역·물품)의 입찰이나 계약의 기초금액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공공 사업자에게는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시에서는 7년간 2,6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사업 발주부서와 용역업체에서 작성된 설계금액을 그대로 기초금액으로 적용하지 않고 계약심사부서에서 민간 경영기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의한 깊이 있는 설계금액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이다. 또한 시 본청뿐 만 아니라 자치구·군까지 계약심사제도가 확대 도입되어 원가계산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원가분석기법 및 기업의 경영마인드 확산으로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나 제도시행 7년이 경과된 지금에는 이 제도가 성숙단계를 넘어 고도화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 계약심사제도의 향후방향은 예산 절감률이 높고 낮음의 성과중심이나 행정과신주의에 따라 예산절감 효과를 비교하기 보다는 심사의 품질,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치중하는 패러다임(paradigm)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당장 눈앞의 예산절감만을 위한 수치의 심사보다는 전체적인 체계나 구성 등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 또는 목적물의 수명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의 경제성과 효용성을 함께 검토하고 예산이 다소 증액되더라도 이를 적극 반영해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다.

부산광역시에서 지난 7년간 이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생겨난 제반 문제점과 이를 치유하기 위한 개선사항, 계약심사·발주부서 담당공무원과 건설·용역시공업체의 설문조사내용, 전체 예산절감 내역 및 실적 등을 파악하여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정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전체적으로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의견을 제시하면,

우선 **제도적인 분야**로 첫째, 건설기술심의위원(VE심의위원)을 원가분석자문단으로 활용하고, 둘째 투명성제고를 위해 계약심사부터 회계입찰까지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기술심의회와 계약심사를 일괄로 처리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넷째 현재 계약심사 후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부산교통공사에 외자구매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시 전체의 외자전문 싱크탱크로 육성하고, 여섯째 시 분청 자체 통계프로그램인 계약심사정보시스템을 민간 기업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며, 마지막 일곱째 현재 감사담당관실 내에 있는 계약심사부서를 별도의 과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전문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첫째, 계약심사 시 수요자중심의 현장 확인을 통한 계약심사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계약심사부서와 발주부서간의 사전 협의제를 활성화하여 발주부서의 설계 의도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소통하는 심사방법의 절적개선을 도모하고, 셋째 인력이 부족한 자치구·군 재원사업의 계약심사를 지원하며, 넷째 VE심사대상금액을 확대하고, 다섯째 지방서·설계내역서·산출기초·도면 대신 전산파일로 제출받아 종이 없는 계약심사로 자료작성에 따른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며, 여섯째 계약심사 처리실태 만족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공정성·청렴성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일곱째로 계약심사의 지식습득과 직무능력강화를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강화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분야**에서는 첫째,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청렴성과 업무능력이 최고의 요건이므로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모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공모를 거친 계약심사부서 근무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계약심사 질의 향상은 곧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일이므로 이들에게 어떤 경우의 형태든 우대(incentive)하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김경래, 2001. *건설공사의 품질과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국토연구원.
- [2] 김대인, 2008.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 [3] 김명희, 2003. *활동기준원가계산 시스템 구축 및 원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 [4] 김은규, 2009. *계약심사제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광주광역시.
- [5] Yong-Tak Kim(2010) 「*Development Plans and Present Conditions of Contract Screening System in Jeju*」 제주대학교 건설 환경공학과.
- [6] 김지홍, 손성규, 이경태, 2001. 정부계약공사 업체선정 방법이 공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관리회계연구 제1권제1호*.
- [7] 김종호, 2008. *계약심사운영 요령 및 전산실습-공사분야*,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261-305
- [8] 김종희, 2002. *지방재정론*, 법문사. 95쪽
- [9] 김찬동, 2004. 서울시 행정재정개혁과 경영마인드 도입에 관한 연구-계약심사제도의 도입과 성과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0] 김찬동, 배준식, 2010. 계약사무 이관에 따른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1] 국토교통부, 2016. *2016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 [12] 국토연구원, 2008.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 [13] 남기산, 2008. *계약심사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예산절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 제28기 정책과제 연구
- [14] 류영아(201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발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5] 류영아 (2015) 「A Study on the Assurance Method of the Efficiency of Local Finince on the contract Screen System」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제1호 131-156쪽

- [16] 류춘호(a), 2008. 부산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실. 정책연구브리핑 모음집.
- [17] 류춘호(b), 2008. People want public services that wort providing high quality and cost effective public services is not easy,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부산광역시의회.
- [18] 부산광역시, 2009(a). 계약심사사례집, 부산광역시.
- [19] 부산광역시, 2010(b). 계약심사사례집, 부산광역시.
- [20] 부산광역시, 2011(c). 계약심사사례집, 부산광역시.
- [21] 부산광역시, 2012(d). 계약심사사례집, 부산광역시.
- [22] 부산광역시, 2013(e). 계약심사사례집, 부산광역시.
- [23] 부산광역시, 2014(f). 계약심사사례집, 부산광역시.
- [24] 부산광역시, 2016. 최저가 낙찰제 개선, 부산광역시.
- [25] 부산광역시, 2013. 계약심사결과 반복 지적사례 통보, 부산광역시
- [26] 박정훈, 200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제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7] 박지향, 2008.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운영 요령,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 [28] 박채규, 2008. 지방계약제도 운용의 효율성 증진방안, 지방재정과.
- [29] 서울특별시(a), 2006 계약심사사례집, 서울특별시.
- [30] 서울특별시(b), 2007 계약심사사례집, 서울특별시.
- [31] 이동욱, 김용탁, 2010.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약심사제도 효과 및 인식 조사,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 [32] 이동욱, 박준영, 부양수, 김태건, 2009. *A Study on the Practical*

Applications and Present Conditions of Contract Screening in Jeju,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자료집

- [33] 이목훈, 2011. 지방재정론, 대왕사. 45-49쪽
- [34] Sang-Keun Lee, 2011. A Study for the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the Contract Screening Scheme on Seoul's Public Orders, *대한토목학회지* 제59권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건설전문위원실 전문위원
- [35] 윤성식, 2004. 예산개혁과 정부회계-발생주의 예산과 발생주의 회계를 중심으로, *학국정책학회보* 제13권2호
- [36] 이영한, 여은정, 2007.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 [37] 이정연, 1993. 정부회계원가계산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 [38] 울산광역시, 2008. 계약심사사례집, 울산광역시.
- [39] 정원, 2004. 입찰관련 법적 성격 규명과 분쟁해결 방안 국방조달 관계법 세미나 논문집(제4회) 국방부 조달본부. 85-140쪽
- [40] 조달청, 2007. 조달청 적정원가 산정기준 연구, 조달청.
- [41] 최두선, 2004.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해설, 국토연구원.
- [42] 최두선, 2008. 지방계약제도 해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377-442쪽
- [43] 최덕규, 김명희, 1997. 수주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시스템의 구축, *한국중소기업학회*.
- [44]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00. VE방법론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45] 황혜신, 2005.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주인대인이론의 적용, *한국행정논집* 17.
- [46] Jong-Hyund, Hong, 2014. 재정건전화를 위한 계약심사제도의 개선방안

일감법학 27권 629-673쪽, 건국대법학연구소.

- [47] 행정안전부, 2008. 주민의 세금을 아끼는 예산절감 길라잡이, 행정안전부.
- [48] 행정안전부, 2010.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49] 행정안전부, 201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 [50] 행정안전부, 2014.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부록〉

붙임1. 부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군 계약심사부서 설치 현황

붙임2.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계약심사 대상 금액 현황

붙임3.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처리실적

붙임4. 전국 시·도 계약심사부서 설치 현황

붙임5. 전국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시행 현황(1, 2)

붙임6. 전국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 현황

붙임7. 계약심사 반복 지적사항

붙임8. Questionnaire



<붙임1>

부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군 계약심사부서 설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소속 부서			직제		인력규모 (직급)						조 직 설치일	업 무 개시일	
	국	과	팀/ 담당	과	담당	계	4	5	6	7	8			9
계				0	0	33	1	2	12	12	6	0		
본청	감사관실	감사관실	공사 설비, 구매		2	15	1	2	8	4			08.08.07	08.08.07
중구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1			11.01.01	11.01.01
서구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1			11.01.01	11.04.01
동구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1		11.01.01	11.01.01
영도구		기획 감사실	법무 감사 담당			1					1		13.01.25	13.01.25
부산 진구		감사 담당관	감사 담당			1				1			11.01.01	11.01.01
동래구		재무과	계약 심사팀		1	2			1		1		09.04.02	09.04.02
남구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1		10.12.28	11.02.10
북구		감사실	감사 담당			1					1		12.6.30	12.07.16
해운대구		감사 담당관	감사팀			1					1		11.2.28	11.02.28
사하구		감사실	조사 담당			1			1				11.12.09	11.12.09
금정구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1		12.03.30	12.03.30
강서구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1	11.11.23	11.11.23
연제구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1				11.01.01	11.01.01
수영구		기획 감사실	감사팀			1					1		11.01.01	11.01.01
사상구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1				10.11.25	11.01.25
기장군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2					1	1	11.02.22	11.02.22

※ 기준 : 2014.12.31현재

<붙임2>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계약심사 대상 금액 현황

구분	시행 (일자)	계약심사부서				계약심사 의무적 심사대상								
		국/실	과	팀	총인원	원가심사 (추정금액 기준)					실계변경 심사		저가 심사	
						종합 공사	전문 공사	기술 용역	학술 및 일반	물품	시행	계약 금액 기준	시행	추정 가격 기준
본청	08.08.07	감사관	감사관	공사 설비 감사, 구매 감사	16	5억원	3억원	1억원	1억원	2천 만원	0	20억 원/10%	X	-
중구	11.01.01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2억원	3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2천 만원	0	5억원 /10%	X	-
서구	11.04.01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2억원	1억원	5천 만원	5천 만원	2천 만원	0	5억원 /10%	X	-
동구	11.01.01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3억원	5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2천 만원	0	5억원 /10%	X	-
영도	13.01.25		기획 감사실	법무 감사 담당	1	1억원	5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2천 만원	0	3억원 /10%	X	-
진구	11.01.01		감사 담당관	감사 담당	1	2억원	2억원	5천 만원	5천 만원	2천 만원	0	5억원 /10%	X	-
동래	09.04.02		재무과	계약 심사 팀	2	1천만 원	1천 만원	5백 만원	5백 만원	3백 만원	0	1천만 원/10%	X	-
남구	11.02.10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3억원	2억원	5천 만원	5천 만원	2천 만원	0	5억원 /10%	X	-
북구	11.08.11		감사실	감사 담당	1	3억원	5천 만원	7천 만원	7천 만원	2천 만원	0	5억원 /10%	X	-
해운 대	11.02.28		감사 담당관	감사 팀	1	3억원	5천 만원	5천 만원	5천 만원	1천 만원	0	5천만 원/10%	X	-
사하	11.12.09		감사실	감사 담당	1	3억원	2천만 원	1천 만원	1천 만원	1천 만원	0	3억원 /10%	X	-
금정	12.03.30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3억원	5천 만원	5천 만원	5천만 원	2천 만원	0	5억원 /10%	X	-
강서	11.11.23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3억원	5천 만원	5천 만원	5천 만원	2천 만원	0	5억원 /10%	X	-
연제	11.01.01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3억원	5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2천 만원	0	5억원 /10%	X	-
수영	11.01.01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3억원	1억원	5천 만원	5천만 원	2천 만원	0	5억원 /11%	X	-
사상	11.01.25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1	3억원	2억원	7천 만원	7천 만원	2천 만원	0	20억 원/10%	X	-
기장 군	11.02.22		기획 감사실	감사 담당	2	5천만 원	5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2천 만원	0	20억 원/10%	X	-

※ 기준 : 2014.12.31현재

<붙임3>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처리실적

1. 계약심사 실적 총괄 (2008년 7월 ~ 2014년 12월31일)

□ 총괄 현황 (건수, 금액 천 단위)					
분 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5,632	6,426,727,435	6,165,449,801	261,277,634	4.07
공 사	1,947	4,676,874,129	4,475,227,536	201,646,593	4.31
용 역	1,424	1,178,569,219	1,141,353,395	37,215,824	3.16
물 품	2,261	571,284,087	548,868,870	22,415,217	3.92

2. 연도별 공종별 심사현황

□ 2008년도					
분 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319	806,196,696	765,613,458	40,583,238	5.03
공 사	89	627,491,739	592,812,499	34,679,240	5.53
용 역	95	93,893,125	91,045,012	2,848,113	3.03
물 품	135	84,811,832	81,755,947	3,055,885	3.60

□ 2009년도					
분 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692	868,263,286	833,071,448	35,191,838	4.05
공 사	281	656,475,356	628,205,048	28,270,308	4.31
용 역	222	180,687,182	174,555,960	6,131,222	3.39
물 품	189	31,100,748	30,310,440	790,308	2.54

□ 2010년도					
분 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779	1,363,777,745	1,305,051,648	58,726,097	4.31
공 사	307	1,105,482,334	1,060,199,807	45,282,527	4.10
용 역	237	225,586,953	213,060,167	12,526,786	5.55
물 품	235	32,708,458	31,791,674	916,784	2.80

□ 2011년도					
분 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837	648,552,463	618,909,255	29,643,208	4.57
공 사	290	430,226,188	406,954,431	23,271,757	5.41
용 역	214	165,849,524	161,573,692	4,275,832	2.58
물 품	333	52,476,751	50,381,132	2,095,619	3.99

□ 2012년도					
분 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941	831,685,882	796,634,273	35,051,609	4.21
공 사	305	586,066,296	559,497,646	26,568,650	4.53
용 역	203	139,962,867	136,605,656	3,357,211	2.40
물 품	433	105,656,719	100,530,971	5,125,748	4.85

□ 2013년도					
분 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1,012	953,116,024	923,749,015	29,367,009	3.08
공 사	337	621,759,196	600,224,574	21,534,622	3.46
용 역	212	194,558,393	191,801,592	2,756,801	1.42
물 품	463	136,798,435	131,722,849	5,075,586	3.71

□ 2014년도					
분 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1052	955,135,339	922,420,704	32,714,635	3.43
공 사	338	649,373,020	627,333,531	22,039,489	3.39
용 역	241	178,031,175	172,711,316	5,319,859	2.99
물 품	473	127,731,144	122,375,857	5,355,287	4.19

3. 연도별·월별 세부심사 현황

■ 2008년도

구분	분 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계	319	806,196,696	765,613,458	40,583,238	5.03
	공 사	89	627,491,739	592,812,499	34,679,240	5.53

	용역	95	93,893,125	91,045,012	2,848,113	3.03
	물품	135	84,811,832	81,755,947	3,055,885	3.60
1월	계		(업무 미개시)			
~	공사					
6월	용역					
	물품					
7월	계	16	23,576,667	22,723,394	853,273	3.62
	공사	6	10,444,205	9,810,317	633,888	6.07
	용역	10	13,132,462	12,913,077	219,385	1.67
	물품	0	0	0	0	0.00
8월	계	53	54,371,183	52,582,166	1,789,017	3.29
	공사	11	32,184,296	31,458,813	725,483	2.25
	용역	16	16,055,644	15,084,636	971,008	6.05
	물품	26	6,131,243	6,038,717	92,526	1.51
9월	계	18	31,620,119	30,642,322	977,797	3.09
	공사	0	0	0	0	0
	용역	5	3,515,360	3,346,232	169,128	4.81
	물품	13	28,104,759	27,296,090	808,669	2.88
10월	계	64	450,561,568	423,962,535	26,599,033	5.90
	공사	15	429,614,286	403,849,034	25,765,252	6.00
	용역	22	12,413,150	11,894,806	518,344	4.18
	물품	27	8,534,132	8,218,695	315,437	3.70
11월	계	74	113,469,648	109,594,621	3,875,027	3.42
	공사	29	80,131,477	76,941,422	3,190,055	3.98
	용역	13	21,682,489	21,297,128	385,361	1.78
	물품	32	11,655,682	11,356,071	299,611	2.57
12월	계	94	132,597,511	126,108,420	6,489,091	4.89
	공사	28	75,117,475	70,752,913	4,364,562	5.81
	용역	29	27,094,020	26,509,133	584,887	2.16
	물품	37	30,386,016	28,846,374	1,539,642	5.07

■ 2009년도

월별	분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계	692	868,263,286	833,071,448	35,191,838	4.05
	공사	281	656,475,356	628,205,048	28,270,308	4.31
	용역	222	180,687,182	174,555,960	6,131,222	3.39
	물품	189	31,100,748	30,310,440	790,308	2.54

1월	계	86	65,302,691	61,513,640	3,789,051	5.80
	공 사	16	19,479,282	18,458,763	1,020,519	5.24
	용 역	40	41,765,831	39,091,126	2,674,705	6.40
	물 품	30	4,057,578	3,963,751	93,827	2.31
2월	계	121	91,144,830	88,118,600	3,026,230	3.32
	공 사	42	46,190,072	43,719,950	2,470,122	5.35
	용 역	38	34,768,472	34,370,629	397,843	1.14
	물 품	41	10,186,286	10,028,021	158,265	1.55
3월	계	89	69,094,311	67,215,399	1,878,912	2.72
	공 사	27	42,696,746	41,274,266	1,422,480	3.33
	용 역	30	20,866,327	20,555,428	310,899	1.49
	물 품	32	5,531,238	5,385,705	145,533	2.63
4월	계	77	64,650,751	61,694,683	2,956,068	4.57
	공 사	39	55,490,334	52,748,088	2,742,246	4.94
	용 역	17	6,732,778	6,612,985	119,793	1.78
	물 품	21	2,427,639	2,333,610	94,029	3.87
5월	계	41	27,948,420	27,194,781	753,639	2.70
	공 사	15	15,714,643	15,191,257	523,386	3.33
	용 역	13	9,911,491	9,740,916	170,575	1.72
	물 품	13	2,322,286	2,262,608	59,678	2.57
6월	계	55	45,407,090	43,193,173	2,213,917	4.88
	공 사	28	38,152,421	36,548,384	1,604,037	4.20
	용 역	17	5,790,893	5,274,213	516,680	8.92
	물 품	10	1,463,776	1,370,576	93,200	6.37
7월	계	35	94,285,965	92,851,837	1,434,128	1.52
	공 사	20	88,296,885	87,041,961	1,254,924	1.42
	용 역	10	5,531,186	5,366,143	165,043	2.98
	물 품	5	457,894	443,733	14,161	3.09
8월	계	26	25,010,241	23,746,823	1,263,418	5.05
	공 사	11	20,560,625	19,422,859	1,137,766	5.53
	용 역	9	3,136,880	3,024,940	111,940	3.57
	물 품	6	1,312,736	1,299,024	13,712	1.04
9월	계	31	34,643,750	31,270,037	3,373,713	9.74
	공 사	19	29,208,613	26,567,924	2,640,689	9.04
	용 역	6	4,747,606	4,051,166	696,440	14.67
	물 품	6	687,531	650,947	36,584	5.32
10월	계	31	71,417,696	65,922,344	5,495,352	7.69
	공 사	16	63,734,169	58,306,522	5,427,647	8.52
	용 역	7	6,976,996	6,936,952	40,044	0.57
	물 품	8	706,531	678,870	27,661	3.92

11월	계	35	77,719,100	74,903,829	2,815,271	3.62
	공 사	15	66,460,872	64,167,005	2,293,867	3.45
	용 역	13	10,483,705	9,986,142	497,563	4.75
	물 품	7	774,523	750,682	23,841	3.08
12월	계	65	201,638,441	195,446,302	6,192,139	3.07
	공 사	33	170,490,694	164,758,069	5,732,625	3.36
	용 역	22	29,975,017	29,545,320	429,697	1.43
	물 품	10	1,172,730	1,142,913	29,817	2.54

2010년도

구분	분 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계	779	1,363,777,745	1,305,051,648	58,726,097	4.31
	공 사	307	1,105,482,334	1,060,199,807	45,282,527	4.10
	용 역	237	225,586,953	213,060,167	12,526,786	5.55
	물 품	235	32,708,458	31,791,674	916,784	2.80
1월	계	93	58,478,352	53,871,400	4,606,952	7.88
	공 사	31	41,316,922	39,722,712	1,594,210	3.86
	용 역	37	14,204,900	11,271,098	2,933,802	20.65
	물 품	25	2,956,530	2,877,590	78,940	2.67
2월	계	113	132,295,046	128,348,538	3,946,508	2.98
	공 사	43	61,543,785	59,587,287	1,956,498	3.18
	용 역	40	64,409,628	62,586,269	1,823,359	2.83
	물 품	30	6,341,633	6,174,982	166,651	2.63
3월	계	123	224,513,116	214,630,613	9,882,503	4.40
	공 사	39	194,550,876	185,738,184	8,812,692	4.53
	용 역	34	22,148,091	21,303,698	844,393	3.81
	물 품	50	7,814,149	7,588,731	225,418	2.88
4월	계	84	139,716,312	132,453,091	7,263,221	5.20
	공 사	42	119,701,391	112,943,301	6,758,090	5.65
	용 역	17	16,847,674	16,424,786	422,888	2.51
	물 품	25	3,167,247	3,085,004	82,243	2.60
5월	계	85	71,725,634	68,734,187	2,991,447	4.17
	공 사	38	49,473,811	47,031,904	2,441,907	4.94
	용 역	24	19,471,981	18,995,487	476,494	2.45
	물 품	23	2,779,842	2,706,796	73,046	2.63
6월	계	62	132,469,385	127,929,274	4,540,111	3.43
	공 사	31	122,025,513	118,118,931	3,906,582	3.20

	용역	15	8,818,405	8,239,993	578,412	6.56
	물품	16	1,625,467	1,570,350	55,117	3.39
7월	계	34	63,450,646	61,912,427	1,538,219	2.42
	공사	16	57,869,235	56,469,691	1,399,544	2.42
	용역	9	4,496,500	4,390,553	105,947	2.36
	물품	9	1,084,911	1,052,183	32,728	3.02
8월	계	23	31,682,990	30,846,825	836,165	2.64
	공사	7	25,149,312	24,745,101	404,211	1.61
	용역	8	5,637,546	5,235,115	402,431	7.14
	물품	8	896,132	866,609	29,523	3.29
9월	계	31	21,369,296	20,360,451	1,008,845	4.72
	공사	15	13,595,613	13,100,194	495,419	3.64
	용역	7	6,535,815	6,094,624	441,191	6.75
	물품	9	1,237,868	1,165,633	72,235	5.84
10월	계	44	47,194,420	43,362,325	3,832,095	8.12
	공사	13	14,787,075	13,878,417	908,658	6.14
	용역	17	29,569,464	26,705,325	2,864,139	9.69
	물품	14	2,837,881	2,778,583	59,298	2.09
11월	계	46	388,818,544	372,396,353	16,422,191	4.22
	공사	21	372,790,056	357,503,780	15,286,276	4.10
	용역	12	14,824,752	13,721,381	1,103,371	7.44
	물품	13	1,203,736	1,171,192	32,544	2.70
12월	계	41	52,064,004	50,206,164	1,857,840	3.57
	공사	11	32,678,745	31,360,305	1,318,440	4.03
	용역	17	18,622,197	18,091,838	530,359	2.85
	물품	13	763,062	754,021	9,041	1.18

■ 2011년도

구분	분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계	837	648,552,463	618,909,255	29,643,208	4.57
	공사	290	430,226,188	406,954,431	23,271,757	5.41
	용역	214	165,849,524	161,573,692	4,275,832	2.58
	물품	333	52,476,751	50,381,132	2,095,619	3.99
1월	계	76	62,725,186	60,426,369	2,298,817	3.66
	공사	19	41,027,740	39,420,531	1,607,209	3.92
	용역	31	18,686,502	18,151,771	534,731	2.86
	물품	26	3,010,944	2,854,067	156,877	5.21

2월	계	96	94,744,916	91,908,965	2,835,951	2.99
	공 사	27	46,178,281	43,828,355	2,349,926	5.09
	용 역	36	41,026,699	40,781,131	245,568	0.60
	물 품	33	7,539,936	7,299,479	240,457	3.19
3월	계	110	56,282,113	53,576,068	2,706,045	4.81
	공 사	47	40,251,709	37,949,341	2,302,368	5.72
	용 역	21	8,579,457	8,395,106	184,351	2.15
	물 품	42	7,450,947	7,231,621	219,326	2.94
4월	계	101	85,182,157	81,577,491	3,604,666	4.23
	공 사	38	61,472,542	58,970,960	2,501,582	4.07
	용 역	24	12,398,365	11,783,332	615,033	4.96
	물 품	39	11,311,250	10,823,199	488,051	4.31
5월	계	70	70,581,319	67,776,049	2,805,270	3.97
	공 사	25	59,765,957	57,246,626	2,519,331	4.22
	용 역	18	7,611,682	7,476,936	134,746	1.77
	물 품	27	3,203,680	3,052,487	151,193	4.72
6월	계	51	51,673,587	47,715,644	3,957,943	7.66
	공 사	27	41,391,919	37,848,395	3,543,524	8.56
	용 역	10	8,784,291	8,418,864	365,427	4.16
	물 품	14	1,497,377	1,448,385	48,992	3.27
7월	계	40	17,132,260	16,481,677	650,583	3.80
	공 사	14	12,476,153	11,973,185	502,968	4.03
	용 역	9	2,479,303	2,421,298	58,005	2.34
	물 품	17	2,176,804	2,087,194	89,610	4.12
8월	계	50	28,792,313	27,683,415	1,108,898	3.85
	공 사	21	12,914,706	12,216,349	698,357	5.41
	용 역	13	13,757,123	13,434,540	322,583	2.34
	물 품	16	2,120,484	2,032,526	87,958	4.15
9월	계	30	14,101,691	13,577,731	523,960	3.72
	공 사	5	4,377,569	4,218,677	158,892	3.63
	용 역	8	7,335,760	7,049,187	286,573	3.91
	물 품	17	2,388,362	2,309,867	78,495	3.29
10월	계	49	23,460,577	22,239,669	1,220,908	5.20
	공 사	15	15,962,413	15,004,061	958,352	6.00
	용 역	8	4,716,604	4,558,402	158,202	3.35
	물 품	26	2,781,560	2,677,206	104,354	3.75
11월	계	49	41,159,826	38,924,715	2,235,111	5.43
	공 사	17	31,945,667	30,055,461	1,890,206	5.92
	용 역	5	5,863,937	5,666,950	196,987	3.36

	물 품	27	3,350,222	3,202,304	147,918	4.42
12월	계	115	102,716,518	97,021,462	5,695,056	5.54
	공 사	35	62,461,532	58,222,490	4,239,042	6.79
	용 역	31	34,609,801	33,436,175	1,173,626	3.39
	물 품	49	5,645,185	5,362,797	282,388	5.00

2012년도

구분	분 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계	941	831,685,882	796,634,273	35,051,609	4.21
	공 사	305	586,066,296	559,497,646	26,568,650	4.53
	용 역	203	139,962,867	136,605,656	3,357,211	2.40
	물 품	433	105,656,719	100,530,971	5,125,748	4.85
1월	계	87	66,635,307	63,615,150	3,020,157	4.53
	공 사	21	48,701,826	46,349,626	2,352,200	4.83
	용 역	31	13,196,760	12,837,145	359,615	2.73
	물 품	35	4,736,721	4,428,379	308,342	6.51
2월	계	97	97,581,541	93,608,005	3,973,536	4.07
	공 사	27	41,658,500	39,070,462	2,588,038	6.21
	용 역	25	45,613,654	44,635,338	978,316	2.14
	물 품	45	10,309,387	9,902,205	407,182	3.95
3월	계	220	113,170,951	108,986,075	4,184,876	3.70
	공 사	69	78,965,637	75,693,171	3,272,466	4.14
	용 역	46	20,748,187	20,396,476	351,711	1.70
	물 품	105	13,457,127	12,896,428	560,699	4.17
4월	계	107	69,805,415	66,691,270	3,114,145	4.46
	공 사	29	32,676,142	31,171,890	1,504,252	4.60
	용 역	12	11,582,605	11,136,878	445,727	3.85
	물 품	66	25,546,668	24,382,502	1,164,166	4.56
5월	계	80	79,849,701	75,478,778	4,370,923	5.47
	공 사	38	68,841,991	64,655,393	4,186,598	6.08
	용 역	9	3,543,314	3,505,609	37,705	1.06
	물 품	33	7,464,396	7,317,776	146,620	1.96

6월	계	57	38,688,354	36,725,207	1,963,147	5.07
	공 사	27	31,986,931	30,402,428	1,584,503	4.95
	용 역	8	4,082,886	3,824,766	258,120	6.32
	물 품	22	2,618,537	2,498,013	120,524	4.60
7월	계	29	15,611,970	14,698,509	913,461	5.85
	공 사	10	12,090,772	11,332,977	757,795	6.27
	용 역	3	933,820	900,210	33,610	3.60
	물 품	16	2,587,378	2,465,322	122,056	4.72
8월	계	50	31,643,053	30,041,995	1,601,058	5.06
	공 사	15	22,078,826	21,110,150	968,676	4.39
	용 역	12	3,868,612	3,620,935	247,677	6.40
	물 품	23	5,695,615	5,310,910	384,705	6.75
9월	계	44	67,800,832	63,869,122	3,931,710	5.80
	공 사	15	45,063,851	42,075,249	2,988,602	6.63
	용 역	8	11,845,463	11,606,781	238,682	2.01
	물 품	21	10,891,518	10,187,092	704,426	6.47
10월	계	46	43,377,573	40,472,382	2,905,191	6.70
	공 사	16	36,823,272	34,293,492	2,529,780	6.87
	용 역	5	1,544,263	1,539,296	4,967	0.32
	물 품	25	5,010,038	4,639,594	370,444	7.39
11월	계	68	123,999,706	121,907,080	2,092,626	1.69
	공 사	19	110,061,622	108,400,203	1,661,419	1.51
	용 역	24	9,227,639	9,053,487	174,152	1.89
	물 품	25	4,710,445	4,453,390	257,055	5.46
12월	계	56	83,521,479	80,540,700	2,980,779	3.57
	공 사	19	57,116,926	54,942,605	2,174,321	3.81
	용 역	20	13,775,664	13,548,735	226,929	1.65
	물 품	17	12,628,889	12,049,360	579,529	4.59

■ 2013년도

구분	분 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계	1,012	953,116,024	923,749,015	29,367,009	3.08

	공사	337	621,759,196	600,224,574	21,534,622	3.46
	용역	212	194,558,393	191,801,592	2,756,801	1.42
	물품	463	136,798,435	131,722,849	5,075,586	3.71
1월	계	113	114,164,744	109,955,439	4,209,305	3.69
	공사	30	88,678,117	85,482,038	3,196,079	3.60
	용역	29	10,803,497	10,595,900	207,597	1.92
	물품	54	14,683,130	13,877,501	805,629	5.49
2월	계	112	120,355,885	117,575,026	2,780,859	2.31
	공사	28	62,577,866	60,524,076	2,053,790	3.28
	용역	25	47,324,177	46,974,215	349,962	0.74
	물품	59	10,453,842	10,076,735	377,107	3.61
3월	계	148	94,302,205	91,867,422	2,434,783	2.58
	공사	39	44,426,878	42,986,148	1,440,730	3.24
	용역	29	36,031,552	35,640,360	391,192	1.09
	물품	80	13,843,775	13,240,914	602,861	4.35
4월	계	111	80,743,952	78,345,803	2,398,149	2.97
	공사	36	59,800,749	57,957,481	1,843,268	3.08
	용역	27	9,526,604	9,411,888	114,716	1.20
	물품	48	11,416,599	10,976,434	440,165	3.86
5월	계	100	108,551,773	104,368,180	4,183,593	3.85
	공사	47	89,364,317	86,246,332	3,117,985	3.49
	용역	13	5,175,300	4,856,552	318,748	6.16
	물품	40	14,012,156	13,265,296	746,860	5.33
6월	계	68	40,351,120	39,150,542	1,200,578	2.98
	공사	35	25,104,650	24,168,254	936,396	3.73
	용역	7	10,189,393	10,161,046	28,347	0.28
	물품	26	5,057,077	4,821,242	235,835	4.66
7월	계	45	71,223,488	68,724,635	2,498,853	3.51
	공사	15	46,807,790	45,103,832	1,703,958	3.64
	용역	13	5,219,672	4,985,069	234,603	4.49
	물품	17	19,196,026	18,635,734	560,292	2.92
8월	계	49	28,790,350	27,688,662	1,101,688	3.83
	공사	16	17,195,182	16,331,767	863,415	5.02

	용역	11	8,736,936	8,629,066	107,870	1.23
	물품	22	2,858,232	2,727,829	130,403	4.56
9월	계	56	52,572,080	51,002,478	1,569,602	2.99
	공사	21	41,183,164	39,909,204	1,273,960	3.09
	용역	12	6,702,347	6,614,132	88,215	1.32
	물품	23	4,686,569	4,479,142	207,427	4.43
10월	계	56	44,209,760	42,543,439	1,666,321	3.77
	공사	24	32,798,641	31,429,410	1,369,231	4.17
	용역	11	9,562,073	9,328,942	233,131	2.44
	물품	21	1,849,046	1,785,087	63,959	3.46
11월	계	62	112,091,479	108,592,881	3,498,598	3.12
	공사	20	75,647,174	73,268,838	2,378,336	3.14
	용역	13	20,661,755	20,152,461	509,294	2.46
	물품	29	15,782,550	15,171,582	610,968	3.87
12월	계	92	85,759,188	83,934,508	1,824,680	2.13
	공사	26	38,174,668	36,817,194	1,357,474	3.56
	용역	22	24,625,087	24,451,961	173,126	0.70
	물품	44	22,959,433	22,665,353	294,080	1.28

7 2014년도

구분	분야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계	1052	955,135,339	922,420,704	32,714,635	3.43
	공사	338	649,373,020	627,333,531	22,039,489	3.39
	용역	241	178,031,175	172,711,316	5,319,859	2.99
	물품	473	127,731,144	122,375,857	5,355,287	4.19
1월	계	122	146,933,694	144,801,460	2,132,234	1.45
	공사	24	123,040,367	121,558,511	1,481,856	1.20
	용역	45	15,465,581	15,269,536	196,045	1.27
	물품	53	8,427,746	7,973,413	454,333	5.39
2월	계	129	92,704,163	89,917,359	2,786,804	3.01
	공사	19	25,379,495	24,544,675	834,820	3.29

	용역	31	42,809,677	41,720,635	1,089,042	2.54
	물품	79	24,514,991	23,652,049	862,942	3.52
3월	계	174	92,043,816	88,586,158	3,457,658	3.76
	공사	53	45,930,246	44,052,204	1,878,042	4.09
	용역	40	29,467,013	28,611,483	855,530	2.90
	물품	81	16,646,557	15,922,471	724,086	4.35
4월	계	123	96,132,425	92,234,476	3,897,949	4.05
	공사	41	51,328,704	49,586,703	1,742,001	3.39
	용역	28	24,121,341	22,980,404	1,140,937	4.73
	물품	54	20,682,380	19,667,369	1,015,011	4.91
5월	계	102	96,417,993	91,779,042	4,638,951	4.81
	공사	48	72,229,541	68,547,532	3,682,009	5.10
	용역	15	10,380,208	10,002,436	377,772	3.64
	물품	39	13,808,244	13,229,074	579,170	4.19
6월	계	68	51,097,515	48,245,348	2,852,167	5.58
	공사	35	42,195,352	39,918,600	2,276,752	5.40
	용역	5	2,151,663	1,814,944	336,719	15.65
	물품	28	6,750,500	6,511,804	238,696	3.54
7월	계	35	31,440,891	30,033,437	1,407,454	4.48
	공사	16	29,025,774	27,680,196	1,345,578	4.64
	용역	3	767,131	766,961	170	0.02
	물품	16	1,647,986	1,586,280	61,706	3.74
8월	계	33	20,331,108	19,743,276	587,832	2.89
	공사	9	5,052,542	4,913,358	139,184	2.75
	용역	9	13,181,853	12,840,103	341,750	2.59
	물품	15	2,096,713	1,989,815	106,898	5.10
9월	계	53	46,270,970	45,060,395	1,210,575	2.62
	공사	19	37,813,531	36,813,819	999,712	2.64
	용역	9	5,007,074	4,988,071	19,003	0.38
	물품	25	3,450,365	3,258,505	191,860	5.56
10월	계	67	47,286,304	45,185,376	2,100,928	4.44
	공사	20	36,184,204	34,572,940	1,611,264	4.45
	용역	14	6,420,949	6,141,979	278,970	4.34

	물 품	33	4,681,151	4,470,457	210,694	4.50
11월	계	75	64,217,648	60,958,514	3,259,134	5.08
	공 사	26	38,114,136	35,846,432	2,267,704	5.95
	용 역	17	16,227,763	15,655,648	572,115	3.53
	물 품	32	9,875,749	9,456,434	419,315	4.25
12월	계	71	170,258,812	165,875,863	4,382,949	2.57
	공 사	28	143,079,128	139,298,561	3,780,567	2.64
	용 역	25	12,030,922	11,919,116	111,806	0.93
	물 품	18	15,148,762	14,658,186	490,576	3.24



<붙임4>

전국 시·도 계약심사부서 설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부서 (실·국)	과 명	과	담당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별 정· 기능	비고
계			16	39	248	17	37	98	77	6	11	
서울	재무국	계약심사과	1	6	42	1	5	23	12		1	
부산	감사관실	계약감사계	1	2	15	1	1	8	4			1개 계
대구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1	2	11	1	2	3	5			
인천	자치행정국	회계계약심사과	1	1	5	1	1	2	1		1	
	건설교통국	건설심사과	1	1	12	1	1	6	3	1		공사, 기술용역 심사
광주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1	4	21	1	4	7	4	1	4	과내에 청사관리 팀(9명)
대전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1	1	11	1	1	4	5			
울산	행정지원국	계약심사과	1	3	13	1	3	4	4		1	
경기	감사관실	계약심사담당관	1	6	32	1	6	10	13	1	1	
강원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1	2	12	1	2	3	4	2		
충북	행정국	회계과	1	1	7	1	1	3	2			
충남	자치행정국	새마을회계과	1	1	8	1	1	3	2		1	
전북	기획관리실	예산과	1	1	10	1	1	3	4		1	
전남	행정지원국	세무회계과	1	1	10	1	1	4	4			
경북	행정지원국	회계계약심사과	1	2	9	1	2	3	3			
경남	행정지원국	계약기술심사과	1	4	23	1	4	10	6	1	1	
제주	자치행정국	총무과	1	1	7	1	1	3	2			

※ 감사관실 소속 시·도 : 5개 지방자치단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 기준 : 2014.12.31. 현재

<붙임5>

전국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시행 현황(1)

No.	지자체	구분	개수	실시 중 (%)		실시 예정	계획 미정
	합계	계	244	229	(92.2%)	1	14
		본청	16	16	(100.0%)	-	-
		시군구	228	213	(91.7%)	1	14
1	서울	본청	1	1	(100.0%)	-	-
		시군구	25	23	(92.0%)	1	1
2	부산	본청	1	1	(100.0%)	-	-
		시군구	16	16	(75.0%)	-	-
3	대구	본청	1	1	(100.0%)	-	-
		시군구	8	8	(100.0%)	-	-
4	인천	본청	1	1	(100.0%)	-	-
		시군구	10	10	(100.0%)	-	-
5	광주	본청	1	1	(100.0%)	-	-
		시군구	5	5	(100.0%)	-	-
6	대전	본청	1	1	(100.0%)	-	-
		시군구	5	5	(100.0%)	-	-
7	울산	본청	1	1	(100.0%)	-	-
		시군구	5	5	(100.0%)	-	-
8	경기	본청	1	1	(100.0%)	-	-
		시군구	31	31	(100.0%)	-	-
9	강원	본청	1	1	(100.0%)	-	-
		시군구	18	18	(100.0%)	-	-
10	충북	본청	1	1	(100.0%)	-	-
		시군구	12	8	(66.7%)	-	4
11	충남	본청	1	1	(100.0%)	-	-
		시군구	16	16	(100.0%)	-	-
12	전북	본청	1	1	(100.0%)	-	-
		시군구	14	14	(100.0%)	-	-
13	전남	본청	1	1	(100.0%)	-	-
		시군구	22	22	(100.0%)	-	-
14	경북	본청	1	1	(100.0%)	-	-
		시군구	23	15	(65.2%)	-	8
15	경남	본청	1	1	(100.0%)	-	-
		시군구	18	17	(94.4%)	-	1
16	제주	본청	1	1	(100.0%)	-	-

※ 유선조사 : 2014.01.31.

전국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시행 현황(2)

구분	시행 중	2014년 시행 예정		미정	
서울	용산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차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중구,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 강동구, 광진구	24	0	강서	1
25					
부산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6	0		0
16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8	0		0
8					
인천	강화군, 중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동구, 남동구	10	0		0
10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	0		0
5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5	0		0
5					
울산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남구	5	0		0
5					
세종			0		0
0					
경기	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파주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하남시, 동두천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수원시	31	0		0
31					

강원	원주시, 강릉시, 정선군, 인제군, 춘천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18		0		0
18						
충북	충주시, 옥천군, 진천군,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증평군, 음성군	8		0	청주시,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4
12						
충남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연기군, 부여군, 예산군, 보령시	16		0		0
16						
전북	익산시, 정읍시, 임실군, 부안군,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14		0		0
14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곡성군, 화순군, 영암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장성군	22		0		0
22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군위군, 청송군, 봉화군, 안동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영주시, 상주시, 고령군	15		0	구미시,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8
23						
경남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창원군, 산청군, 거창군,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사천시, 의령군	17		0	창원시 (계약심사 폐지 후 일상감사로 계약심사 같음)	1
18						
제주		1				
1						
229	229	215		0		14

※ 기준 : 2014.01.31.현재

<붙임6>

전국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 현황 (2008 ~ 2012)

1. 서울특별시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26,600	26,933,729	24,646,125	2,287,604	8.5%
	공 사	9,118	22,748,866	20,731,259	2,017,607	8.9%
	용 역	3,660	2,863,190	2,681,214	181,976	6.4%
	구 매	13,745	1,236,402	1,153,712	82,690	6.7%
	민간위탁	77	85,271	79,940	5,331	6.3%
2012	계	2,958	2,571,849	2,375,975	195,874	7.6%
	공 사	968	1,784,035	1,637,289	146,746	8.2%
	용 역	504	315,248	297,760	17,489	5.5%
	구 매	1,409	387,295	360,987	26,308	6.8%
	민간위탁	77	85,271	79,940	5,331	6.3%
2011	계	2,671	4,501,861	4,216,196	285,665	6.3%
	공 사	843	3,971,551	3,715,905	255,646	6.4%
	용 역	473	298,270	282,675	15,595	5.2%
	구 매	1,355	232,040	217,617	14,424	6.2%
2010	계	2,945	2,629,831	2,372,023	257,808	9.8%
	공 사	1,021	2,216,437	1,988,643	227,795	10.3%
	용 역	460	264,307	243,663	20,643	7.8%
	구 매	1,464	149,087	139,717	9,370	6.3%
2009	계	3,711	2,929,558	2,600,132	329,426	11.2%
	공 사	1,370	2,397,651	2,109,518	288,133	12.0%
	용 역	406	355,610	324,460	31,150	8.8%
	구 매	1,935	176,297	166,154	10,143	5.8%
2008	계	3,447	4,105,086	3,739,932	365,154	8.9%
	공 사	1,363	3,652,689	3,324,826	327,862	9.0%
	용 역	400	335,381	306,446	28,935	8.6%
	구 매	1,684	117,016	108,660	8,356	7.1%
2007	계	2,646	2,732,248	2,510,925	221,323	8.1%
	공 사	1,099	2,417,705	2,210,960	206,745	8.6%
	용 역	344	277,584	266,257	11,327	4.1%
	구 매	1,203	36,959	33,708	3,250	8.8%
2006	계	2,337	2,514,919	2,329,961	184,958	7.4%
	공 사	676	1,981,035	1,813,562	167,473	8.5%
	용 역	348	495,328	480,662	14,666	3.0%

	구 매	1,313	38,556	35,737	2,819	7.3%
2005	계	2,192	1,379,612	1,244,081	135,531	9.8%
	공 사	637	1,162,411	1,041,066	121,345	10.4%
	용 역	218	181,100	169,695	11,404	6.3%
	구 매	1,337	36,101	33,320	2,782	7.7%
2004	계	1,673	2,915,629	2,669,359	246,270	8.4%
	공 사	555	2,667,560	2,441,634	225,926	8.5%
	용 역	176	212,191	194,580	17,610	8.3%
	구 매	942	35,879	33,145	2,733	7.6%
2003	계	2,020	653,135	587,539	65,597	10.0%
	공 사	586	497,792	447,856	49,936	10.0%
	용 역	331	128,171	115,016	13,156	10.3%
	구 매	1,103	27,172	24,667	2,505	9.2%

2. 부산광역시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3,568	4,518,476	4,319,280	199,196	4.4%
	공 사	1,272	3,405,742	3,247,669	158,072	4.6%
	용 역	971	805,980	776,840	29,139	3.6%
	구 매	1,325	306,755	294,770	11,984	3.9%
2012	계	941	831,686	796,634	35,052	4.2%
	공 사	305	586,066	559,498	26,569	4.5%
	용 역	203	139,963	136,606	3,357	2.4%
	구 매	433	105,657	100,531	5,126	4.9%
2011	계	837	648,552	618,909	29,643	4.6%
	공 사	290	430,226	406,954	23,272	5.4%
	용 역	214	165,850	161,574	4,276	2.6%
	구 매	333	52,477	50,381	2,096	4.0%
2010	계	779	1,363,778	1,305,052	58,726	4.3%
	공 사	307	1,105,482	1,060,200	45,283	4.1%
	용 역	237	225,587	213,060	12,527	5.6%
	구 매	235	32,708	31,792	917	2.8%
2009	계	692	868,263	833,071	35,192	4.1%
	공 사	281	656,475	628,205	28,270	4.3%
	용 역	222	180,687	174,556	6,131	3.4%
	구 매	189	31,101	30,310	790	2.5%
2008	계	319	806,197	765,613	40,583	5.0%
	공 사	89	627,492	592,812	34,679	5.5%

	용역	95	93,893	91,045	2,848	3.0%
	구매	135	84,812	81,756	3,056	3.6%

3. 대구광역시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2,170	1,674,119	1,552,444	121,675	7.3%
	공사	914	1,146,328	1,048,504	97,824	8.5%
	용역	566	453,019	431,239	21,780	4.8%
	구매	690	74,772	72,701	2,071	2.8%
2012	계	508	283,768	266,280	17,488	6.2%
	공사	190	183,848	167,975	15,873	8.6%
	용역	123	73,041	72,076	965	1.3%
	구매	195	26,879	26,229	650	2.4%
2011	계	598	419,374	385,873	33,501	8.0%
	공사	267	318,555	289,723	28,832	9.1%
	용역	153	88,907	84,750	4,157	4.7%
	구매	178	11,912	11,400	512	4.3%
2010	계	556	462,685	431,448	31,237	6.8%
	공사	219	312,614	288,396	24,218	7.7%
	용역	163	136,831	130,280	6,551	4.8%
	구매	174	13,240	12,772	468	3.5%
2009	계	455	466,576	429,790	36,786	7.9%
	공사	222	315,503	287,799	27,704	8.8%
	용역	103	128,969	120,300	8,669	6.7%
	구매	130	22,104	21,691	413	1.9%
2008	계	53	41,716	39,053	2,663	6.4%
	공사	16	15,808	14,611	1,197	7.6%
	용역	24	25,271	23,833	1,438	5.7%
	구매	13	637	609	28	4.4%

4. 인천광역시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3,145	2,285,300	2,161,900	123,400	5.4%
	공사	927	1,346,900	1,259,200	87,700	6.5%

	용역	954	769,400	742,100	27,300	3.5%
	구매	1,264	169,000	160,600	8,400	5.0%
2012	계	809	423,600	403,800	19,800	4.7%
	공사	183	212,700	199,700	13,000	6.1%
	용역	230	157,900	153,800	4,100	2.6%
	구매	396	53,000	50,300	2,700	5.1%
2011	계	858	710,300	669,100	41,200	5.8%
	공사	255	462,500	429,900	32,600	7.0%
	용역	275	208,300	201,600	6,700	3.2%
	구매	328	39,500	37,600	1,900	4.8%
2010	계	842	621,000	584,500	36,500	5.9%
	공사	287	382,000	356,800	25,200	6.6%
	용역	274	197,700	188,400	9,300	4.7%
	구매	281	41,300	39,300	2,000	4.8%
2009	계	636	530,400	504,500	25,900	4.9%
	공사	202	289,700	272,800	16,900	5.8%
	용역	175	205,500	198,300	7,200	3.5%
	구매	259	35,200	33,400	1,800	5.1%

5. 광주광역시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1,726	1,224,479	1,129,086	95,393	7.8%
	공사	1,329	1,096,513	1,008,541	87,972	8.0%
	용역	186	97,821	92,666	5,155	5.3%
	구매	211	30,145	27,879	2,266	7.5%
2012	계	344	280,726	262,161	18,565	6.6%
	공사	276	251,975	234,998	16,977	6.7%
	용역	37	24,590	23,170	1,420	5.8%
	구매	31	4,161	3,993	168	4.0%
2011	계	303	164,154	150,887	13,267	8.1%
	공사	231	145,586	133,666	11,920	8.2%
	용역	34	12,246	11,390	856	7.0%
	구매	38	6,322	5,831	491	7.8%
2010	계	410	304,659	278,700	25,959	8.5%
	공사	318	284,951	260,409	24,542	8.6%
	용역	26	9,090	8,604	486	5.3%
	구매	66	10,618	9,687	931	8.8%
2009	계	556	378,573	352,406	26,167	6.9%

	공 사	418	323,708	300,250	23,458	7.2%
	용 역	78	47,902	45,752	2,150	4.5%
	구 매	60	6,963	6,404	559	8.0%
2008	계	113	6,367	84,932	11,435	11.9%
	공 사	86	90,293	79,218	11,075	12.3%
	용 역	11	3,993	3,750	243	6.1%
	구 매	16	2,081	1,964	117	5.6%

6. 대전광역시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3,158	1,608,300	1,487,400	120,900	7.5%
	공 사	1,470	1,211,500	1,110,500	101,000	8.3%
	용 역	673	262,400	249,000	13,400	5.1%
	구 매	1,015	134,400	127,900	6,500	4.8%
2012	계	1,015	470,100	438,600	31,500	6.7%
	공 사	465	353,100	327,400	25,700	7.3%
	용 역	245	85,000	80,500	4,500	5.3%
	구 매	305	32,000	30,700	1,300	4.1%
2011	계	747	277,000	256,600	20,400	7.4%
	공 사	311	216,800	200,400	16,400	7.6%
	용 역	184	38,500	35,700	2,800	7.3%
	구 매	252	21,700	20,500	1,200	5.5%
2010	계	593	303,700	283,400	20,300	6.7%
	공 사	236	212,800	195,500	17,300	8.1%
	용 역	95	53,100	51,400	1,700	3.2%
	구 매	262	37,800	36,500	1,300	3.4%
2009	계	631	450,200	413,000	37,200	8.3%
	공 사	367	346,800	314,800	32,000	9.2%
	용 역	91	62,800	60,000	2,800	4.5%
	구 매	173	40,600	38,200	2,400	5.9%
2008	계	172	107,300	95,800	11,500	10.7%
	공 사	91	82,000	72,400	9,600	11.7%
	용 역	58	23,000	21,400	1,600	7.0%
	구 매	23	2,300	2,000	300	13.0%

7. 울산광역시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3,851	1,834,089	1,704,699	129,390	7.1%
	공 사	1,179	1,583,631	1,472,455	111,176	7.0%
	용 역	1,250	217,153	201,258	15,895	7.3%
	구 매	1,422	33,305	30,986	2,319	7.0%
2012	계	718	779,397	733,747	45,650	5.9%
	공 사	218	707,868	665,458	42,410	6.0%
	용 역	215	61,039	58,177	2,862	4.7%
	구 매	285	10,490	10,112	378	3.6%
2011	계	885	272,418	249,528	22,890	8.4%
	공 사	259	233,534	213,694	19,840	8.5%
	용 역	288	33,439	30,692	2,747	8.2%
	구 매	338	5,445	5,142	303	5.6%
2010	계	906	282,388	261,446	20,942	7.4%
	공 사	265	238,464	220,988	17,476	7.3%
	용 역	300	38,959	35,921	3,038	7.8%
	구 매	341	4,965	4,537	428	8.6%
2009	계	1,022	344,573	316,814	27,759	8.1%
	공 사	327	292,040	269,369	22,671	7.8%
	용 역	333	45,915	41,547	4,368	9.5%
	구 매	362	6,618	5,898	720	10.9%
2008	계	320	155,313	143,164	12,149	7.8%
	공 사	110	111,725	102,946	8,779	7.9%
	용 역	114	37,801	34,921	2,880	7.6%
	구 매	96	5,787	5,297	490	8.5%

8. 경기도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5,888	5,763,500	5,200,500	563,000	9.8%
	공 사	2,960	4,724,100	4,237,300	486,800	10.3%
	용 역	1,019	721,000	668,200	52,800	7.3%
	구 매	1,909	318,400	295,000	23,400	7.3%
2012	계	1,869	1,547,400	1,382,700	164,700	10.6%
	공 사	967	1,210,500	1,068,900	141,600	11.7%
	용 역	273	217,700	203,700	14,000	6.4%
	구 매	629	119,200	110,100	9,100	7.6%

2011	계	2,149	1,915,300	1,738,000	177,300	9.3%
	공 사	1,126	1,545,000	1,393,700	151,300	9.8%
	용 역	391	263,200	244,800	18,400	7.0%
	구 매	632	107,100	99,500	7,600	7.1%
2010	계	1,870	2,300,800	2,079,800	221,000	9.6%
	공 사	867	1,968,600	1,774,700	193,900	9.8%
	용 역	355	240,100	219,700	20,400	8.5%
	구 매	648	92,100	85,400	6,700	7.3%

9. 강원도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4,691	4,037,794	3,747,326	290,468	7.2%
	공 사	3,046	3,549,820	3,298,845	250,975	7.1%
	용 역	1,191	425,241	389,077	36,164	8.5%
	구 매	454	62,733	59,404	3,329	5.3%
2012	계	1,091	935,823	883,066	52,757	5.6%
	공 사	614	771,922	726,270	45,652	5.9%
	용 역	296	145,855	139,216	6,639	4.6%
	구 매	181	18,046	17,580	466	2.6%
2011	계	1,435	1,058,331	984,335	73,996	7.0%
	공 사	1,036	963,317	897,300	66,017	6.9%
	용 역	322	81,848	74,855	6,993	8.5%
	구 매	77	13,166	12,180	986	7.5%
2010	계	1,217	1,117,930	1,037,815	80,115	7.2%
	공 사	826	996,854	929,598	67,256	6.7%
	용 역	311	108,541	96,316	12,225	11.3%
	구 매	80	12,535	11,901	634	5.1%
2009	계	875	784,899	719,883	65,016	8.3%
	공 사	539	694,448	639,154	55,294	8.0%
	용 역	234	74,657	65,985	8,672	11.6%
	구 매	102	15,794	14,744	1,050	6.6%
2008	계	73	140,811	122,227	18,584	13.2%
	공 사	31	123,279	106,523	16,756	13.6%
	용 역	28	14,340	12,705	1,635	11.4%
	구 매	14	3,192	2,999	193	6.0%

10. 충청북도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1,918	1,973,079	1,863,578	109,501	5.5%
	공 사	890	1,668,224	1,575,694	92,530	5.5%
	용 역	261	144,053	134,957	9,096	6.3%
	구 매	767	160,802	152,927	7,875	4.9%
2012	계	483	612,283	579,924	32,359	5.3%
	공 사	297	550,485	520,952	29,533	5.4%
	용 역	68	37,228	35,225	2,003	5.4%
	구 매	118	24,570	23,747	823	3.3%
2011	계	533	572,588	541,142	31,446	5.5%
	공 사					
	용 역					
	구 매					
2010	계	493	484,390	455,909	28,481	5.9%
	공 사					
	용 역					
	구 매					
2009	계	362	290,124	273,802	16,322	5.6%
	공 사					
	용 역					
	구 매					
2008	계	47	13,694	12,801	893	6.5%
	공 사					
	용 역					
	구 매					

11. 충청남도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2,003	2,481,550	2,293,723	187,827	7.6%
	공 사	829	2,082,747	1,925,772	156,975	7.5%
	용 역	606	344,510	316,034	28,476	8.3%
	구 매	568	54,293	51,917	2,376	4.4%
2012	계	654	870,055	824,472	45,583	5.2%
	공 사	292	729,868	692,936	36,932	5.1%
	용 역	224	123,920	115,719	8,201	6.6%
	구 매	138	16,267	15,817	450	2.8%
2011	계	732	890,942	812,204	78,738	8.8%

	공 사	365	783,449	714,125	69,324	8.8%
	용 역	192	91,939	83,394	8,545	9.3%
	구 매	175	15,554	14,685	869	5.6%
2010	계	395	346,934	317,896	29,038	8.4%
	공 사	122	268,879	246,057	22,822	8.5%
	용 역	115	67,096	61,348	5,748	8.6%
	구 매	158	10,959	10,491	468	4.3%
2009	계	191	318,238	289,649	28,589	9.0%
	공 사	39	254,285	231,296	22,989	9.0%
	용 역	67	53,853	48,739	5,114	9.5%
	구 매	85	10,100	9,614	486	4.8%
2008	계	31	55,381	49,502	5,879	10.6%
	공 사	11	46,266	41,358	4,908	10.6%
	용 역	8	7,702	6,834	868	11.3%
	구 매	12	1,413	1,310	103	7.3%

12. 전라북도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2,293	1,986,723	1,846,554	140,169	7.1%
	공 사	1,329	1,683,824	1,563,185	120,639	7.2%
	용 역	526	243,039	226,509	16,529	6.8%
	구 매	438	59,860	56,860	3,000	5.0%
2012	계	820	842,095	796,998	45,097	5.4%
	공 사	457	737,204	696,541	40,663	5.5%
	용 역	190	82,419	78,368	4,051	4.9%
	구 매	173	22,473	22,089	384	1.7%
2011	계	816	740,329	680,518	59,811	8.1%
	공 사	506	610,839	560,084	50,755	8.3%
	용 역	186	112,363	104,093	8,271	7.4%
	구 매	124	17,127	16,342	785	4.6%
2010	계	385	247,747	227,448	20,298	8.2%
	공 사	265	215,982	199,173	16,809	7.8%
	용 역	69	21,984	19,483	2,501	11.4%
	구 매	51	9,780	8,792	988	10.1%
2009	계	240	141,643	129,430	12,213	8.6%
	공 사	96	114,696	104,130	10,566	9.2%
	용 역	64	18,530	17,572	959	5.2%
	구 매	80	8,416	7,728	688	8.2%

2008	계	32	14,909	12,160	2,749	18.4%
	공 사	5	5,103	3,257	1,846	36.2%
	용 역	17	7,742	6,994	748	9.7%
	구 매	10	2,064	1,909	155	7.5%

13. 전라남도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3,054	5,044,564	4,647,560	397,004	7.9%
	공 사	1,967	4,426,359	4,074,566	351,793	7.9%
	용 역	629	554,169	513,912	40,257	7.3%
	구 매	458	64,036	59,082	4,954	7.7%
2012	계	485	810,951	743,791	67,160	8.3%
	공 사	268	719,527	659,392	60,135	8.4%
	용 역	110	78,678	72,371	6,307	8.0%
	구 매	107	12,746	12,028	718	5.6%
2011	계	958	1,445,490	1,334,175	111,315	7.7%
	공 사	593	1,259,444	1,163,019	96,425	7.7%
	용 역	193	160,115	147,096	13,019	8.1%
	구 매	172	25,931	24,060	1,871	7.2%
2010	계	802	1,232,986	1,145,220	87,766	7.1%
	공 사	547	1,049,875	973,555	76,320	7.3%
	용 역	171	172,526	161,676	10,850	6.3%
	구 매	84	10,585	9,989	596	5.6%
2009	계	603	1,192,892	1,091,595	101,297	8.5%
	공 사	419	1,075,579	983,122	92,457	8.6%
	용 역	112	105,060	97,513	7,547	7.2%
	구 매	72	12,253	10,960	1,293	10.6%
2008	계	206	362,245	332,779	29,466	8.1%
	공 사	140	321,934	295,478	26,456	8.2%
	용 역	43	37,790	35,256	2,534	6.7%
	구 매	23	2,521	2,045	476	18.9%

14. 경상북도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3,139	3,735,265	3,558,584	176,681	4.7%
	공 사	1,893	3,057,948	2,928,806	129,142	4.2%

	용역	864	640,915	596,127	44,788	7.0%
	구매	382	36,402	33,651	2,751	7.6%
2012	계	1,034	1,025,117	958,992	66,125	6.5%
	공사	612	827,968	777,207	50,761	6.1%
	용역	245	178,314	164,243	14,071	7.9%
	구매	177	18,835	17,542	1,293	6.9%
2011	계	917	946,399	911,065	35,334	3.7%
	공사	603	765,700	742,171	23,529	3.1%
	용역	231	174,510	163,323	11,187	6.4%
	구매	83	6,189	5,571	618	10.0%
2010	계	596	816,678	781,602	35,076	4.3%
	공사	329	643,529	619,826	23,703	3.7%
	용역	208	168,516	157,558	10,958	6.5%
	구매	59	4,633	4,218	415	9.0%
2009	계	526	826,172	791,566	34,606	4.2%
	공사	287	700,355	674,676	25,679	3.7%
	용역	178	119,237	110,726	8,511	7.1%
	구매	61	6,580	6,164	416	6.3%
2008	계	66	120,899	115,359	5,540	4.6%
	공사	62	120,396	114,926	5,470	4.5%
	용역	2	338	277	61	18.0%
	구매	2	165	156	9	5.5%

15. 경상남도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3,929	4,957,347	4,622,501	334,846	6.8%
	공사				300,677	6.9%
	용역				29,785	5.6%
	구매				4,384	6.2%
2012	계	1,061	1,053,674	985,852	67,822	6.4%
	공사	504	907,556	846,263	61,293	6.8%
	용역	204	119,992	114,516	5,476	4.6%
	구매	353	26,126	25,073	1,053	4.0%
2011	계	1,068	1,363,703	1,269,521	94,182	6.9%
	공사				87,795	7.2%
	용역				5,523	4.7%
	구매				864	4.8%
2010	계	879	1,250,870	1,173,114	77,756	6.2%

	공 사				68,136	6.2%
	용 역				8,955	6.5%
	구 매				665	7.2%
2009	계	628	900,346	831,819	68,527	7.6%
	공 사				59,257	7.9%
	용 역				8,299	5.9%
2008	구 매				971	7.5%
	계	293	388,754	362,195	26,559	6.8%
	공 사				24,196	6.0%
	용 역				1,532	5.9%
	구 매				831	12.3%

16. 제주도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합계	계	1,687	1,821,286	1,699,271	122,015	6.7%
	공 사	973	1,594,204	1,481,901	112,303	7.0%
	용 역	182	156,268	148,157	8,111	5.2%
	구 매	532	70,814	69,213	1,601	2.3%
2012	계	392	407,281	376,641	30,640	7.5%
	공 사	256	359,189	330,310	28,879	8.0%
	용 역	38	36,333	34,778	1,555	4.3%
	구 매	98	11,759	11,553	206	1.8%
2011	계	340	430,523	399,619	30,904	7.2%
	공 사	213	386,122	357,838	28,284	7.3%
	용 역	38	31,663	29,291	2,372	7.5%
	구 매	89	12,738	12,490	248	1.9%
2010	계	345	302,936	280,141	22,795	7.5%
	공 사	189	253,778	232,789	20,989	8.3%
	용 역	42	35,669	34,085	1,584	4.4%
	구 매	114	13,489	13,267	222	1.6%
2009	계	453	508,846	482,218	26,628	5.2%
	공 사	241	440,661	417,008	23,653	5.4%
	용 역	53	48,139	45,690	2,449	5.1%
	구 매	159	20,046	19,520	526	2.6%
2008	계	157	171,700	160,652	11,048	6.4%
	공 사	74	154,454	143,956	10,498	6.8%
	용 역	11	4,464	4,313	151	3.4%
	구 매	72	12,782	12,383	399	3.1%

<붙임 7>

계약심사 반복 지적사항
 ※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2031(2013.2.7.)

분야	지적사항
토목분야 (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발표 기준에 맞게 적용 2. 신기술 적용품은 업체견적품을 지양하고 표준품셈에 유사품 있는 경우 준용사용 3. 자재단가는 거래실래가격 중 최저단가 사용(조달청단가, 물가자료·정보 등) 4. 견적서는 반드시 설계감독 확인필요 : 부풀리기 하는 사례가 많음(부가세 포함여부 확인) 5. 각종 운반거리는 행정포탈 네이버지도 이용 정확히 산정 6. 물푸기 발전기 사용지양, 한전 입시전력 수용신청 7. 재생골재 사용의무화(재배정, 시비보조사업 경우 10%이상) 8. 터파기는 가능한 기계90 + 인력 10%로 적용 9. 사토장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 조회 선정 10. 관로 다짐시 현장실정 및 실제 사용장비를 적용(핸드롤러) 11. 토공량 10만^m이상시 운반장비 24톤 덤프트럭 적용 12. 아스팔트 깨기는 품의 평균인 4.6^m/hr, 포장깨기는 상한 값인 5.9^m/hr 적용 13. 석축혈기는 굴삭기 파쇄암 상차품으로 적용 14. 콘크리트포장은 1일 절단량을 1일 600m/일(2차로 기준) 15. 항만공사 피복석, 사석 운반시 예인선 독항은 품에서 제외 16. 보도블록 포장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맞게 적용 17. 하수관거 준설(흡입식) 시 작업편성 인원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근거 적정인원 적용 18. 가설사무실, 창고는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가설물규모 결정 19. 중요구조물은 거푸집을 유로품으로 설계 방호벽, 측구 등은 무근콘크리트 타설, 철근배근은 간단으로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 흠막이(H-Pile)가시설 안전을 확인(높음 2.5 ~ 10.7) 필요 21. 강관 구멍뚫기는 기계뚫기(마그네틱 전기드릴)로 500공/1인/1일로 적용 22. 볼트조이기 및 풀기는 철골공 500개/1인/일 적용 23. 암거Box 보수공사시 작업장내 조명은 한전의 임시전용 사용 24. 판매설 터파기옆 아스콘다짐은 진동롤러 2.5톤으로 조정 25. 시내공사시 운반거리는 L=10km, 운반속도는 V=35km/hr 26. 공사시행시 교통신호 및 차량통제는 일방향, 실작업 일수로 조정 27. 페인트 칠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로울러칠로 적용 28. 하수관거 CCTV는 건설공사표준품셈 일작업량 적용 29. 도로경계석 설치의 경우 규격에 없는 경계석은 체적을 계산하여 일당 시공량 산출 30. PP마대 쌓기와 헐기는 백호우 절취품으로 산정 31. 토사 흡입준설은 장비규격에 따라 단가가 상이하므로 비교검토후 낮은 단가로 적용 32. 사면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석 쌓기는 전석 쌓기품으로 적용 33. 조립식 간이흠막이(Sk패널) 조달청제공 시공단가로 적용 34. 유리섬유복합관 접합 및 부설품을 개정된 품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토목분야 (용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접경비에 컴퓨터구입, 용지구입비는 제경비에 포함되어 반영불필요 2. 상주감리원 주재비는 부산지역업체 수주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3. 추정공사비 산정은 기획재정부 산정자료 등 발주부서에서 면밀한 검토후 발주 4. 표준관입시험에서 자갈 및 암반층 반영은 시험의미 없음으로 제외하고 1회/1.5m 반영 5. 보어링기계 사용시간효율(기계경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토층(1.33hr/m), 모래층(1.66hr/m), 자갈층(3.28hr/m) ▷ 풍화암층(1.45hr/m), 연암층(1.66hr/m)으로 적용 6. 건물 철거시 폐기물은 형상별로 분리하여 배출 및 처리비 산정 7. 폐 콘크리트, 아스콘은 현장에서 크레싱 후 재활용검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동시발주 경우 기본설계를 하지 않아도되는 경우는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적용 9. 현황측량비는 우리시 항공측량 성과물인 수치지도를 일부 활용 필요 부분만 산정 10. 동시 시행하는 용역은 해당 단위별 용역의 항목 중복은 자료의 활용 11. 현지사무원의 급료는 “부산시에산편성지침”에 의한 사무보조원의 노임으로 산정 12.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세를 제외 13. 해외선진지 사례조사는 국내사례조사, 자료수집 등으로 대체 14. 위원회 토론회 등을 통한 자문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비는 제외 15. 석축혈기 시 발생하는 깬 잡석 등은 현장에서 일정부분 유용토록조정 16. 지반조사 물량 많은 경우 “국토지반정보시스템” 및 기 조사된 자료 일부활용 17. 하수관련 용역 배수설비 조사시 노임품이 과다하므로 기술료는 제외 타당 18.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제경비는 110%, 기술료는 20%로 조정
<p>조경분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목이식(굴취 및 식재) 운반장비는 크레인+덤프트럭에서 트럭크레인 (겸용)으로 조정 2. 잔디밭의 경우 제조품은 보통인부 m²당 0.005인, 잔디밭을 제외한 일반지역 식초품은 m²당 0.0005인, 특별인부 0.0012인 3. 수목 가식품은 일반 식재품의 50% 적용 4. 목재를 활용한 조형벤치와 데크바닥 설치시 일정간격으로 목재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벤치 - 10mm, 데크바닥 - 5mm 5. 기성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것은 현장에 고정이 필요할 경우 기초설치비(기초콘크리트 등)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의 10% → (최소)기초설치 일위대가 계상 6. 목재데크 설치시 주요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앵커볼트 설치품은 경미한 것으로 간주 (철골공 → 건축목공 0.0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판설치는 “목재가공 및 조립” 에서 “마루틀 설치 및 마루 늘깔기(㎡)” 적용(건축목공 0.185인, 보통인부 0.032인) - 데크상판 목재량 산출시 목재의 이격간격(5mm) 만큼 수량 축소 - 잡철물제작 설치품은 경량형강철골조 조립 설치품으로 조정(철공 kg당 0.01254인) <p>7. 수간보호는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 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3m이상)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수종(나무)에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분야 (공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노+관)×1.81%+3,294천원 → [(재+직노)×1.81%+3,294천원] ×1.2 2. 통합 발주시 건축, 토목, 기계 등 공종별 가설사무실 지양, 주 공종에만 산입조정 3. 전력 및 수도광열비는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에 포함된 비용으로 삭제 조정 4. 자재단가는 거래실례가격 중 최저단가로 적용 5. 견적서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 의한 비교 견적인지 중점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물품구매 분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성품의 경우 전문 물가가격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물가자료·물가정보·거래가격·유통물가)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 제출 견적 가격,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저가품목을 선정하되, 성능·내구성·보수성(A/S)·관리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2. 제조품의 경우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는 특수 규격품의 제작설치나 수리 등 적정한 가격이 없는 경우는 타 업체 견적가, 기존 제조가격(타 시도 수요기관) 또는 협의가격으로 심사(대다수 물품제조구매에 해당) 3. 원가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원가계산에 의거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학술용역 분야	1.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2년도)		
	등 급	역 할(능력)	임 금
	책임연구원	지휘·감독, 결론 도출 (대학 부교수 수준 기능 보유)	월 2,915,894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보조 (대학 조교수 수준 기능 보유)	월 2,235,867원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 (연구분야 조교 정도 전문지식)	월 1,494,604원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 수행	월 1,120,991원
	<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용역 참여율을 달리할 경우 기준단가 증감)</p>		
	2. 상여금은 연간 400% 이내로 용역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3.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일시 퇴직급여충당금 가산		
	4. 여비 반영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반영 - 관계공무원 여비 반영할 수 없음		
5. 국내 여비는 시외여비만 반영하되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불가피한 경우 예외) - 철도운임 : 휴일 요금으로 산정한 경우 평일요금으로 조정			
6. 국외 여비는 환율변동이 심할 경우 심사시기의 단가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조정 - 미국 등 국외 출장 기간 최소화			
7. 토너, 복사용지 등 전산소모품과 재료비 등을 산출근거가 없거나 부적절하게 과다 산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부 산출내역 확인 후 차액분 삭감			
8. 사무용품비 등의 단가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물량을 부풀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업기간 및 내역을 확인하여 조정			
9. 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시 예산편성 기준에 2시간 이내 70천원, 2시간 초과시 100천원으로 과다 산정된 부분 삭감			
10. 회의인원에 비해 다과구입 등으로 사용하는 경비를 과다 편성한 경우가 많으므로 1인당 5천원으로 조정			

	<p>11. 전신전화 사용료 단가(한국통신 요금 기준)는 시내전화 3분당 39원, 시외전화는 3분당 261원 적용</p> <p>12. 기타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이운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p>
정보·통신 분야	<p>1. 발매시스템 유지보수 대상장비내역(취득원가)에 포함된 인건비 명목의 설치비 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제외</p> <p>2. 구내통신시설 유지관리 대상 장비 도입금액이 총괄금액으로 제출되어, 장비별 세부도입금액 재확인하여 대상장비 금액조정</p> <p>3. 경보단말시설 장비 중 2011년 도입 설치된 일부 품목에 대하여, 무상유지보수기간을 감안 유지보수요율 조정(5% → 2.5%)</p> <p>4. 교통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투입공수 방식) 직접인건비 중 휴일야간근로 가산율 조정(200%→150%)</p> <p>5. 각종 CCTV 및 음향시설 등 제조구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도 정보통신표준품셈에 의거 품 적용 - PC, 상용S/W(아래한글, 오피스 등) 설치품 미적용 - 산재보험료율 조정 : 노무비의 12/1,000(통신업) <p>6. 한글, MS오피스, MS윈도우 등 상용S/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가격 정책을 관공서와 일반판매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심사시 확인 필요 <p>7. 계약심사시 착안사항 DB 관리</p>
일반 용역분야	<p>1. 인건비 및 보험료 요율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단속직 근로자(경비등)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 - 제조부분 보통인부 : 57,859원(중소기업중앙회) -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상이) :1.0% ~ 3.2% - 임금채권보장기금 : 0.08% <p>2. 경비 항목 중 외주가공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유지관리용역중 방역소독과 외벽청소, 승강기 유지보수는 용역업체가 별도 관리업체와 계약을 하여 지급하는 외주가공비로 이운 산정시 제외 <p>3. 감가상각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용역시 필요한 비품의 감가상각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서 내용연수를 나누어 산출 4. 청소·경비용역은 사업장별 해당시설 범위(터널, 도로, 휴게소, 교량, 환기소 등), 인력, 근무시간대(야간·주간·교대근무) 특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 임율조정 : 연 근무주일 : 4.3 → 4.0주 - 복리후생비 : 부산시산하 여타 공기업 용역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동복, 하복, 근무화 등) - 차량유지비 삭감 : 과업지시서에 용역이행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보유하도록 규정 →사이렌싸인보드·청소 일상적인 수리, 작업장 규모에 따라 정비비의 80% → 60%로 조정 - 시간외(3조2교대) 수당 삭감 : 상시 2명 상주하므로 시간외가 아닌 정상근무로 중복. - 각종 재료비 : 시중거래가, 타 용역기관조사단가, 인터넷 조사 \ 단가 중 낮은 단가 5. 청소용역의 이윤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 182호(2008.07.07)」 항목중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산정 6. 보험료율 산정시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등 5대 보험료율 산출기준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에 공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7. 경비중 쓰레기처리비, 물비누 교체비는 재료비로 조정 8. 재료비중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면세이므로 부가세 삭감
<p>물품제조 ·구매 분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격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지) -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업체 비교 견적가 및 시중 거래가격 - G2B를 입찰조회를 통한 유사거래 실행가격 등 적용 2. 가격 심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된 가격 중 적정가격, 최저단가로 심사하며, 산출기초

	<p>조사상 추정가격 및 면세대상에 부가세 포함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업체인 경우 최근 3개월이상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가중 평균가격 원칙 - 조사가격 중 덤핑가격 등 비정상 가격은 제외 - 다수업체인 경우 최근 3개월이상 거래가격 조사하여 가중 평균가격, 최빈 가격을 원칙 <p>3. 물품 제조계약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제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결정 - 산출원가계산서 검토는 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시방서, 사양서, 물품규격서,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산출 확인 - 원가계산서 작성시 일괄 공사노임으로 설계된 것은 공정별 성격에 따라 공사와 제조부분을 분리하여 노임 적용 -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법정비율 이내 적용 <p>4. 책자 등 각종 인쇄물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제조원가 산출 및 견적가격 중 낮은 것으로 적용심사 (2011. 5월 조달청 고시, 인쇄기준요금 책정 및 발표 폐지)</p>
전기분야	<p>1. 터널 및 교량상 작업시 각 현장별 작업여건 구분 없이 일괄 위험 할증 적용으로 품이 과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 30m 가공송전선로 철탑 작업시 송전전공을 적용하나 고소작업에 따른 위험 할증 추가 적용으로 품이 과다함. <p>2. 관급장비별 설치조건을 확인하여 현장 설치도는 전기공사 원가계산 안전관리비 산정시 해당 장비금액은 제외조치</p> <p>3. 저압케이블용 맨홀설치 비용 산출시 품셈에 특고압 맨홀만 명기되어 있어 준용하면서 특고압 케이블공 적용사례</p> <p>4. 단가 및 품셈 착오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단말재 1조(3개) 단가를 1개 단가로 착오 적용 - 통신케이블 품셈은 10m 시공시 소요공량이 표기되어 있으나 이를 1m 시공시 소요공량으로 착오 적용 <p>5.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동일공종 시공시 상호 품셈 및 적용단가 비교 필요</p> <p>6. 완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자재를 별도 가격 반영으로 과다 계상</p>

	<p>7. 기자재 제작 설치에 따른 예비자재 및 공구의 일률적인 반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선별 구입</p> <p>8. 1개사 견적서 첨부 및 허위견적서 첨부 사례</p> <p>9. 공구손료를 야간할증 시 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한 할증은 포함, 그 외 할증은 제외</p>
기계분야	<p>1. 전체 설계 현황을 파악, 적정한 설계 여부 등 주요장비 선정 적정여부</p> <p>2. 에너지절약 시스템 적용여부</p> <p>3. 설비의 유지관리 용이성 여부</p> <p>4. 신기술(특허)부분의 설계반영시 구체 구분없이 일괄 반영하여 단가가 높은 경우와 민원발생, 투명성 저해</p> <p>5. 발생품 공제 시 물량산출근거 확인</p> <p>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 여부</p> <p>7. 배관공사의 경우 옥외(내)배관은 설치품 적용요율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용</p> <p>8. 배관공사의 경우 설치품 적용은 정미중량 기준으로 적용</p> <p>9. 옥외(내) 배관공사의 자재비 할증 적용이 상이함에도 일률적 적용.</p> <p>10. 기자재 설치시에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는 장비설치비를 별도반영하지 않음</p> <p>11. 견적 설계의 경우 견적서 단서조항 직접 확인 필요</p> <p>12. 시운전비, 공구비, 약품비 등 설계시 간접비 적용여부 검토</p> <p>13. 관급기자재의 설치비는 배관길이 물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p> <p>14. 발생품 고재단가 설계 반영시 가격정보지의 매입(매출)단가 적용</p>
건축분야 (용역)	<p>1. 설계용역</p> <p>-건축물 설계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이 아닌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011.12.8개정)」에 따라 계상</p> <p>- 용역손해배상보험료는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계약금액을 요율로 곱하여 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질조사는 인근 지역의 기존 지반조사 자료를 포함한 사전 개략조사를 실시하고 지층상태를 추정하여 설계반영하고, 표준관 입시험은 2m마다 1회 실시하고 암반층은 시험의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 - 토질시험비 : 2012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에 의거 단가 조정 <p>2. 감리용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경비 및 기술료는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부제2010-846호)』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조정 - 평균감리기간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보정 - 당해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될 경우 감리대가 조정 - 전기분야 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용요령』에 의한 산출하고, 통신 및 소방분야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산출 <p>3. 기타용역(정밀안전진단, 지구단위계획, 폐기물처리용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및 현장체재비는 공동도급일 경우 부산업체의 참여비율(40%)은 삭감 조정 -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거대가 산출 - 혼합폐기물(소각)의 물량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운반비는 가장 가까운 사업장으로 처리 <p>4.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pre-qualification)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기준(국토부 고시 제2011-551호,2012.01.01시행)』에 따라 자체 평가기준 정함. - 국토부 세부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해당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한 3개월 후부터 적용. - 책임감리원 면접 평가시 용역비 10억원 미만인 경우 국토부 세부기준에 따라 면접 평가를 실시하고, 10억원 이상은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로 실시 - 참여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는 국토부 세부기준 범위 안에서 정하되,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기준으로 정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평가기준 - 지역업체 가점은 적격심사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중복 적용 불가 - 완료된 용역의 경우에는 경력 및 수행실적 인정하고 진행 중인 용역은 관련근거가 없어 적용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공개 필요
--	--



<붙임 8>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한 설문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계약심사제도」는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설계내역(공사·용역·물품)의 과다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시행초기 계약심사부서의 예산절감이 곧 발주부서의 사업예산 삭감과 민간기업의 이윤삭감이라는 인식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초기 이러한 양립구도를 가지고 출발한 이 제도에 대해 현재까지 나타난 추진실적과 제반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한 대안을 제언해 보고자 본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설문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더라도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청 감사담당관실 문광일 (861276@korea.kr, 888-140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기계공학과

지도교수 조종래

박사과정 문광일

계약심사 담당공무원

1. 개인별 특성

가. 성 별	_____ ① 남 _____ ② 여		
나. 연 령	만_____세	직렬	_____ ① 행정직 _____ ② 기술직
다. 교육정도	_____ ① 대학원졸 _____ ② 대졸 _____ ③ 고졸		
라. 자격증 유무	_____ ① 기술사 _____ ② 기사 _____ ③ 산업기사 _____ ④ 없음		
마. 근무경력	_____ ① 26년 이상 _____ ② 25~21년 _____ ③ 20~16년 _____ ④ 15~10년 _____ ⑤ 9년 이하		

2. 일반적인 업무특성

가. 계약심사업무 담당경력	_____ ① 5년 이상 _____ ② 4~3년 _____ ③ 2~1년 _____ ④ 1년 이하
나. 월 평균 심사 건수	_____ ① 21건 이상 _____ ② 20건 ~ 15건 _____ ③ 14~10건 _____ ④ 9건 이하
다. 1건당 평균 심사기간	_____ ① 2일 이하 _____ ② 3~4일 이하 _____ ③ 5~6일 _____ 이하 _____ ④ 7~8일 이하 _____ ⑤ 9~10일
라. 희망 월평균 심사건수	_____ ① 21건 이상 _____ ② 20~15건 _____ ③ 14~11건 _____ ④ 10~6건 _____ ⑤ 5건 이하

계약심사업무 인식도

3. 계약심사 업무의 난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렵다 ③ 보통 ④ 쉽다 ⑤ 매우 쉽다

4.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으로서 계약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공학과나 자격증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일부만 해당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5. 계약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은?

- ① 유사경력 ② 일정 근무연수 ③ 사전교육자 ④ 자격증 ⑤ 학력

6. 계약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조건은?
 ① 전공 +유사경력 +자격증 +사전교육자 ② 유사경력 +자격증 +사전교육자 ③ 유사경력 +사전교육자 ④ 자격증 +사전교육자 ⑤ 전공 +사전교육자
7. 계약심사 업무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곳은?
 ① 인터넷, 전문도서 ② 동료 직원 ③ 기존 심사자료 ④ 관련업체, 전문가 ⑤ 타 시도 자료
8. 본인의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이해도(능력)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정, 공법, 시공 모두 파악 ② 공정, 공법, 시공 일부 파악 ③ 관련 법령, 품셈적용 가능 ④ 단순 반복 업무 파악 ⑤ 전공지식 파악
9. 타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정도는?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 ④ 적다 ⑤ 매우 적다
10.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은 어떤가요?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 ④ 적다 ⑤ 매우 적다
11. 귀하께서 계약심사 기법연구를 위해 하는 방법은 ?
 ① 관련지식 연구 ② 전문교육 ③ 공사현장 방문 ④ 관련자료 정리 ④ 동아리 등 연찬회 참석
12. 계약심사담당공무원으로서 이 계약심사업무에 만족하는지?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우리시 계약심사담당자의 업무능력은 타 시도 담당자와 비교시 어떻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14. 우리시의 계약심사 업무여건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① 매우 월등 ② 월등 ③ 보통 ④ 열악 ⑤ 매우 열악
15. 계약심사부서가 다른 부서와 비교할 때 어떤 면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기발전 ② 전보의 수월성 ③ 부서 부위기 ④ 근무수당 ⑤ 승진
16. 재차 이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향은 있습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 ④ 없다 ⑤ 전혀 없다
17. 계약심사시 가장 어려운 점은?
 ① 심사금액 삭감 ② 업무량 ③ 내. 외부 압력 ④ 설계내역서, 도면 검토
 ⑤ 심사자료 검색

계약심사제도와 청렴성

18. 계약심사 업무수행중 상급자(결재라인)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있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19. 만일, 위와 같이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또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① 소신대로 처리 ② 협의하여 처리 ③ 지시대로 처리 ④ 처음부터 거절
 ⑤ 적당히 처리
20. 귀하께서 처리한 계약심사 업무 중에서 예산절감 항목이 가장 많은 것은?
 ① 공법개선 ② 공기, 인력감축 ③ 재료단가, 인건비 ④ 이윤, 일반관리비
 ⑤ 관련법령
21. 계약심사시 설계내역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예산절감액 0%인 심사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 ④ 적다 ⑤ 없다
22. 예산절감액(절감률 0%)이 없을 경우 예산절감 실적이 없어 아쉽다는 생각은 없는가?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23. 예산절감 실적이 없을 때 상급자가 귀하를 “무능력하다” 생각하지는 않는가?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계약심사 담당자로서 이 제도의 존속성에 대한 견해는?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한시적 필요 ⑤ 당장 폐지

25. 계약심사결과 예산절감액이 많을 경우 부담되지는 않는가?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6. 계약심사 업무가 정말로 예산절감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7. 관련업체(건설회사, 용역회사, 설계회사)에서 삭감완화를 부탁 받은 적은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있다 ④ 많다 ⑤ 항상 있다
28. 퇴직 선배공무원으로부터 계약심사와 관련된 부탁을 받은 적은 있는가?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있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29. 귀하께서는 퇴직 후 일반회사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가?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모른다 ④ 있다 ⑤ 반드시 있다

계약심사부서와 발주부서와의 관계

30. 심사결과를 최종 통보하기 전에 사업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협의를 하는지? ① 매번한다 ② 필요시 협의 ③ 시행초기만 협의 ④ 않는다 ⑤ 한적 없다
31. 계약심사결과 통보 후 사업부서 등으로 부터 재의결을 요청 받은 적이 있는가?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있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32. 발주부서에서 재의결 요청사유는 ?
 ① 관련규정 잘못 적용 ② 이중기재 ③ 전산오류 ④ 사업부서와 의견차이
 ⑤ 금액삭감에 대한 항의성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

33. 향후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제도 발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개선 방안은? ① 인원 및 직제 확대 ② 전문관제 도입 ③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④ 심사직원 공모제 ⑤ 현행대로 고수

34. 중앙정부가 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꼭 시행했으면 하는 것은 ?
 ① 중앙 정부와의 인사교류 ② 심사시상금 지급 ③ 중앙정부 주관 정기 연찬회 개최 ④ 시·도별 순회 선진지 견학 ⑤ 전문교육 실시
35. 이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시행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발주부서의 검토능력 부족 ② 관계업체의 설계내역서 작성 부실 ③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④ 삭감대비 부풀리는 경향 잔존 ⑤ 심사 부서의 실적위주 심사

《 설문에 끝까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발주부서 담당공무원 (공사·공단)

1. 개인별 특성

가. 성 별	_____ ① 남 _____ ② 여		
나. 연 령	만 _____ 세	직렬	_____ ① 행정직 _____ ② 기술직
다. 교육정도	_____ ① 대학원졸 _____ ② 대졸 _____ ③ 고졸		
라. 자격증유무	_____ ① 기술사 _____ ② 기사 _____ ③ 산업기사		
마. 근무경력	_____ ① 26년 이상 _____ ② 21~25년 _____ ③ 16~20년 _____ ④ 15~10년 _____ ⑤ 10년 이하		
바. 근무부서	_____ ① 공무원 _____ ② 공사, 공단		

2. 귀 부서에서 사업발주를 위한 설계내역서의 작성 주체는?
 ① 담당자 전부 작성 ② 담당자 일부 작성 ③ 일부 전문기관 ④ 모두 전문 기관 ⑤ 담당자 작성 + 전문기관
3. 사업 발주시 계약심사부서에서 계약심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에 대해 불편하지 않은가?
 ① 매우 불편 ② 불편 ③ 보통 ④ 불편하지 않다 ⑤ 전혀 불편하지 않다

4. 계약심사부서에서의 심사기간이 규정상 10일이나 현재 5일로 단축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이 단축된 심사기간은 적정한가?
 ① 매우 적정 ② 적정 ③ 보통 ④ 단축 ⑤ 매우 단축 필요
5.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재 검토 요청은 어떻게 하는가?
 ① 공문 ② 메일 ③ 유선 ④ 방문 ⑤ 없음
7. 재의결 요청사유가 있을 경우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봅니까? ① 심사부서의 재량행위 ② 삭감액 미비 ③ 재의결 없이 시행 ④ 내역작성의 단순 착오 ⑤ 사업기간 촉박
8. 계약심사결과 통보된 내용 중 주요 조정대상 항목은?
 ① 공법변경 ② 노무직종, 공량 ③ 자재단가 ④ 이윤, 일반관리비 ⑤ 기타
9. 계약심사 담당직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한다면?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10. 귀하는 계약심사부서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습니까? (공무원만 해당)
 ① 매우 적극 ② 적극 ③ 보통 ④ 싫다 ⑤ 매우 싫다
11. 발주부서에서 볼 때 계약심사부서의 인지도(위상)은 어떤가?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12. 계약심사부서에서 심사시 사업비를 너무 많이 삭감하여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는 있는가?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일부 있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13. 계약심사결과 사업비 삭감이 과다할 경우 귀 부서의 견해는?
 ① 설계내역서 작성 단순 착오 ② 심사부서의 과다 적용 ③ 재협의 ④ 사업예산 확보 ⑤ 사업규모 수정

14.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15. 귀 부서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설계내역서 작성시 계약심사부서의 삭감대비 사업금액을 증액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16. 귀 부서에서 극히 적은 일부분이라도 사업금액을 증액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한 결과 그 심사결과는?
 ① 전액 삭감 ② 일부 삭감 ③ 보통 ④ 반영 ⑤ 전액 반영
17. 계약심사부서에서의 심사금액 삭감이 곧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8.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방향은 ?
 ① 인원 및 직제 확대 ② 전문관 제도 도입 ③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④ 심사부서 공모제 및 추천제 ⑤ 현행대로 고수
19. 중앙정부차원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것은?
 ① 중앙 정부(공사공단)와의 인사교류 ② 심사시상금 지급 ③ 중앙정부 주관 정기연찬회 개최 ④ 시·도별 순회 선진지 견학 ⑤ 전문교육 실시
20. 이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행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발주부서의 설계내역서 설계 및 검토능력 부족 ② 민간기업의 설계내역서 작성 부실 ③ 계약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전무 ④ 삭감 대비 부풀림 경향 잔존 ⑤ 실적위주의 심사
21.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개선책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① 인사 우대 ② 심사시상금(특별수당) 지급 ③ 실적우수자 해외연수 실시 ④ 특별휴무 실시 ⑤ 타 부서와의 형평성 고려 현행 유지

《 설문에 끝까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계약심사 관련업체 (시공·설계·용역)

1. 개인별 특성

가. 성 별	_____ ① 남 _____ ② 여
나. 연 령	만_____세
다. 교육 정도	____① 대학원(박사) ____② 대학원(석사)____③ 대졸____④ 고졸이 하
라. 자격증 유무	____① 기술사 ____② 기사 ____③ 산업기사 ____④ 기능장 ____⑤ 기능사
마. 근무 경력	____① 21년 이상 ____② 20~16년 ____③ 15~11년 ____④ 10~5년 ____⑤ 5년 이하
바. 직 급	____① 대표 ____② 임원 ____③ 차장, 부장 ____④ 과장 ____⑤ 대리, 사원

2. 귀하가 근무하시는 곳은?

- ① 종합건설업체 ② 전문건설업체 ③ 감리업체 ④ 설계업체 ⑤ 연구기관

3. 귀하의 전문분야는? ① 토목·건축분야 ② 설비(기계, 소방)분야 ③ 전기, 통신분야 ④ 조경분야 ⑤ 기타

4. 먼저, 계약심사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안다 ② 잘 안다 ③ 보통 ④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5. 그러면, 현재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 ① 전담 ② 타 업무와 겸임 ③ 과거 담당 ④ 미 담당 ⑤ 향후 예정

6. 계약심사업무는 선호하는 업무입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7. 계약심사 업무 담당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① 5명이상 ② 4명 ③ 2명 ④ 1명 ⑤ 없다

계약심사제도의 초기인식 대응

8. 계약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귀 업체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사항은 무엇

입니까? ① 직원교육 ② 정보공유 ③ 담당공무원과의 긴밀 유지 ④ 공무원 퇴직자 채용 ⑤ 없다

9. 계약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 제도를 바라보는 회사 내의 시각을 1가지만 고른다면? ① 업무영역 확장 추진 ② 내역서작성 어려움 ③ 이윤삭감 ④ 불필요한 제도 시행 ⑤ 생각한적 없다

계약심사의 활성화 정도

10. 귀 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를 계약심사부서에서 심사를 받은 경우는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 ① 30건 이상 ② 29~21 ③ 20~10건 ④ 9이하 ⑤ 없다

11.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

- ① 사업예산 대폭 삭감 ② 공법변경 ③ 사용자재 변경 ④ 관련법령 적용 기준 변경 ⑤ 계약방법 변경

13. 계약심사 결과 만족스럽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① 정보 부족 ② 관련법령 적용 오류 ③ 내역서 작성 오류 ④ 현장여건 감안 부족 ⑤ 담당공무원의 이해부족

14.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재 의결 요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① 공문 ② 유선 ③ 방문 ④ 발주부서 협의 ⑤ 없다

15. 만일, 재의결 사유가 있음에도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단순 착오 ② 차기 심사 때 불이익 ③ 인허가시 불이익 ④ 업무시간 부족 ⑤ 경비절감 차원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정도

16. 심사결과에 대한 정확도는?

- ① 매우 정확 ② 정확 ③ 보통 ④ 부정확 ⑤ 매우 부정확

17. 계약심사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한다면?

-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계약심사 일반사항

18. 귀 업체에서 내역서(설계서, 도면, 견적서 등) 작성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① 인력부족 ② 기술력 부족 ③ 정보 부족 ④ 협조 체계 부족 ⑤ 유사모델의 부재

19. 귀하(업체)께서는 공사기법 개발 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① 타 공사 현장 방문 ② 전문서적 및 인터넷 ③ 전문교육 이수 ④ 대학교 협력 ⑤ 대기업, 외국기업 기술제휴

20. 설계내역서 작성시 계약심사 삭감에 대비하여 과다설계를 한 경우는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 ④ 있다 ⑤ 항상 있다

21. 계약심사 시행 이후 설계내역서 작성에 따른 부담감 정도는 ?

-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 ④ 없다 ⑤ 전혀 없다

계약심사와 청렴도

22. 계약심사관계로 담당공무원에게 업무편의를 말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3. 위 심사부서에 업무편의를 부탁했을 때의 처리 결과는?

- ① 전부 미반영 ② 미 반영 ③ 일부 반영 ④ 전부 반영 ⑤ 차기 반영

24. 최근 퇴직공무원들이 일반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퇴직공무원이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일부 찬성 ④ 반대 ⑤ 적극 반대

25. 퇴직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

-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

26. 이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① 실적위주 ② 절차번잡 및 시일소요 ③ 심사부서의 일방적인 제도
④ 심사 불필요 ⑤ 없다
27. 계약심사제도 시행 이후 귀 업체에서 나타난 이점이 있다면?
① 경쟁력 확보 ② 인력, 직제 증설로 규모 확장 ③ 영업이익 증대
④ 이윤감소 ⑤ 변화없다
28. 귀 업체에서 계약심사업무를 위하여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고 됩니까?
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② 계약심사 전문가 육성 ③ 업무연찬 및
정기교육 실시 ④ 조직 확대 ⑤ 계약심사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9. 부산시 계약심사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 ① 정보 공유 ② 심사매뉴얼 배부 ③ 심사전문가 교육 ④ 상담실
운영 ⑤ 정기협의체 가동
30. 귀 업체에서 생각하는 「부산시의 계약심사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담
당공무원의 활성화 방안은? ① 인원 및 직제 확대 ② 전문관 제도 도입
③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④ 심사부서 공모제 및 추천제 ⑤ 현행 고수
31. 중앙정부에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1가지를 꼽는다면?
① 정부·업체·협회간 정보 공유 ② 각 공종별 표준 설계심사 프로그램 개
발 배포 ③ 정기적 공종별 현장견학 ④ 원가계산의 현실화 검토 ⑤ 유공
자 표창 확대

《 설문에 끝까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